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336-01

다문화 인권정책에 대한 이주민 당사자 정책 수요조사 연구보고서

2011. 10.

수행 기관 : 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연구책임자 : 성 상 환

다문화 인권정책에 대한 이주민 당사자 정책 수요조사 연구보고서

수 행 기 관 : 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책임연구원 : 성상환(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소장)

공동연구원 : 권오중(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민병욱(인천대학교 강사)

보조연구원 : 박혜원(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석사과정수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다문화 인권정책에 대한 이주민 당사자 정책 수요조사 연구보고서

성상환 · 권오중 · 민병욱

한국사회는 아직 이민국가가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이주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자들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다인종 가정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고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한국사회의 인구 구성비도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에서의 이주민의 숫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은 대개 거주 지역이나 사회의 소수자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엠네스티(2006)에서는 이주민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생명권, 고문금지, 자기 결정권, 인종차별 금지, 사상 및 종교에 관한 권리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이주민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제도적 기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는 국내의 이주민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접근 방식의 하나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거나 적응하고 있는 결혼이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주민들의 인권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과 주제를 포괄하는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이주민들을 위한 인권증진 차원의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설문 응답자 121명 중 이주노동자 20명과 결혼이주민 101명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을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설문지(부록 참조)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장기 다문화 인권정책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고, 다문화 사회의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 개발에 일조함으로써 다문화시대의 연대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인권정책에 대한 이주민의 인지도와 중요도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둘째, 중장기 다문화인권정책 실행계획의 추진 과제 중 정책 우선순위 및 분야별 시급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주민의 관심도와 위원회 접근 경로 등을 확인하여 향후 인권 정책 환경의 추이를 예측한다.

II장에서는 이주민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도, 지난 3년간(2009-201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행해 온 다문화인권정책 및 사업별 중요도 조사를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기본적으로 본 설문에 참여한 이주민의 과반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에 대해 모

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에 대한 홍보가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영역에서 설문에 응답한 이주민의 과반수가 이러한 개별 정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답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민권정책에 대해 잘 모르거나 무지한 상황임을 보여 주었다. 정책의 중요도 조사에서는 설문에 응한 이주민들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다'라고 답해 앞으로도 이주민을 위한 더 많은 다문화인권정책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이어서 III장에서는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출신 아동이나 이주아동들의 개인적 관심 영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참여과정 경로에 대한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정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주요 이주민권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III장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소통 및 한국어습득 문제와 관련된 설문에서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문제가 언어소통의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에 참여한 이주노동자의 75%가 회사동료들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한 반면에 결혼이주민들은 79.2%가 한국어 강좌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답하였다. 이렇게 응답이 집단별로 대비되는 것은 두 집단이 처한 환경이 다른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 공히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 어려운 점으로 '언어소통문제'를 꼽았다.

둘째, 이주민의 체류관련 문제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결혼이주민의 경우에는 체류기간연장이나 국적취득방법과 관련해서 조사하였다. 이주민들의 체류연장 및 국적취득문제와 관련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결혼이주민의 경우 대부분 본인들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체류허가연장은 대부분 배우자의 도움으로 해결하거나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경우도 23.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주민들이 체류허가를 연장하거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언어 소통적 차원의 지원이나 공무원을 통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설문에 참여한 결혼이주민들의 경우 체류 연장이나 영주권 혹은 귀화를 신청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한 경우가 41.6%이고 어려운 점이 없다고 답변한 경우가 56.4%로 나타났다. 추가로, 어려운 점에 있어서 언어소통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보증금 등의 법률적 단서조항이 이들에게 마찬가지로 문제임이 확인되었다.

한국국적 취득과 관련해서 결혼이주민들의 대부분은 국적취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이유는 한국인으로 한국인과 동일하게 차별받지 않는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설문 응답자들은 우선 한국 법령의 엄격함과 재산보증금, 한국어능력, 출신국 국적포기 못함 등의 기타사항들 그리고 국적취득에 필요한 정보부재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설문에 응한 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것으로 답한 경우가 27명(26.7%)으로 나타났지만,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무응답의 경우가 71명(70.3%)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응답자들은 배우자의 나라인 한국에서 자

너도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주민들의 차별 관련 문제에서 설문에 참여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 모두 출신 국가, 피부색, 계층(경제력) 등 일상적인 삶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따라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 예를 들면 상점 등에서 물건판매를 거부당한 경험(30.9%).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이주민들은 한국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친절하다고 답하였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해서는 이들의 체류자격과 노동환경 그리고 임금문제 및 사업장 내 차별문제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특히 임금체불경험 (40.0%), 임금차별경험(55.0%), 산업안전 교육에서 통역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75.0%) 등의 경우처럼 이들의 처우개선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협소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이 25.0%에 불과하였다.

다섯째, 이주 여성은 대부분 '결혼-출산-육아-(자녀)교육'의 생애 주기를 겪게 되므로 대개의 경우 자녀 교육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항목으로 자녀와 관련된 것에 비중을 두었다. 그 다음으로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교육권에 대한 요구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자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다. 추가적으로 응답자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다음 IV장에서는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잘한 인권정책을 이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파악하였다. 설문에 응한 이주민들은 비록 대부분 그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년간 실행했던 다문화 인권정책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접해보지는 못했으나, 내용을 이해한 이후에는 대부분에 대해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문화 인권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어느 한 정책이나 사업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사업이나 추진정책에 고른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서 선호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고, 모든 사업과 정책추진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이주민의 입장에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시급한 추진과제 및 정책 요구사항을 이주민들의 관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급한 추진과제가 무엇이며 이주민들이 바라는 정책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설문을 통하여 1. 언어소통 및 한국어 습득문제, 2. 차별문제, 3. 체류문제, 4. 노동조건 및 주거관련 문제, 5. 교육문제, 6.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문화 인권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주민의 인지도와 중요도 등 6가지 정책 수요방향으로 정리되었다.

본 연구진은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일상에서 겪는 차별에 관한 부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수행에 대한 이주민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이주민들과의 이주인권관련 심층 인터뷰, 안산의 베트남 근로자들과의 인터뷰, 결혼이주민과 유학생과의 인터뷰 내용을 실어 좀 더 구체적인 실상을 바탕으로 하여 상세한 요구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진은 다문화 인권정책에 대한 이주민 당사자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지나지 않도록 주어진 사안을 다각도로 접근하고 다양한 자료를 첨부하여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본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목 차

요약문	i
I. 연구개요	1
I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I -2. 연구내용 및 범위	2
I -2-1. 연구 내용	2
I -2-2. 연구 범위	3
I -3. 연구방법	4
I -3-1. 문헌 연구	4
I -3-2. 전문가 활용	4
II. 이주민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도, 다문화인권정책 및 사업별 중요도 조사	5
II-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	5
II-2. 다문화 인권 정책에 대한 이주민 당사자 정책 수요조사	8
II-2-1. 설문대상자에 대한 정보	8
II-2-1-1. 이주노동자(설문 A형)	9
II-2-1-2. 결혼이주민(설문 B형)	13
II-2-2.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문화 인권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주민의 인지도와 각 사업별 중요도	16
II-2-2-1. 이주노동자(설문 A형)	17
II-2-2-2. 결혼이주민(설문 B형)	20
III. 이주민 당사자가 인지하고 있는 개인적 관심 정책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정책 참여과정 경로	25
III-1. 언어소통 및 한국어습득 문제	25
III-1-1. 이주노동자(설문 A형)	25
III-1-2. 결혼이주민(설문 B형)	27
III-2. 이주민의 차별관련 문제	30
III-2-1. 이주노동자(설문 A형)	30
III-2-2. 결혼이주민(설문 B형)	32
III-3. 이주민의 체류관련 문제	36
III-3-1. 이주노동자(설문 A형)	37
III-3-2. 결혼이주민(설문 B형)	41
III-4.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거 관련 문제	47
III-5. 이주민의 교육과 문화영역에서의 문제점	57

IV. 이주민이 평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잘한 인권 정책 추진 사항	67
IV-1.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67
IV-2. 이주 노동자 인권보호	67
IV-3.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67
IV-4. 다문화가정아동의 인권보장	68
IV-5. 다문화 인권증진관련 기타 사업	68
V. 이주민의 입장에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시급한 추진과제 및 정책요구사항 ..	69
V-1.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수행에 대한 이주민의 요구사항	69
V-1-1. 언어소통 및 한국어습득 문제	69
V-1-2. 차별 문제	69
V-1-3. 체류 문제	70
V-1-4. 노동조건 및 주거관련 문제	71
V-1-5. 교육 문제	71
V-1-6.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문화 인권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주민의 인지도와 각 사업별 중요도	72
V-2. 이주민들과의 이주인권관련 심층인터뷰 내용	73
V-2-1. 안산의 베트남 근로자들과의 인터뷰 내용	73
V-2-2. 결혼이주민과 유학생과의 인터뷰 내용	77
VI. 결론	81
참고문헌	97
 부록 1 ‘다문화 인권정책에 대한 이주민 당사자정책 수요조사’ 설문지 A형	99
부록 2 ‘다문화 인권정책에 대한 이주민 당사자정책 수요조사’ 설문지 B형	121

I. 연 구 개 요

I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¹⁾ 언어, 문화, 피부색, 종교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이주민들과의 공존문제가 각 국가마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2011년 7월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극우민족주의자에 의한 테러는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데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편으로 한국사회에서도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시도 공공기관 및 시민 단체 주도 하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그 대상과 주제가 주로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주자들 가운데에서도 이주노동자들과 결혼이주민, 이주아동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다문화인권과 차별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공존의 원리와 사회적 연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주자이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불편을 겪고 있고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원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주자들의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이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반 한국시민들의 다문화인권의식과 관용정신을 높이는 데에도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그 접근 방식의 하나로 인권이라는 보편적 기준에 기반을 두고 다문화인권정책에 대한 이주민 당사자의 정책 수요조사를 주제로 삼는다.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장기 다문화 인권정책 실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문화 사회의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문화시대의 연대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인권정책에 대한 이주민의 인지도와 중요도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둘째, 중장기 다문화 인권정책 실행계획의 추진 과제 중 정책 우선순위 및 분야별 시급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주민의 관심도와 위원회 접근 경로 등을 확인하여 향후 인권정책 환경의 추이를 예측한다.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126만 명에 달한다.

I -2. 연구내용 및 범위

I -2-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거나 적응하고 있는 결혼이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주민들의 인권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과 주제를 포괄하는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이주민들을 위한 인권증진 차원의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지표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제 1 주제: 이주민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도, 다문화 인권정책 및 사업별 중요도 조사

본 내용에서는 지난 3년간(2009-201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행해 온 다음과 같은 다문화인권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인지도 및 중요도에 대해 조사해 본다.

<표 1: 2009-2011 다문화인권정책 관련 주요 추진 성과>

<다문화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수립
위원회 중장기 다문화 인권정책실행계획 수립
인터넷에서의 인종적 표현에 대한 개선방안 의견 표명
인종차별금지법 입법예고에 따른 공청회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개선방안 권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 방안 정책 권고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마련
미등록 이주민 체포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개선 권고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중의 취업활동 불가는 생존권 침해 개선 권고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국제결혼 광고현수막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견표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견표명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국제회의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방안 마련
위장결혼에 따른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다문화가정아동의 인권보장>
외국인보호소 내 아동구금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미등록이주아동의 중학교 학습권 보장 권고
이주아동교육권보장 개선방안 정책 권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 접근권 개선방안 마련
<다문화인권증진 관련 기타 사업>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미등록 이주자 인권보호를 위한 방문조사

제 2 주제: 이주민 당사자가 인지하고 있는 개인적 관심 정책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참여과정 경로

본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족출신 아동이나 이주아동들의 관심영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참여과정 경로에 대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주요 이주인권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구성한다.

제 3 주제: 이주민이 평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잘한 인권 정책 추진 사항

본 주제에서는 지난 3년간 수행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에 대한 이주민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이주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다. 본 주제의 주요내용은 제1주제의 설문문항에 포함되어 있다.

제 4 주제: 이주민의 입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우선 추진 과제 및 효과적 정책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파악

제4주제의 논의를 통해서는 다문화사회의 진입에 따른 향후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문화인권정책방향 설정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주민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추진과제와 효과적 정책수행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따라서 본 주제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영역별 접근과 사회통합적인 정책방향도 포함한다.

I-2-2. 연구 범위

- 국내 이주자 인권 실태 파악
- 국내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방문 인터뷰
- 이주인권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및 설문지 개발 원리 도출
- 현장방문 인터뷰를 기초로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개발
- 개발된 설문지를 현장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송부하고 피드백을 받음
- 설문지 피드백에 대한 내용 분석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주인권 정책수요조사
- 이주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도출

I -3. 연구방법

I -3-1. 문헌 연구

한국 사회의 소수자 인권 실태 및 인권 의식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이주인권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사회 이주자 연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 사회의 인권의식 연구 등과 같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 -3-2. 전문가 활용

-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 시행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이주자 인권 현황 및 다문화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와 수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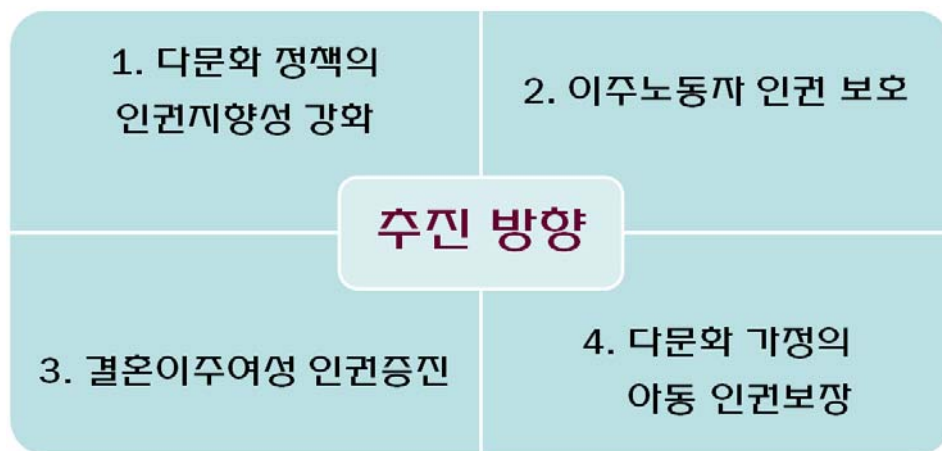
- 전문가 의견 수렴

두 차례의 보고회와 연구진-집필진-검수진의 세미나를 통해 연구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초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연속성과 정합성을 유지한다.

II. 이주민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도, 다문화인권정책 및 사업별 중요도 조사

II-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을 수립하면서, 전략목표 중의 하나로서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목표를 추진하여 왔다.



<그림 1>

위의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목표는 지난 3년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9년

- (1) 몽골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인권위원회 MOU 체결
- (2) 미등록이주아동의 중학교 학습권 보장 권고
- (3)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개선방안 권고
- (4) 외국인보호소 내 아동구금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 (5) 2009 난민의 날 기념 토론회 실시
국내 체류 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 (6)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토론회 실시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 (7) 인종차별금지법 입법예고에 따른 공청회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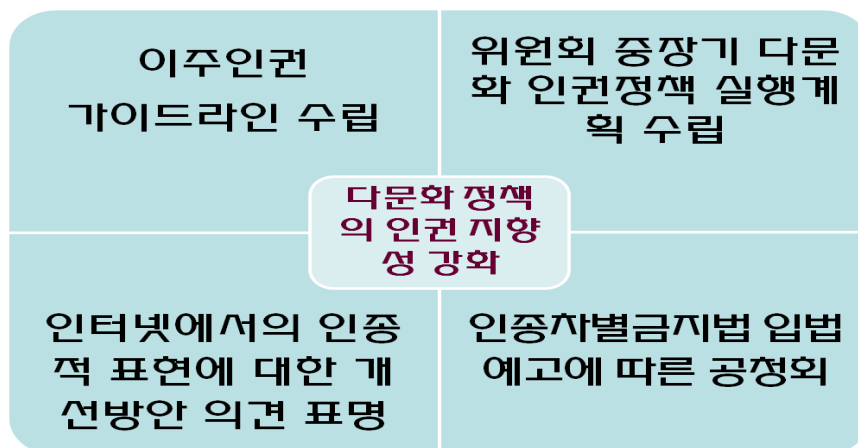
- (1) 이주아동교육권보장 개선방안 정책 권고
-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 방안 정책 권고
- (3) 인터넷에서의 인종적 표현에 대한 개선방안 의견 표명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견표명
-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견표명
- (6)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 (7) 국제결혼 광고현수막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 (8) 필리핀인권위원회, 네팔인권위원회 MOU 체결

2011년 (추진중)

- (1)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수립
- (2) 위원회 중장기 다문화 인권정책실행계획 수립
- (3)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마련
- (4) 미등록 이주자 인권보호를 위한 방문조사
- (5)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방안 마련
- (6) 위장결혼에 따른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 (7)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 접근권 개선방안 마련
- (8) 미등록 이주민 체포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개선 권고
- (9)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중의 취업활동 불가능 생존권 침해 개선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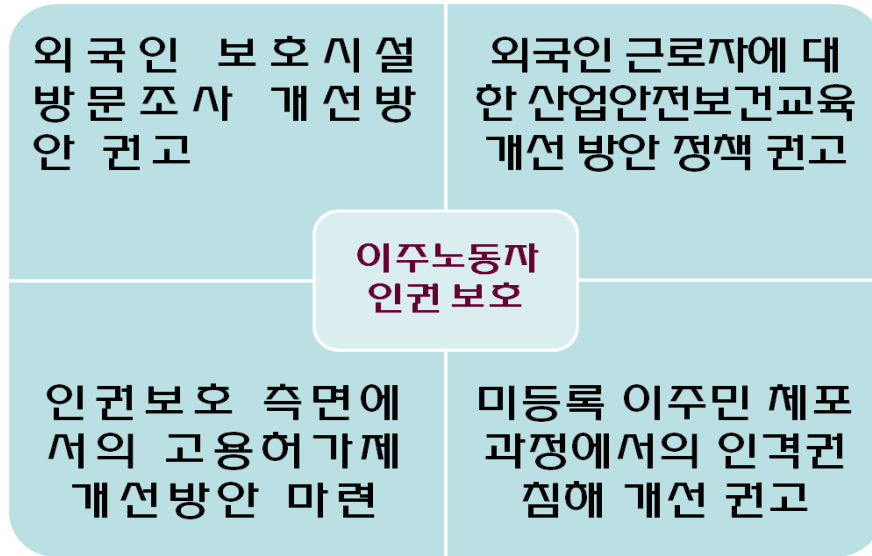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실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이주민을 위한 구체적인 인권증진행동계획’의 방향은 영역별로 다음과 같다.

1. 다문화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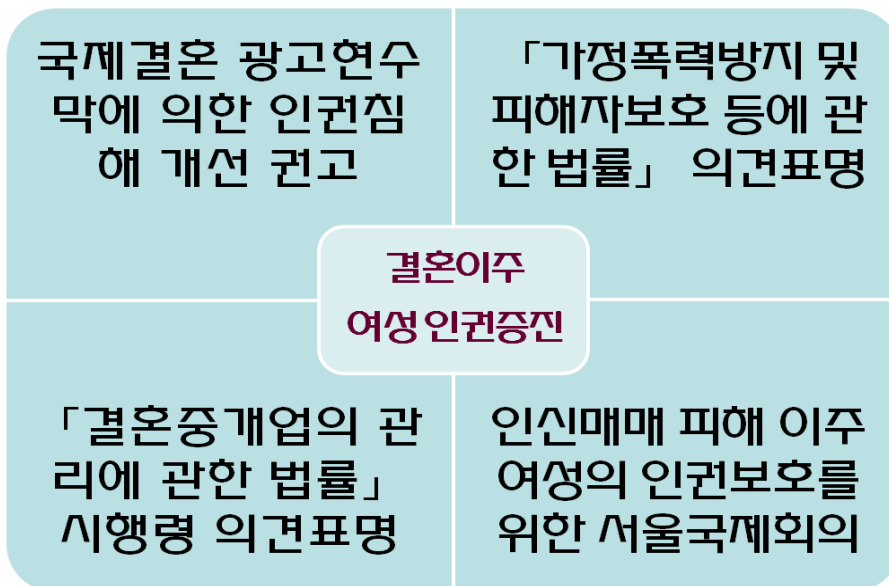
<그림 2>

2.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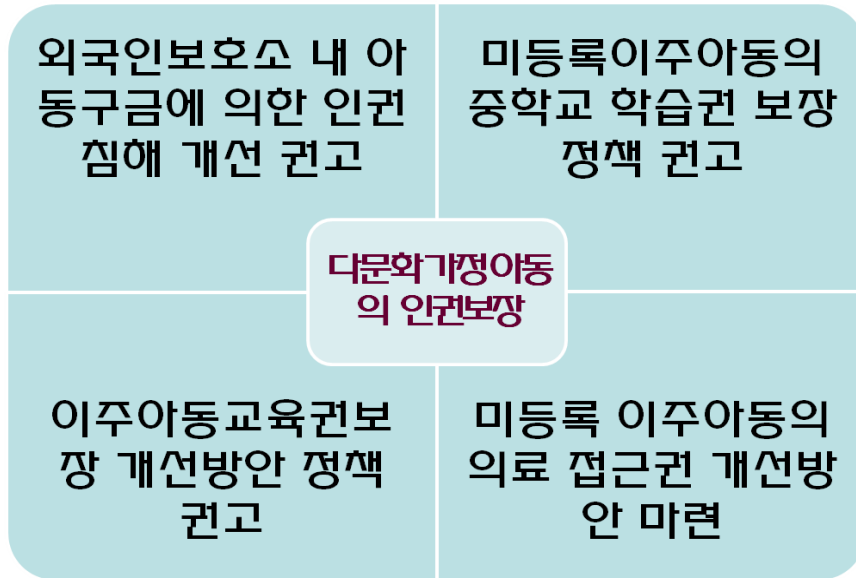
<그림 3>

3.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그림 4>

4.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권보장



<그림 5>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의 <그림 2>에서 <그림 5>까지 영역별로 나타난 이주민을 위한 구체적인 인권증진행동계획과 추진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다문화 인권 정책의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실제 이주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행한 정책추진방향과 사업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또한 각 개별 사안에 대한 중요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 수행된 적이 없다. 다문화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우선 한국 사회의 이주민 당사자들이 이러한 노력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문화 이주민권에 대한 이주민 당사자 대상의 설문 내용을 다룬다.

II-2. 다문화 인권 정책에 대한 이주민 당사자 정책 수요조사

II-2-1. 설문대상자에 대한 정보

우선 본 연구진은 설문의 대상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A형과 B형으로 구별하여 진행하였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이 처한 상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설문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전체 이주민들이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다문화 인권정책의 수요

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의하여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 20명과 결혼이주민 101명에 대해 실시했던 설문을 분리하여 제시하고 분석한다. 본 연구는 설문항의 순서를 A형에 이어서 B형의 순서로 제시한다.

II-2-1-1. 이주노동자 (설문 A형)

설문 대상으로 참여한 이주노동자는 모두 20명이었다. 이들의 성별은 무응답을 제외한 17명 중 11명(55%)이 남성이었고 6명(30%)이 여성이었다. 이들의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40%, 20대가 15%였다. 응답자의 출신 국가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25%였고 중국 한족, 중국 조선족, 몽골이 각각 15%였다. 이들의 출생지를 요약하면 모국이라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는데 한국이라고 한 경우도 5%(1명)가 있었다. 구체적인 통계는 설문 A형의 문항 1에서 문항 4까지의 응답을 정리한 다음의 <표 2>, <표 3>, <표 4>, <표 5>의 내용과 같다.

<표 2> 남녀성별 분류 (설문 A 문항 1)

분류	빈도(%)
남	11명(55.0%)
여	6명(30.0%)
무응답	3명(15.0%)
합	20명(100%)

<표 3> 출생연도별 분류 (설문 A 문항 2)

분류	빈도(%)
20대	3명(15.0%)
30대	8명(40.0%)
40대	0명(0.0%)
50대	0명(0.0%)
기타	0명(0.0%)
무응답	9명(45.0%)
합	20명(100%)

<표 4> 국적별 분류 (설문 A 문항 3)

분류	빈도(%)
한국	0명(0.0%)
중국 한족	3명(15.0%)
중국 조선족	3명(15.0%)
베트남	5명(25.0%)
필리핀	1명(5.0%)
방글라데시	0명(0.0%)
태국	0명(0.0%)
인도네시아	5명(25.0%)
몽골	3명(15.0%)
일본	0명(0.0%)
러시아	0명(0.0%)
우즈베키스탄	0명(0.0%)
기타 나라	0명(0.0%)
합	20명(100%)

<표 5> 태어난 국가별 분류 (설문 A 문항 4)

분류	빈도(%)
모국(한국 외에 현재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11명(55.0%)
한국	1명(5.0%)
기타(몽골)	8명(40.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

응답자의 한국 거주 기간은 3년 이상에서 4년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년 이상이라는 응답도 25%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65%가 합법적인 고용허가제 체류 기간 내에 있는 경우였고 25%가 미등록노동자, 나머지 10%가 무응답이었다. 현재 거주지역은 응답자 모두 경상북도(구미시)였는데 이 지역의 공단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현재 직업을 공장노동자라고 밝힌 경우가 90%(18명)라는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한국 이주 계기도 85%(17명)가 취업이라는 점도 이주노동자의 일반적인 현황과 맥을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치는 설문 A형의 문항 5에서 문항 8까지의 응답을 정리한 다음의 <표 6>, <표 7>, <표 8>, <표 9>의 내용과 같다.

<표 6> 한국에서의 거주기간별 분류 (설문 A 문항 5)

분류	빈도(%)
1년 이하	0명(0.0%)
1년-2년	1명(5.0%)
2년-3년	0명(0.0%)
3년-4년	8명(40.0%)
4년-5년	4명(20.0%)
5년 이상	5명(25.0%)
무응답	2명(10.0%)
합	20명(100%)

<표 7> 현재 거주지역별 분류 (설문 A 문항 6)

분류	빈도(%)
서울특별시	0명(0.0%)
인천광역시	0명(0.0%)
대구광역시	0명(0.0%)
대전광역시	0명(0.0%)
부산광역시	0명(0.0%)
광주광역시	0명(0.0%)
울산광역시	0명(0.0%)
경기도	0명(0.0%)
충청남도	0명(0.0%)
충청북도	0명(0.0%)
경상남도	0명(0.0%)
경상북도	20명(100%)
전라남도	0명(0.0%)
전라북도	0명(0.0%)
강원도	0명(0.0%)
제주도	0명(0.0%)
합	20명(100%)

<표 8> 현재 직업별 분류 (설문 A 문항 7)

분류	빈도(%)
공장노동자	18명(90.0%)
건설노동자	0명(0.0%)
어부 또는 수산업 노동자	0명(0.0%)
농부 또는 축산업 노동자	0명(0.0%)
식당 주방·청소·서빙	1명(5.0%)
간병인	0명(0.0%)
가정부·파출부	0명(0.0%)
유흥업소 접대원	0명(0.0%)
슈퍼마켓·편의점 등의 종업원	0명(0.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0명(0.0%)
대학생, 대학원생	0명(0.0%)
전업주부	0명(0.0%)
사무직	0명(0.0%)
무직	0명(0.0%)
기타	0명(0.0%)
무응답	1명(5.0%)
합	20명(100%)

<표 9> 한국으로의 이주계기별 분류 (설문 A 문항 8)

분류	빈도(%)
국제결혼	0명(0.0%)
취업	17명(85.0%)
부모님의 이주에 따라 동반입국	0명(0.0%)
한국에서 출생	0명(0.0%)
기타	1명(5.0%)
무응답	2명(10.0%)
합	20명(100%)

이들의 체류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도 취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0%(18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 결혼과 난민이라는 응답이 각각 5%(1명)로 나타났다. 응답 중 난민이 있었던 것은 특이한 현상이었다. 한국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로도 높은 임금을 쫓은 경우가 90%(18명)로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여 이주노동자 집단의 현재 직업, 입국 및 체류 동기 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설문 A형의 문항 16과 문항 24의 구체적인 응답 빈도와 비율은 다음의 <표 10>, <표 11>의 내용과 같다.

<표 10> 한국 체류 이유 (설문 A 문항 16)

분 류	빈도(%)
취업	18명(90.0%)
결혼	1명(5.0%)
유학	0명(0.0%)
난민	1명(5.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표 11> 한국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설문 A 문항 24)

분류	빈도(%)
높은 임금	18명(90.0%)
결혼	1명(5.0%)
한국문화에 대한 호기심	0명(0.0%)
기타	1명(5.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II-2-1-2. 결혼이주민 (설문 B형)

<표 12>에 나타나듯이 결혼이주민의 경우 설문에 참여한 대상은 여성이 9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남성의 경우는 4%에 불과했다. <표 13>은 설문대상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나타내는데, 1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설문 대상자들의 출신국은 <표 14>에서 보이듯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중국한족출신이 26.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베트남이 18.8%, 일본이 11.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출생지역도 <표 15>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 자신의 출신국이었다. <표 16>에서 제시하는 이들의 국내 거주기간은 1년 이하부터 5년 이상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2년 미만이 38.6%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거주가 33.7%로 역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설문대상자들을 서울(42.6%)과 부산(34.7%) 그리고 경상북도 구미(19.8%)로 한정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표 17> 참조). <표 18>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직업은 대부분 전업주부(72.3%)였으며, 그 외 공장노동자와 사무직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국내에 이주한 계기도 <표 19>에서 보이듯이 국제결혼이 85.1%로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12> 남녀 성별 분류 (설문 B 문항 1)

분류	빈도(%)
남	4명(4%)
여	97명(96%)
합	101명(100%)

<표 13> 출생연도별 분류 (설문 B 문항 2)

분류	빈도(%)
10세-19세	34명(33.7%)
20세-29세	41명(40.6%)
30세-39세	20명(19.8%)
40세-49세	1명(1.0%)
50세-59세	1명(1.0%)
60세 이상	4명(4.0%)
합	101명(100%)

<표 14> 국적별 분류 (설문 B 문항 3)

분류	빈도(%)
한국	4명(4.0%)
중국 한족	27명(26.7%)
중국 조선족	7명(6.9%)
베트남	19명(18.8%)
필리핀	8명(7.9%)
방글라데시	0명(0.0%)
태국	2명(2.0%)
인도네시아	1명(1.0%)
몽골	3명(3.0%)
일본	12명(11.9%)
러시아	4명(4.0%)
우즈베키스탄	2명(2.0%)
기타 나라	12명(11.9%)
합	101명(100%)

<표 15> 태어난 국가별 분류 (설문 B 문항 4)

분류	빈도(%)
모국(한국 외에 현재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91명(90.1%)
한국	1명(1.0%)
기타	7명(6.9%)
무응답	2명(2.0%)
합	101명(100%)

<표 16> 한국에서의 거주기간별 분류 (설문 B 문항 5)

분류	빈도(%)
1년 이하	22명(21.8%)
1년-2년	17명(16.8%)
2년-3년	8명(7.9%)
3년-4년	11명(10.9%)
4년-5년	9명(8.9%)
5년 이상	34명(33.7%)
합	101명(100%)

<표 17> 현재 거주 지역별 분류 (설문 B 문항 6)

분류	빈도(%)
서울특별시	43명(42.6%)
인천광역시	0명(0.0%)
대구광역시	0명(0.0%)
대전광역시	0명(0.0%)
부산광역시	35명(34.7%)
광주광역시	1명(1.0%)
울산광역시	0명(0.0%)
경기도	2명(2.0%)
충청남도	0명(0.0%)
충청북도	0명(0.0%)
경상남도	0명(0.0%)
경상북도	20명(19.8%)
전라남도	0명(0.0%)
전라북도	0명(0.0%)
강원도	0명(0.0%)
제주도	0명(0.0%)
합	101명(100%)

<표 18> 현재 직업별 분류 (설문 B 문항 7)

분류	빈도(%)
공장노동자	5명(5.0%)
건설노동자	1명(1.0%)
어부 또는 수산업 노동자	0명(0.0%)
농부 또는 축산업 노동자	1명(1.0%)
식당 주방·청소·서빙	1명(1.0%)
간병인	0명(0.0%)
가정부·파출부	0명(0.0%)
유흥업소 접대원	0명(0.0%)
슈퍼마켓·편의점 등의 종업원	0명(0.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0명(0.0%)
대학생, 대학원생	1명(1.0%)
전업주부	73명(72.3%)
사무직	9명(8.9%)
무직	2명(2.0%)
기타	6명(5.9%)
무응답	2명(2.0%)
합	101명(100%)

<표 19> 한국으로의 이주계기별 분류 (설문 B 문항 8)

분류	빈도(%)
국제결혼	86명(85.1%)
취업	6명(5.9%)
부모님의 이주에 따라 동반입국	7명(6.9%)
한국에서 출생	0명(0.0%)
기타	2명(2.0%)
합	101명(100%)

II-2-2.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문화 인권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주민의 인지도와 각 사업별 중요도

본 연구진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설문문항(부록 1, 부록 2 참조)을 작성하여 지난 3년간 행해진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문화 인권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주민의 인지도와 각 사업별 중요도를 알아보았다.

II-2-2-1. 이주노동자 (설문 A형)

<표 20> 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설문 A 문항 13)

분류	빈도(%)
네	9명(45.0%)
아니요	11명(55.0%)
합	20명(100%)

<표 21> 어떤 경로를 통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설문 A 문항 14)

분류	빈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4명(20.0%)
이주민 관련 기관을 통해서	1명(5.0%)
아는 사람을 통해서	8명(40.0%)
국가인권위원회의 홍보 자료를 통해서	0명(0.0%)
기타	2명(10.0%)
무응답	5명(25.0%)
합	20명(100%)

설문 13과 14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들어보았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응답자의 45%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나머지 55%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해 아직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는 생소한 기관이었다(<표 20> 참조). 그리고 들어본 적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40%)의 비율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무응답(25%), 언론매체를 통해(20%), 기타(10%), 이주민 관련기관을 통해서(5%)의 순이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의 비율이 제일 높게 나온 이유는 아마도 이주노동자들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체류연장이나 인권문제 등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교환하기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 추측해 본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홍보자료를 통해서라고 답한 사람은 전혀 없어서(0%)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를 알리는 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시급해 보인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는 위의 <표 21>의 내용과 같다.

<표 22>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다음과 같은 다문화 인권 정책 또는 사업을 실행해 왔습니다.
 다음 중 귀하가 (1)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는지, (2)각 사업별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로 표시해 주세요. (설문 A 문항 15)

질 문 (n=20)	(1)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_____.			(2) 이 사업이 _____고 생각한다.					
	있다	없다	무응답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무응답
<다문화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수립	6 (30.0%)	14 (70.0%)	0 (0.0%)	5 (25.0%)	13 (65.0%)	1 (5.0%)	0 (0.0%)	0 (0.0%)	1 (5.0%)
위원회 중장기 다문화인권정책실행계 획 수립	7 (35%)	11 (55.0%)	2 (10.0%)	7 (35%)	9 (45.0%)	2 (10.0%)	0 (0.0%)	0 (0.0%)	2 (10.0%)
인터넷에서의 인증적 표현에 대한 개선방안 의견 표명	6 (30.0%)	13 (65.0%)	1 (5.0%)	2 (10.0%)	8 (40.0%)	8 (40.0%)	0 (0.0%)	0 (0.0%)	2 (10.0%)
인종차별금지법 입법예고에 따른 공청회	3 (15.0%)	16 (80.0%)	1 (5.0%)	2 (10.0%)	9 (45.0%)	7 (35%)	1 (5.0%)	0 (0.0%)	1 (5.0%)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개선방안 권고	5 (25.0%)	14 (70.0%)	1 (5.0%)	4 (20.0%)	12 (60.0%)	2 (10.0%)	1 (5.0%)	0 (0.0%)	1 (5.0%)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 방안 정책 권고	7 (35.0%)	13 (65.0%)	0 (0.0%)	5 (25.0%)	11 (55.0%)	2 (10.0%)	0 (0.0%)	1 (0.0%)	1 (5.0%)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마련	6 (30.0%)	13 (65.0%)	1 (5.0%)	6 (30.0%)	11 (55.0%)	2 (10.0%)	0 (0.0%)	0 (0.0%)	1 (5.0%)
미등록 이주민 체포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개선 권고	6 (30.0%)	13 (65.0%)	1 (5.0%)	3 (15.0%)	12 (60.0%)	2 (10.0%)	1 (5.0%)	0 (0.0%)	2 (10.0%)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중의 취업활동 불가능 생존권 침해 개선 권고	6 (30.0%)	12 (60.4%)	2 (10.0%)	3 (15.0%)	9 (45.0%)	7 (35.0%)	0 (0.0%)	0 (0.0%)	1 (5.0%)

질 문	(1)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____.			(2) 이 사업이 _____고 생각한다.					
	있다	없다	무응답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무응답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국제결혼 광고현수막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9 (45.0%)	9 (45.0%)	2 (10.0%)	2 (10.0%)	8 (40.0%)	5 (25.0%)	1 (5.0%)	0 (0.0%)	4 (20.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견표명	6 (30.0%)	13 (65.0%)	1 (5.0%)	1 (5.0%)	7 (35.0%)	7 (35.0%)	2 (10.0%)	0 (0.0%)	3 (15.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견표명	5 (25.0%)	12 (60.0%)	3 (15.0%)	3 (15.0%)	9 (45.0%)	3 (15.0%)	2 (10.0%)	0 (0.0%)	3 (15.0%)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국제회의	5 (25.0%)	12 (60.0%)	3 (15.0%)	1 (5.0%)	10 (50.0%)	5 (25.0%)	1 (5.0%)	0 (0.0%)	3 (15.0%)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방안 마련	7 (35.0%)	10 (50.0%)	3 (15.0%)	4 (20.0%)	10 (50.0%)	2 (10.0%)	0 (0.0%)	0 (0.0%)	4 (20.0%)
위장결혼에 따른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7 (35.0%)	9 (45.0%)	4 (20.0%)	2 (10.0%)	12 (60.0%)	1 (5.0%)	1 (5.0%)	0 (0.0%)	4 (20.0%)
<다문화가정아동의 인권보장>									
외국인보호소 내 아동구금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5 (25.0%)	13 (65.0%)	2 (10.0%)	1 (5.0%)	12 (60.0%)	4 (20.0%)	0 (0.0%)	0 (0.0%)	3 (15.0%)
미등록이주아동의 중학교 학습권 보장 권고	7 (35.0%)	11 (55.0%)	2 (10.0%)	2 (10.0%)	9 (45.0%)	6 (30.0%)	0 (0.0%)	0 (0.0%)	3 (15.0%)
이주아동교육권보장 개선방안 정책 권고	4 (20.0%)	14 (60.0%)	2 (10.0%)	0 (0.0%)	11 (55.0%)	5 (25.0%)	1 (0.0%)	0 (0.0%)	3 (15.0%)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 접근권 개선방안 마련	3 (15.0%)	15 (75.0%)	2 (10.0%)	2 (10.0%)	8 (40.0%)	5 (25.0%)	0 (0.0%)	0 (0.0%)	5 (25.0%)
<다문화인권증진 관련 기타 사업>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9 (45.0%)	9 (45.0%)	2 (10.0%)	3 (15.0%)	12 (60.0%)	2 (10.0%)	0 (0.0%)	0 (0.0%)	3 (15.0%)
미등록 이주자 인권보호를 위한 방문조사	6 (30.0%)	12 (60.0%)	2 (10.0%)	2 (10.0%)	12 (60.0%)	3 (15.0%)	0 (0.0%)	0 (0.0%)	3 (15.0%)

<표 22>로 제시된 15번의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다문화 인권 정책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도와 중요도를 조사하고자 실시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설문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했던 많은 정책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그나마 <다문화인권증진 관련 기타 사업> 정책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정책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 방안 정책 권고,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마련, <다문화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정책에서 위원회 중장기 다문화 인권정책 실행계획 수립,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정책에서 국제결혼 광고현수막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방안 마련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권보장>정책에서 미등록이주아동의 중학교 학습권 보장 권고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책의 중요도 조사에서는 설문응답자가 대부분의 항목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다’라고 답해 앞으로도 이주민을 위한 더 많은 다문화인권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의 상대적인 중요도(‘매우 중요’ 또는 ‘중요’라고 답한 비율)를 볼 때 <다문화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정책에서 이주민권 가이드라인 수립이 90%의 응답률을 보여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여겨졌고 이어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정책에서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마련(85%), 그 다음이 같은 비율(각각 80%)로 <다문화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정책에서 위원회 중장기 다문화 인권정책 실행계획 수립,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정책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 방안 정책 권고,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개선방안 권고가 꼽혔다. 확실히 설문응답자가 이주노동자이다 보니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답해 그들의 큰 관심을 반영했다. 이 외에도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에서 미등록 이주민 체포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개선 권고(75%),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정책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방안 마련(70%), 위장결혼에 따른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70%)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II-2-2-2. 결혼이주민 (설문 B형)

<표 23>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여부 (설문 B 문항 13)

분류	빈도(%)
네	43명(42.6%)
아니요	58명(57.4%)
합	101명(100%)

<표 23>에 나타나듯이 이주민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도’ 조사 결과 결혼이주민 101명의 응답자 가운데 57.4%(58명)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본 설문에 참여한 이주민의 과반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문화 인권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해 보았는데 구체적인 응답 빈도와 비율은 다음 <표 24>의 내용과 같다.

<표 24>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다음과 같은 다문화 인권 정책 또는 사업을 실행해 왔습니다.

다음 중 귀하가 (1)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는지, (2)각 사업별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로 표시해 주세요. (설문 B 문항 15)

질 문 (n=94)	(1)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_____.			(2) 이 사업이 _____고 생각한다.					
	있다	없다	무응답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무응답
<다문화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수립	29 (30.9%)	61 (64.9%)	4 (4.3%)	33 (35.1%)	27 (28.7%)	21 (22.3%)	0 (0.0%)	0 (0.0%)	13 (13.8%)
위원회 중장기 다문화인권정책 실행계획 수립	22 (23.4%)	68 (72.3%)	4 (4.3%)	32 (34.0%)	26 (27.7%)	22 (23.4%)	0 (0.0%)	0 (0.0%)	14 (14.9%)
인터넷에서의 인종적 표현에 대한 개선방안 의견 표명	20 (21.3%)	69 (73.4%)	5 (5.3%)	30 (31.9%)	33 (35.1%)	18 (19.1%)	0 (0.0%)	0 (0.0%)	13 (13.8%)
인종차별금지법 입법예고에 따른 공청회	25 (26.6%)	64 (68.1%)	5 (5.3%)	32 (34.0%)	27 (28.7%)	20 (21.3%)	1 (1.1%)	0 (0.0%)	14 (14.9%)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개선방안 권고	28 (29.8%)	58 (61.7%)	8 (8.5%)	31 (33.0%)	25 (26.6%)	21 (22.3%)	0 (0.0%)	0 (0.0%)	17 (18.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 방안 정책 권고	28 (29.8%)	58 (61.7%)	8 (8.5%)	35 (37.2%)	25 (26.6%)	18 (19.1%)	0 (0.0%)	0 (0.0%)	16 (17.0%)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마련	24 (25.5%)	62 (66.0%)	8 (8.5%)	31 (33.0%)	24 (25.5%)	21 (22.3%)	1 (1.1%)	0 (0.0%)	17 (18.1%)
미등록 이주민 체포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개선 권고	32 (34.0%)	54 (57.4%)	8 (8.5%)	31 (33.0%)	24 (25.5%)	22 (23.4%)	0 (0.0%)	0 (0.0%)	17 (18.1%)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중의 취업활동 불가는 생존권 침해 개선 권고	26 (27.7%)	60 (63.8%)	8 (8.5%)	33 (35.1%)	23 (24.5%)	22 (23.4%)	0 (0.0%)	0 (0.0%)	16 (17.0%)

질 문	(1)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_____.			(2) 이 사업이 _____고 생각한다.					
	있다	없다	무응답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무응답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국제결혼 광고현수막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33 (35.1%)	54 (57.4%)	7 (7.4%)	35 (37.2%)	25 (26.6%)	19 (20.2%)	1 (1.1%)	0 (0.0%)	14 (14.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견표명	37 (39.4%)	51 (54.3%)	6 (6.4%)	38 (40.4%)	22 (23.4%)	20 (21.3%)	0 (0.0%)	0 (0.0%)	14 (14.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견표명	29 (30.9%)	55 (58.5%)	10 (10.6%)	37 (39.4%)	20 (21.3%)	23 (24.5%)	0 (0.0%)	0 (0.0%)	14 (14.9%)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국제회의	34 (36.2%)	54 (57.4%)	6 (6.4%)	37 (39.4%)	25 (26.6%)	18 (19.1%)	0 (0.0%)	0 (0.0%)	14 (14.9%)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방안 마련	33 (35.1%)	54 (57.4%)	7 (7.4%)	37 (39.4%)	24 (25.5%)	20 (21.3%)	0 (0.0%)	0 (0.0%)	13 (13.8%)
위장결혼에 따른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31 (33.0%)	57 (60.6%)	6 (6.4%)	31 (33.0%)	29 (30.9%)	17 (18.1%)	1 (1.1%)	0 (0.0%)	16 (17.0%)
<다문화가정아동의 인권보장>									
외국인보호소 내 아동구금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23 (24.5%)	61 (64.9%)	10 (10.6%)	38 (40.4%)	23 (24.5%)	21 (22.3%)	0 (0.0%)	0 (0.0%)	12 (12.8%)
미등록이주아동의 중학교 학습권 보장 권고	17 (18.1%)	69 (73.4%)	8 (8.5%)	37 (39.4%)	22 (23.4%)	22 (23.4%)	0 (0.0%)	0 (0.0%)	13 (13.8%)
이주아동교육권보장 개선방안 정책 권고	23 (24.5%)	64 (68.1%)	7 (7.4%)	41 (43.6%)	19 (20.2%)	21 (22.3%)	0 (0.0%)	0 (0.0%)	13 (13.8%)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 접근권 개선방안 마련	17 (18.1%)	71 (75.5%)	6 (6.4%)	39 (41.5%)	21 (22.3%)	21 (22.3%)	0 (0.0%)	0 (0.0%)	13 (13.8%)
<다문화인권증진 관련 기타 사업>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21 (22.3%)	59 (62.8%)	14 (14.9%)	26 (27.7%)	29 (30.9%)	20 (21.3%)	0 (0.0%)	0 (0.0%)	19 (20.2%)
미등록 이주자 인권보호를 위한 방문조사	17 (18.1%)	63 (67.0%)	14 (14.9%)	26 (27.7%)	26 (27.7%)	23 (24.5%)	0 (0.0%)	0 (0.0%)	19 (20.2%)

<표 24>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다문화 인권정책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도와 중요도를 조사하고자 실시한 설문 내용과 결과의 요약이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했던 많은 정책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그나마 <다문화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정책에서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의 수립(30.9%),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에서 미등록 이주민 체포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개선 권고(34.0%),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정책에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 표명(39.4%),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국제회의(36.2%), 국제결혼 광고현수막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35.1%),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방안 마련(35.1%),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권보장> 정책에서 외국인 보호소 내 아동구금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24.5%), 이주아동 교육권보장 개선방안 정책권고(24.5%) 등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에 대한 정책들의 경우 대부분 다른 정책들보다는 이주민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설문에 응한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혼인을 통해 한국에 온 이주여성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문화 인권정책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도’ 조사에서 심각한 사안은 모든 영역에서 설문에 응답한 이주민의 과반수가 이러한 개별 정책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답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인권정책에 대해 잘 모르거나 무지함을 보여 주었다.

정책의 중요도 조사에서는 설문에 응한 이주민들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다’라고 답해 앞으로도 이주민을 위한 더 많은 다문화인권정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정책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볼 때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정책에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견 표명,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권보장> 정책에서 이주아동 교육권보장 개선방안 정책권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 마련 등이 각각 62.3%의 비율로 가장 중요한 정책들로 여겨졌고 그 다음이 60.4%로 외국인보호소 내 아동구금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그 다음이 각각 58.5%로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정책에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견표명,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권보장> 정책에서 미등록이주아동의 중학교 학습권 보장 권고, <다문화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정책에서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수립이 꼽혔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역시 이주여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직접 피부로 느껴지는 사항들에 대한 정책들을 더 선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답한 결과로 여겨진다. 그 밖에도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정책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방안 마련’(56.6%),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정책 권고’(56.6%)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Ⅲ. 이주민 당사자가 인지하고 있는 개인적 관심 정책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정책 참여과정 경로

본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족출신 아동이나 이주아동들의 관심영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참여과정 경로에 대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주요 이주인권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구성한다.

Ⅲ-1. 언어소통 및 한국어습득문제

Ⅲ-1-1. 이주노동자 (설문 A형)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생활에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의 제한이라는 응답과 언어소통문제라는 응답이 각각 55%로 1위를 차지하였다(복수응답가능). 이 중 전자는 노동기간 연장에 대한 희망과 관련된 문제인 데 비해 후자의 언어소통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겪게 되는 현실의 문제이다. 이 질문에 대한 각각의 구체적인 응답 빈도와 비율은 다음 <표 25>의 내용과 같다.

<표 25> 한국생활에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 (복수응답가능) (설문 A 문항 23)

분류	빈도(%)
거주기간의 제한 (2+3년)	11 (55.0%)
회사 이전의 횟수 제한(3회)	6 (30.0%)
회사 내에서의 임금차별 한국인 회사동료들과의 임금차이	3 (15.0%)
회사동료들의 욕설과 따돌림	0 (0.0%)
언어소통문제	11 (55.0%)
배우자와의 갈등	0 (0.0%)
자녀 교육문제	2 (10.0%)
국적취득문제	1 (5.0%)
비싼 방값과 물가	1 (5.0%)
일반 한국인들의 안 좋은 시선	3 (15.0%)
무응답	0 (0.0%)
합	38(190.0%)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언어소통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10명)가 자신의 수준을 ‘중’, 45%(9명)가 ‘하’라고 한 것을 볼 때 이주노동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이 정확한 언어 측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자기 수준 평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주 노동자의 한

국어 수준은 실제로 이보다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한국 생활과 작업장 안전 등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절실히 보인다.

<표 26> 한국어 언어소통수준 (설문 A 문항 18)

분류	빈도(%)
상	1명(5.0%)
중	10명(50.0%)
하	9명(45.0%)
의사소통 불가능	0명(0.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다음으로 한국어를 배운 경로와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방법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응답자의 55%(11명)가 '회사동료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웠으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방법 역시 '회사동료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75%(15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과반수 또는 대다수가 자신과 생활을 함께하는 한국인 회사동료를 한국어 학습의 중요한 통로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를 배운 경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출신국에서 배움'과 '기타(독학 등)'가 각각 25%(5명), 15%(3명)였다. 이 중 이주노동자가 출신국에서 한국어를 배운 경우는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을 대비한 경우로 볼 수 있는데, 대개 단기 속성반을 거쳤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 수준이 매우 낮거나 그다지 높지 않을 수밖에 없다. 또한 독학 등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운 경우에도 기초적인 일상 회화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방법으로 선택한 응답의 85%(17명)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것인데 비해 단 1명(5%)만이 한국어 강좌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여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이주노동자들이 시간적, 경제적 제약으로 일터를 벗어나 한국어를 배우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방증 자료가 된다. 이와 관련된 설문 A형의 문항 19와 문항 20의 구체적인 응답 빈도와 비율은 다음의 <표 27>, <표 28>의 내용과 같다.

<표 27> 한국어를 배운 경로 (설문 A 문항 19)

분류	빈도(%)
다문화지원센터의 한국어 강좌	0명(0.0%)
배우자와 가족	1명(5.0%)
출신국에서 배움	5명(25.0%)
회사동료	11명(55.0%)
기타(독학)	3명(15.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표 28>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방법 (설문 A 문항 20)

분류	빈도(%)
한국어 강좌를 통해서	1명(5.0%)
배우자와 가족을 통해서	2명(10.0%)
회사동료들을 통해서	15명(75.0%)
기타	2명(10.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다음으로 한국어를 배울 방법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의 산포도가 높았는데, 그 중 ‘한국어 강좌가 어디서 제공되는지 모른다’는 응답이 35%(7명)로 1위 응답률을 보였다. 그 밖에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다(4명)’, ‘한국어에 관심이 없다(3명)’, ‘한국어 강좌가 너무 부족하다(2명)’, ‘낮은 수준의 강좌만 있다(2명)’, ‘회사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2명)’ 등의 응답이 엇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표 29> 귀하가 한국어를 배울 방법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설문 A 문항 21)

분류	빈도(%)
한국어 강좌가 어디서 제공되는지 모른다	7 (35.0%)
한국어 강좌가 너무 부족하다	2 (10.0%)
한국어 강좌가 열리는 곳이 멀다	1 (5.0%)
낮은 수준의 강좌만 있다	2 (10.0%)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했다	0 (0.0%)
회사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2 (10.0%)
한국어에 관심이 없다	3 (15.0%)
기타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다)	4 (20.0%)
무응답	0 (0.0%)
합	21(105.0%)

Ⅲ-1-2. 결혼이주민 (설문 B형)

결혼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문제도 언어소통의 어려움(설문 B 문항 23, 응답률 66.3%)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결혼이주민의 언어소통과 한국어습득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설문과 응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표 30> 한국어 언어소통수준 (설문 B 문항 18)

수준	빈도(%)
상	13명(12.9%)
중	54명(53.5%)
하	27명(26.7%)
의사소통 불가능	5명(5.0%)
무응답	2명(2.0%)
합	101명(100%)

본 설문내용에 응답한 결혼이주민들은 53.5%가 자신의 한국어 언어소통수준을 '중'으로 판단했고 26.7%는 '하'로 5.0%는 '의사소통 불가능'으로 대답했다.

<표 31> 한국어를 배운 경로 (설문 B 문항 19)

분류	빈도(%)
다문화지원센터의 한국어 강좌	82 (81.2%)
배우자와 가족	13 (12.9%)
출신국에서 배움	7 (6.9%)
회사동료	6 (5.9%)
기타	1 (1.0%)
무응답	1 (1.0%)
합	110 (108.9%)

본 문항에 대해 결혼이주민들은 81.2%가 한국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배우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설문참여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결된 이주여성들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2>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방법 (설문 B 문항 20)

분류	빈도(%)
한국어 강좌를 통해서	80 (79.2%)
배우자와 가족을 통해서	18 (17.8%)
회사동료들을 통해서	2 (2.0%)
기타	4 (4.0%)
무응답	0 (0.0%)
합	104 (103.0%)

본 설문에 참여한 결혼이주민들의 79.2%가 한국어 강좌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답했는데 이는 이들이 공식적인 전문 강사에 의한 한국어 강좌가 공공기관을 통해 개설되어 제공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3> 한국생활에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 (복수응답가능) (설문 B 문항 23)

분류	빈도(%)
거주기간의 제한 (2+3년)	9 (8.9%)
회사 이전의 횟수 제한(3회)	1 (1.0%)
회사 내에서의 임금차별 한국인 회사동료들과의 임금차이	16 (15.8%)
회사동료들의 욕설과 따돌림	1 (1.0%)
언어소통문제	67 (66.3%)
배우자와의 갈등	3 (3.0%)
자녀 교육문제	27 (26.7%)
국적취득문제	12 (11.9%)
비싼 방값과 물가	36 (35.6%)
일반 한국인들의 안 좋은 시선	14 (13.9%)
무응답	0 (0.0%)
합	186 (184.2%)

<표 33>의 문항은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에 대해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첫 번째 어려운 점으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언어소통문제(66.3%)’를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비싼 방값과 물가(35.6%)’, ‘자녀교육문제(26.7%)’, ‘회사 내에서의 임금차별/한국인 회사동료들과의 임금차이(15.8%)’ 순이었다.

<표 34> 언어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설문 B 문항 52)

답변	빈도(%)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38 (37.6%)
아동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18 (17.8%)
가족과 사회 구성원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23 (22.8%)
아동을 위한 이중 언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24 (23.8%)
기타	2 (2.0%)
무응답	7 (6.9%)
합	112 (110.9%)

결혼이주민들이 경험하는 언어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주민들은 첫 번째로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꼽았다(37.6%). 그 다음으로 ‘아동을 위한 이중 언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23.8%)’, ‘가족과 사회구성원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22.8%)’, ‘아동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프로그램(17.8%)’ 순이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주민들이 한국어교육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중 언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크다는 것이다.

Ⅲ-2. 이주민의 차별관련 문제

Ⅲ-2-1. 이주노동자 (설문 A형)

이 부분에서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일상에서 겪는 차별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주민으로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차별 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차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과 응답을 제시하면 이하와 같다.

<표 66>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면, 주로 어느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 A 문항 11) 복수가능

분류	빈도(%)
피부색	3명(15.0%)
출신 국가	9명(45.0%)
계층(경제력)	2명(10.0%)
외모	3명(15.0%)
모든 외국인에 대해 똑같이 차별적임	1명(5.0%)
그다지 차별적이지 않음	5명(25.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면 어느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5.0%가 '출신국가에 따라'라고 하였으며, 그 외에는 피부색(15%), 외모(15%), 경제력(10%) 등으로 응답하였고, '그다지 차별적이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도 25%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85%가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이주민을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표 67> 귀하는 자신이 이주민이어서 차별당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설문 A 문항 12)

분류	빈도(%)
네	9명(45.0%)
아니요	11명(55.0%)
합	20명(100%)

자신이 이주민이어서 차별당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있다'와 '없다'를 거의 반반씩의 비율로(차별당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55%로 약간 우세) 응답했다. 이는 응답자들 개개인의 경험을 나타낸 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일방적으로 차별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68> 귀하는 한국에서 관공서 공무원들과 직접 접촉한 경험이 있습니까?
(설문 A 문항 25)

분류	빈도(%)
네	11명(55.0%)
아니요	9명(45.0%)
합	20명(100%)

<표 69> 귀하가 한국의 공무원들과 접촉했다면 어떤 공무원들입니까? 복수응답가능
(설문 A 문항 26)

분류	빈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13 (65.0%)
경찰	1 (5.0%)
구청이나 주민센터 직원	1 (5.0%)
학교 또는 센터의 선생님	0 (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10.0%)
기타	4 (20.0%)
무응답	0 (0.0%)
합	22 (110.0%)

<표 70> 한국의 공무원들은 귀하를 어떻게 대합니까? (설문 A 문항 27)

분류	빈도(%)
매우 친절	1명(5.0%)
친절	15명(75.0%)
불친절	0명(0.0%)
매우 불친절	1명(5.0%)
무응답	3명(15.0%)
합	20명(100.0%)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공무원 접촉 경험유무는 '55% 대 45%'로 나타나고 있다. 접촉한 공무원으로는 65%가 출입국관리소 직원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이들의 체류자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 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구청이나 주민센터 및 경찰 공무원들과의 접촉도 소수 응답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들이 느낀 한국의 공무원들이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는 '친절하다'라는 응답이 75.0%로 압도적인 것을 보면, 공무원의 서비스 태도에서 비롯되는 불편함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III-2-2. 결혼이주민 (설문 B형)

<표 71> 이주민이 인식하는 차별 기준 (설문 B 문항 11) (복수응답가능)

분류	빈도(%)
피부색	11명(10.9%)
출신국가	37명(36.6%)
계층(경제력)	10명(9.9%)
외모	6명(5.9%)
모든 외국인에 대해 똑같이 차별적임	15명(14.9%)
그다지 차별적이지 않음	21명(20.8%)
무응답	1명(1.0%)
합	101명(100%)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면 어느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6.6%가 ‘출신국가에 따라’라고 하였으며 14.9%가 ‘모든 외국인에 대해 똑같이 차별적임’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외국인에게 ‘그다지 차별적이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20.8%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표 72> 자신이 이주민이어서 차별당한다고 생각하는 여부 (설문 B 문항 12)

분류	빈도(%)
있다	58명(57.4%)
없다	43명(42.6%)
합	101명(100%)

자신이 이주민이어서 차별당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있다’가 58명(57.4%), ‘없다’가 43명(42.6%)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항 9에서 차별의 정도가 보통 이상으로 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 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 질문에서 결혼이주민들은 9번 문항에 대한 응답보다는 좀 더 자신의 직접적이고 주관적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며 답을 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표 73> 한국 공무원과의 접촉 경험 (설문 B 문항 25)

분류	빈도(%)
네	87명(86.1%)
아니요	14명(13.9%)
합	101명(100%)

<표 74> 접촉했던 한국공무원의 유형 (설문 B 문항 26)

분류	빈도(%)
출입국관리소 직원	44 (43.6%)
경찰	13 (12.9%)
구청이나 주민센터 직원	35 (34.7%)
학교 또는 센터의 선생님	24 (23.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4 (33.7%)
기타	4 (4.0%)
무응답	8 (7.9%)
합	162 (160.4%)

<표 75> 한국공무원들이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 (설문 B 문항 27)

분류	빈도(%)
매우친절	26명 (25.7%)
친절	58명 (57.4%)
불친절	9명 (8.9%)
매우 불친절	1명 (1.0%)
무응답	7명 (6.9%)
합	101명(100%)

<표 73>, <표 74>, <표 75>의 응답에서 결혼이주민들은 대부분(86.1%)이 한국에서 공무원에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들이 접촉했던 공무원의 유형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43.6%), 구청이나 주민센터 직원(34.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33.7%), 학교 또는 센터의 선생님(23.8%), 경찰공무원(12.9%) 등의 순으로 다양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의 공무원들이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친절하다 57.4%, 매우 친절하다 25.7%).

<표 76> 인권 침해 사례 경험 실태 (설문 B 문항 63)

경험 내용	경험자(%) (n=55)	아니요	무응답
직장(혹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12(21.8%)	42(76.4%)	1(1.8%)
이유 없이 검문이나 체포를 당한 적 있다.	6(10.9%)	49(89.1%)	0(0.0%)
종교 활동 참여를 금지당하거나 방해 받은 적 있다.	7(12.7%)	47(85.5%)	1(1.8%)
언어나 식습관 때문에 놀림 받은 적 있다.	15(27.3%)	40(72.7%)	0(0.0%)
피부색이나 옷과 관련하여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13(23.6%)	41(74.5%)	1(1.8%)
상점 등에서 물건 판매를 거부당한 적 있다.	17(30.9%)	37(67.3%)	1(1.8%)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	16(29.1%)	39(70.9%)	0(0.0%)
한국내 동포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도 직장 상사나 동료, 한국인 가족, 학교 선생님 등의 반대나 금지로 참여할 수 없었던 적이 있다.	9(16.4%)	46(83.6%)	0(0.0%)
동포 모임을 조직하고 싶어도 직장 상사나 동료, 한국인 가족, 학교 선생님 등의 반대나 금지로 좌절했던 적이 있다.	5(9.1%)	49(89.1%)	1(1.8%)

경험 내용	경험자(%) (n=55)	아니요	무응답
아프거나 다쳤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5(9.1%)	50(90.9%)	0(0.0%)
지낼 곳이 없어 노숙을 한 적이 있다.	4(7.3%)	50(90.9%)	1(1.8%)
모국이나 동포(혹은 부모님의 나라와 그 국민들)에 대한 모욕을 들은 적이 있다.	12(21.8%)	42(76.4%)	1(1.8%)
돈이 없어 식사를 하지 못한 적이 있다.	5(9.1%)	50(90.9%)	0(0.0%)
모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나 행사를 기획하거나 참여하고 싶었으나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한 적 있다.	4(7.3%)	50(90.9%)	1(1.8%)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가정생활에 대하여 원하지 않은 간섭을 받은 적 있다.	6(10.9%)	48(87.3%)	1(1.8%)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직장, 교회, 지역사회 등 공동체에서 발언권을 갖지 못하거나 의견을 무시당한 적 있다.	15(27.3%)	39(70.9%)	1(1.8%)
학교에 가고 싶거나 혹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적 있다.	4(7.3%)	50(90.9%)	1(1.8%)
누군가 나에게 물건 등을 던진 적이 있다.	3(5.5%)	51(92.7%)	1(1.8%)
신체적 폭력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입원 한 적이 있다.	5(9.1%)	49(89.1%)	1(1.8%)
성적인 농담이나 모욕적인 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	7(12.7%)	47(85.5%)	1(1.8%)
팔을 비틀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는 행위를 당한 적 있다.	3(5.5%)	51(92.7%)	1(1.8%)
-이하 문항은 성인만 응답한 문항-	(n=55)		
한국인 직원보다 월급을 낮게 받은 적 있다.	6(10.9%)	44(80.0%)	5(9.1%)
한국인 직원과 같은 시간을 일했으나 임금을 적게 받은 적이 있다.	12(21.8%)	38(69.1%)	5(9.1%)
야근이나 잔업, 휴일 출근 등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7(12.7%)	42(76.4%)	6(10.9%)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노조 가입을 거부당한 적 있다.	6(10.9%)	43(78.2%)	6(10.9%)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자율방범대, 주부모임, 조기축구회 등 지역사회 모임에 가입을 거부당한 적 있다.	5(9.1%)	47(85.5%)	3(5.5%)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나의 월급, 통장, 소지품 등을 타인이 관리한 적 있다.	3(5.5%)	48(87.3%)	4(7.3%)
자녀나 배우자와의 만남을 타당한 이유 없이 방해받거나 금지당한 적 있다.	4(7.3%)	46(83.6%)	5(9.1%)

설문문항 63에서는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경험 실태’를 조사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55명 가운데 인권침해 유형경험자가 제시한 주요 항목들 중 각 항목별 10% 이상의 차별적 경험은 다음과 같다.

- 언어나 식습관 때문에 놀림 받은 적이 있다. (15명 27.3%)
- 상점 등에서 물건 판매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 (17명, 30.9%)

- 피부색이나 옷과 관련하여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13명, 23.6%)
-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 (16명, 29.1%)
- 모국이나 동포(혹은 부모님의 나라와 그 국민들)에 대한 모욕을 들은 적이 있다. (12명, 21.8%)
-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직장, 교회, 지역사회 등 공동체에서 발언권을 갖지 못하거나 의견을 무시당한 적이 있다. (15명 27.3%)
- 성적인 농담이나 모욕적인 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 (7명, 12.7%)

특히 위와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 이주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는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의 차별을 지양하는 반차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비이주민(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표 77> 귀하 주위의 사람들은 귀하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설문 B 문항 65)

질문 (n=55)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	- - -	보통	- - -	매우 차별적 이다.	만나 게 되는 일이 없음	무응답
직장동료	9 (16.4%)	15 (27.3%)	14 (25.5%)	3 (5.5%)	0 (0.0%)	7 (12.7%)	7 (12.7%)
직장상사	10 (18.2%)	14 (25.5%)	12 (21.8%)	3 (5.5%)	0 (0.0%)	8 (14.5%)	8 (14.5%)
학교 선생님	19 (34.5%)	15 (27.3%)	14 (25.5%)	2 (3.6%)	1 (1.8%)	2 (3.6%)	2 (3.6%)
학교 친구	19 (34.5%)	11 (20.0%)	12 (21.8%)	2 (3.6%)	2 (3.6%)	6 (10.9%)	3 (5.5%)
이웃 주민	17 (30.9%)	14 (25.5%)	20 (36.4%)	2 (3.6%)	2 (3.6%)	0 (0.0%)	0 (0.0%)
한국인 가족(부모, 시부모, 배우자의 형제 등)	19 (34.5%)	19 (34.5%)	10 (18.2%)	3 (5.5%)	2 (3.6%)	0 (0.0%)	2 (3.6%)
상점 주인	14 (25.5%)	21 (38.2%)	16 (29.1%)	1 (1.8%)	1 (1.8%)	0 (0.0%)	2 (3.6%)
대중교통 운전자	17 (30.9%)	17 (30.9%)	15 (27.3%)	2 (3.6%)	2 (3.6%)	0 (0.0%)	2 (3.6%)
공무원	16 (29.1%)	19 (34.5%)	15 (27.3%)	3 (5.5%)	0 (0.0%)	0 (0.0%)	2 (3.6%)
스님, 목사님, 신부님 등 성직자	16 (29.1%)	17 (30.9%)	15 (27.3%)	1 (1.8%)	2 (3.6%)	2 (3.6%)	2 (3.6%)
이주민 지원 단체 상담원	17 (30.9%)	19 (34.5%)	11 (20.0%)	4 (7.3%)	2 (3.6%)	0 (0.0%)	2 (3.6%)

<표 77>의 내용은 결혼이주민들이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주위 사람들을 가족과 이웃, 직업별로 분류하여 이들이 이주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주위의 한국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본 설문문항에 대한 답변은 이주민 자신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개별적 사례와 관련되는 <표 76(설문문항 63)>의 내용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표 78> 인권 침해 경험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복수응답가능)
(설문 B 문항 67)

답변	빈도(%)
내가 직접 항의하였다	4(7.3%)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호소하였다	12(21.8%)
한국에 거주하는 동포나 이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4(7.3%)
모국에 거주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상담하였다	6(10.9%)
인권 단체나 이주민 지원 기관에 신고하였다	0(0.0%)
교회, 절, 성당의 성직자에게 호소하였다	0(0.0%)
경찰에 신고하였다	2(3.6%)
다문화가정 방문 상담원이나 복지업무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5(9.1%)
(직장에 다니는 경우) 상사나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2(3.6%)
(학생인 경우)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1.8%)
모국의 가족에게 하소연 하였다	2(3.6%)
차별당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	3(5.5%)
그냥 참았다	6(10.9%)
기타	2(3.6%)
차별 당한 경험이 없다	23(41.8%)
무응답	11(20.0%)
합	83(150.9%)

<표 78>에서는 이주민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물어 보았는데 41.8%가 ‘차별 당한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했고 무응답도 20.0%에 달했다. 다만 자신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느꼈을 때 한국인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경우(21.8%), 다문화가정 방문 상담원이나 복지업무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9.1%), 그 밖에 경찰에 신고한 경우, 학생인 경우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 모국의 가족에게 하소연한 경우 등이 있었다.

III-3 이주민의 체류관련 문제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불편을 느끼는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가 체류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이주민들의 체류연장 및 국적취득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설문과 응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Ⅲ-3-1. 이주노동자 (설문 A형)

<표 35> 체류허가를 연장하는 방법 (설문 A 문항 28)

분류	빈도(%)
직접 해결한다	3명(15.0%)
회사가 해결해 준다	12명(60.0%)
배우자와 동행하여 해결한다	0명(0.0%)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0명(0.0%)
같은 국가 출신의 지인이 도와준다	1명(5.0%)
기타	3명(15.0%)
무응답	1명(5.0%)
합	20명(100.0%)

<표 36> 본인의 여권소지 유무 (설문 A 문항 32)

분류	빈도(%)
네	17명(85.0%)
아니요	2명(10.0%)
무응답	1명(5.0%)
합	20명(100.0%)

<표 37> 위의 질문에서 아니라면 귀하의 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설문 A 문항 33)

분류	빈도(%)
회사 사장님	1명(5.0%)
회사 동료	2명(10.0%)
배우자나 가족	0명(0.0%)
기타	0명(0.0%)
무응답	17명(85.0%)
합	20명(100.0%)

설문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본인들이 여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으며 (85.0%) 체류연장은 대부분 회사를 통해 해결(6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의 체류문제에서 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주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일자리 선택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표 38> 체류허가를 연장하거나 국적취득 시 가장 어려운 점 (설문 A 문항 29)

분류	빈도(%)
회사의 비협조	5명(25.0%)
배우자의 비협조	3명(15.0%)
공무원의 비협조적 태도	2명(10.0%)
언어문제	3명(15.0%)
기타 (없음)	6명(30.0%)
무응답	1명(5.0%)
합	20명(100.0%)

이주노동자들이 체류허가를 연장하거나 국적취득 시 가장 어려운 점은 회사의 비협조가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설문 문항 모두에 걸쳐서 골고루 응답이 나왔다. 이주노동자들이 체류허가를 연장하거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회사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추어 저마다 회사 내에서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 간의 올바른 관계정립에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9> 체류허가나 국적취득에 관련된 한국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 (설문 A 문항 30)

분류	빈도(%)
잘 알고 있다	2명(10.0%)
알고 있다	13명(65.0%)
잘 모르고 있다	4명(20.0%)
전혀 모르고 있다	1명(5.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표 40> 체류허가나 국적취득에 관련된 한국법령을 알게 된 경로 (설문 A 문항 31)

분류	빈도(%)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받았다	5명(25.0%)
한국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2명(10.0%)
한국에 거주하는 같은 나라 출신 사람들에게서 들었다	4명(20.0%)
배우자가 알려주었다	0명(0.0%)
학교에서 알게 되었다	3명(15.0%)
회사에서 알게 되었다	3명(15.0%)
기타	2명(10.0%)
무응답	2명(10.0%)
합	20명(100.0%)

본 설문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의 65.0%가 체류허가나 국적취득에 관련된 한국의 법령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비율도 25.0%에 달했다. 그리고 체류허가나 국적취득에 관련된 한국법령을 알게 된 경로는 한국에 도착하기 전 사전교육을 통한 경우(25.0%), 한국에 거주하는 같은 나라 출신 사람들을 통한 경우(20.0%), 그리고 학교나 회사에서 알게 된 경우(15.0%)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아울러 사회활동 범위에서도 관련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41> 당신은 어떤 형태(신분, 자격)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설문 A 문항 34)

분류	빈도(%)
합법적(고용허가제)	8명(40.0%)
미등록 이주노동자	9명(45.0%)
결혼이주민	0명(0.0%)
기타	3명(15.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본 설문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은 합법적 고용허가제에 의한 취업이 40%인 반면에 미등록 취업이 오히려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용허가제가 허용한 체류기간(3+2년)을 초과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표 42> 당신이 고용되어 있는 현재의 고용허가제에 대해 만족합니까? (설문 A 문항 54)

분류	빈도(%)
만족한다	5명(25.0%)
그냥 그렇다	15명(75.0%)
불만족스럽다	0명(0.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표 43> 귀하는 한국에서 고용허가제의 체류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싶습니까?
(설문 A 문항 55)

분류	빈도(%)
네	17명(85.0%)
아니요	3명(15.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설문 응답자 중 25%는 현재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반면, 75%는 현재 고용허가제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답하고 있으며, 85%에 이르는 응답자들은 고용허가제가 보증한 5년의 체류기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한국에 남아 일하고 싶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한국 내 취업활동에서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앞 문항에서 응답자의 45%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표 44> 귀하는 체류기간 연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설문 A 문항 56)

분류	빈도(%)
네	11명(55.0%)
아니요	9명(45.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표 45> 귀하가 체류기간 연장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문 A 문항 57)

분류	빈도(%)
체류기간 연장이 회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5명(25.0%)
체류허가 신청 시 직장이 없어서	3명(15.0%)
회사와의 근로계약상의 어려움 때문에	2명(10.0%)
체류기간 연장과 관련한 여러 정보가 부족해서	3명(15.0%)
기타	4명(20.0%)
무응답	3명(15.0%)
합	20명(100.0%)

문항 56과 57의 응답자 중 55%는 한국에서 체류기간 연장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체류기간연장이 회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5%, ‘체류허가 신청 시 직장이 없어서’와 ‘체류기간 연장과 관련한 여러 정보가 부족해서’가 각각 15% 그리고 ‘회사와 근로계약상의 어려움 때문에’가 10% 등의 순이었다.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 연장문제는 전적으로 회사와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사의 동의 없이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체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직장변경에 사실상의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6> 귀하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면 한국에 데려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설문 A 문항 70)

분류	빈도(%)
네	7명(35.0%)
아니요	12명(60.0%)
무응답	1명(5.0%)
합	20명(100.0%)

<표 47> 귀하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한국에 데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문 A 문항 71)

분류	빈도(%)
근로자 신분으로 가족을 초청할 자격이 없어서	13명(65.0%)
경제적으로 한국의 비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1명(5.0%)
가족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1명(5.0%)
기타	2명(10.0%)
무응답	3명(15.0%)
합	20명(100.0%)

문항 70과 71의 응답자 중 60%는 배우자와 자녀를 한국에 데려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35%는 데려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한편 배우자와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이주노동자로서 가족을 초청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비싼 물가(5%), 한국에 적응이 어려움(5%) 등을 답한 이들도 있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한국에 산다는 것이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쉽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다.

Ⅲ-3-2. 결혼이주민 (설문 B형)

<표 48> 본인의 여권소지 유무 (설문 B 문항 32)

분류	빈도(%)
네	94명(93.1%)
아니요	7명(6.9%)
무응답	0명(0.0%)
합	101명(100%)

<표 49> 체류허가를 연장하는 방법 (설문 B 문항 28)

분류	빈도(%)
직접 해결한다	24 (23.8%)
회사가 해결해 준다	0 (0.0%)
배우자와 동행하여 해결한다	63 (62.4%)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4 (4.0%)
같은 국가 출신의 지인이 도와준다	2 (2.0%)
기타	6 (5.9%)
무응답	4 (4.0%)
합	103 (102.0%)

설문에 참여한 결혼이주민의 경우 거의 다 본인들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체류허가연장은 대부분 배우자의 도움으로 해결하거나(62.4%),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경우

(23.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주민의 체류허가연장에서 배우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표 50> 체류허가를 연장하거나 국적취득 시 가장 어려운 점 (설문 B 문항 29)

분류	빈도(%)
회사의 비협조	0명(0.0%)
배우자의 비협조	6명(5.9%)
공무원의 비협조적 태도	14명(13.9%)
언어문제	48명(47.5%)
기타	24명(23.8%)
무응답	9명(8.9%)
합	101명(100%)

<표 50>에서 보이듯이 결혼이주민들의 체류허가 연장이나 국적취득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소통의 문제로 나타났고(47.5%) 그 외에 공무원의 비협조적인 태도(13.9%)나 배우자의 비협조(5.9%)가 뒤를 이었다. 이는 이주민들이 체류허가를 연장하거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언어소통적 차원의 지원이나 공무원을 통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51> 체류허가나 국적취득에 관련된 한국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 (설문 B 문항 30)

분류	빈도(%)
잘 알고 있다	8명(7.9%)
알고 있다	47명(46.5%)
잘 모르고 있다	32명(31.7%)
전혀 모르고 있다	13명(12.9%)
무응답	1명(1.0%)
합	101명(100%)

<표 52> 체류허가나 국적취득에 관련된 한국법령을 알게 된 경로 (설문 B 문항 31)

분류	빈도(%)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받았다	17 (16.8%)
한국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었다	9 (8.9%)
한국에 거주하는 같은 나라 출신 사람들에게서 들었다	21 (20.8%)
배우자가 알려주었다	26 (25.7%)
학교에서 알게 되었다	8 (7.9%)
회사에서 알게 되었다	1 (1.0%)
기타	13 (12.9%)
무응답	11 (10.9%)
합	106 (105.0%)

본 설문에 참여한 결혼이주민들의 54.4%가 체류허가나 국적취득에 관련된 한국의 법령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비율도 44.6%에 달했다. 그리고

체류허가나 국적취득에 관련된 한국법령을 알게 된 경로는 배우자를 통한 경우(25.7%),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통해 알게 된 경우(16.8%),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같은 나라 출신 사람들을 통한 경우(20.8%)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관련 정보접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53> 귀하가 체류 연장이나 영주권 혹은 귀화를 신청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설문 B 문항 34)

답변	빈도(%)
네	42명(41.6%)
아니요	57명(56.4%)
무응답	2명(2.0%)
합	101명(100%)

<표 54> 귀하가 체류 연장이나 영주권 혹은 귀화를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설문 B 문항 35)

답 변	빈도(%)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아서	7명(6.9%)
담당공무원들의 비협조	6명(5.9%)
언어소통의 어려움	22명(21.8%)
기타 (재산보증금, 한쪽이라서, 서류절차가 복잡함)	15명(14.9%)
무응답	51명(50.5%)
합	101명(100%)

설문 응답자 가운데 체류 연장이나 영주권 혹은 귀화를 신청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한 경우가 41.6%이고 어려운 점이 없다고 답변한 경우가 56.4%로 나타났다. 어려움의 이유로 언어소통의 문제점을 호소한 경우가 22명으로 21.8%이고, 재산보증금 등의 문제를 호소한 경우가 15명으로 14.9%였다. 이를 통하여 언어소통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보증금 등의 법률적 단서조항도 이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임이 확인되었다.

<표 55> 귀하는 한국에서 영주권 혹은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혹은 취득하고 싶습니까?
(설문 B 문항 36)

답 변	빈도(%)
네	81명(80.2%)
아니요	115명(14.9%)
무응답	5명(5.0%)
합	101명(100%)

<표 56> 귀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문 B 문항 37)

답 변	빈도(%)
나중에 고향에 가서 살고 싶어서	16명(15.8%)
한국 국적 취득에 관심이 없어서	5명(5.0%)
출신국가에서의 자신의 권리를 잃고 싶지 않아서	7명(6.9%)
기타(아이의 이중국적, 모른다, 이중국적을 원함,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	9명(8.9%)
무응답	64명(63.4%)
합	101명(100%)

<표 57> 귀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문 B 문항 38)

답 변	빈도(%)
배우자와 함께 한국인으로 살고 싶어서	51명(50.5%)
한국에서 안정적인 정규직을 갖고 싶어서	10명(9.9%)
한국 국적 없이는 사회보장 혜택 등 여러 가지 차별이 많아서	19명(18.8%)
기타(자녀 때문에, 모른다)	5명(5.0%)
무응답	16명(15.8%)
합	101명(100%)

응답자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고 답변한 경우가 80.2%로 압도적인 다수로 조사되었지만,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14.9%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이유로는 배우자와 함께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고 답한 경우가 50.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이어서 한국의 사회보장 혜택 등에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8.8%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한 이유로는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서 살고 싶다는 응답이 16명(15.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모르겠다, 제3국에서 살고 싶다, 이중국적을 원한다 등)도 9명(8.9%)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국적 취득과 관련하여 결혼이주민들의 대부분은 국적취득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이유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인과 동일하게 차별 없는 혜택을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8> 귀하는 한국국적취득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설문 B 문항 39)

답 변	빈도(%)
네	64명(63.4%)
아니요	37명(36.6%)
무응답	0명(0.0%)
합	101명(100%)

<표 59> 귀하가 한국국적취득 방법을 알고 있다면, 누가 알려 주었습니까? (설문 B 문항 40)

답 변	빈도(%)
배우자나 가족	36명(35.6%)
국제결혼 중개회사	1명(1.0%)
한국 관청 공무원	9명(8.9%)
같은 나라 출신 사람들	11명(10.9%)
기타 (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언어학원, 인터넷, 여행사)	15명(14.9%)
무응답	29명(28.7%)
합	101명(100%)

문항 39와 40에 응답한 결혼이주민들의 경우에 한국국적 취득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63.4%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36.6%가 모른다고 답하였다. 알게 된 경로로는 배우자나 가족을 통해서가 36명(35.6%)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가 15명(14.9%) 순이었다. 결혼이주민들의 대부분은 배우자나 가족을 통해서 한국국적 취득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반해 응답자의 36.6%(37명)가 배우자나 가족,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국적취득과 관련된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들의 정보접근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표 60> 귀하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설문 B 문항 41)

답 변	빈도(%)
국적취득에 대한 한국법령이 엄격해서	32명(31.7%)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아서	4명(4.0%)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해서	1명(1.0%)
국적 취득에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	12명(11.9%)
기타 (없다, 재산보증금, 한국어, 출신국 국적을 포기하면 재취득이 어려워서)	24명(23.8%)
무응답	28명(27.7%)
합	101명(100%)

<표 61> 귀하는 한국정부가 규정한 국적취득 방법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설문 B 문항 42)

답변	빈도(%)
네	64명(63.4%)
아니요	26명(25.7%)
무응답	11명(10.9%)
합	101명(100%)

<표 62> 한국정부가 규정한 국적취득방법이 적당하지 않다면 귀하는 이것이 어떻게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설문 B 문항 43)

답변	빈도(%)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거나 배우자와 사별하더라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11명(10.9%)
귀하의 국내 체류기간이 법적인 요건을 채웠을 경우, 배우자의 신원보증 없이도 국적취득이 가능해야 한다.	13명(12.9%)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정 체류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14명(13.9%)
기타(보증관계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모른다, 어렵지 않다, 서류절차의 간소화)	11명(10.9%)
무응답	52명(51.5%)
합	101명(100%)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설문 응답자들은 우선 한국법령의 엄격함(31.7%)과 기타(재산보증금, 한국어능력, 출신국 국적포기 못함 등, 23.8%) 그리고 국적취득에 필요한 정보부재(11.9%)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국적취득 법령에 대해서 응답자의 63.4%(64명)가 적당하다고 한 반면에, 25.7%(26명)의 응답자들은 적당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외국인 국적취득 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으로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정 체류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가 14명(13.9%), ‘국내체류기간이 법적인 요건을 채웠을 경우에 배우자의 신원보증 없이도 국적취득이 가능해야 한다’가 13명(12.9%),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거나 배우자와 사별하더라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혹은 ‘보증관계가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모른다, 서류절차의 간소화 등’이 각각 11명(10.9%)으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표 63> 귀하는 귀하의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설문 B 문항 46)

답변	빈도(%)
네	27명(26.7%)
아니요	3명(3.0%)
무응답	71명(70.3%)
합	101명(100%)

<표 64> 귀하의 자녀가 한국국적이 아닌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문 B 문항 47)

답변	빈도(%)
배우자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15명(14.9%)
한국인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명(5.9%)
귀하가 자녀와 함께 한국에 살고 싶어서	3명(3.0%)
해당사항 없음 (자녀가 없는 경우)	1명(1.0%)
기타	0명(0.0%)
무응답	76명(75.2%)
합	101명(100%)

<표 65> 귀하가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을 원치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문 B 문항 48)

답변	빈도(%)
한국에서의 차별이 심해서	2명(2.0%)
한국에서의 적응이 어려워서	1명(1.0%)
배우자와 이혼해서	0명(0.0%)
나중에 고향에 데려가고 싶어서	1명(1.0%)
이미 출신국의 국적을 취득해서 이중국적 문제 때문에	0명(0.0%)
기타	1명(1.0%)
무응답	96명(95.0%)
합	101명(100%)

설문에 응한 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것으로 답한 경우가 27명(26.7%)으로 나타났지만,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무응답의 경우가 71명(70.3%)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응답을 선택한 이유로는 ‘배우자가 한국인’이라는 이유가 6명(5.9%)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외에 ‘자녀가 한국인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이유가 3명(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응답자들은 배우자의 나라인 한국에서 자녀도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4.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거 관련 문제

이 부분에서는 이주민의 노동조건 및 주거 관련 문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노동조건 관련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설문지 A형의 질문과 응답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본 설문에 참여한 이주노동자 20명 가운데에는 9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표 79> 당신은 어떤 형태(신분, 자격)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설문 A 문항 34)

분류	빈도(%)
합법적(고용허가제)	8명(40.0%)
미등록 이주노동자	9명(45.0%)
결혼이주민	0명(0.0%)
기타	3명(15.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표 80> 당신은 어떤 직종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설문 A 문항 35)

분류	빈도(%)
제조업	18명(90.0%)
농림어업	0명(0.0%)
축산업	0명(0.0%)
서비스업	0명(0.0%)
전업주부	0명(0.0%)
기타	2명(10.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표 81> 당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규모는? (설문 A 문항 36)

분류	빈도(%)
5인 미만	2명(10.0%)
5-30인	2명(10.0%)
30-50인	5명(25.0%)
50인 이상	11명(55.0%)
해당사항 없음 (전업주부인 경우)	0명(0.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문항 34, 35, 36은 응답자가 어떤 형태(신분, 자격)로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파악해 보고자 실시한 설문이다. 우선 34번 문항의 당신은 어떤 형태로 한국에서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에서 본 설문 응답자의 45%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40%가 합법적(고용허가제) 노동자, 기타가 15%로 나타났다.

35번 문항의 직종분포에 대한 조사에서는 제조업 종사자가 압도적(90%)이었고, 36번 문항의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설문 응답자의 90% 이상이 5인 이상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해 대부분의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합법적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비합법적 이주노동자 역시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나 가사서비스,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은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표 82> 한국인 직원과 동등한 시간을 일하고도 임금을 적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설문 A 문항 37)

분류	빈도(%)
네	11명(55.0%)
아니요	9명(45.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표 83> 야근이나 잔업, 휴일근무 등을 하고 수당을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설문 A 문항 38)

분류	빈도(%)
네	4명(20.0%)
아니요	16명(80.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표 84> 임금을 늦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설문 A 문항 39)

분류	빈도(%)
네	8명(40.0%)
아니요	12명(60.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문항 37, 38, 39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한 설문이다. 설문 38번의 야근이나 잔업, 휴일근무 등을 하고 수당을 받지 못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요’가 80%, ‘예’가 20%로 나왔고 설문 39번의 ‘임금을 늦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는 ‘아니요’라는 답이 60%로 나와 다수의 사업주가 임금체불이나 야근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 37의 ‘한국인 직원과 동등한 시간을 일하고도 임금을 적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5%가 ‘네’라고 응답하였고, ‘아니요’라고 응답한 45%를 앞서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차별이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다.

<표 85> 일하다 다치거나 아플 때 적절한 보상이나 치료를 잘 받습니까? (설문 A 문항 41)

분류	빈도(%)
네	13명(65.0%)
아니요	7명(35.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표 86> 직장에서 산업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설문 A 문항 42)

분류	빈도(%)
네	12명(60.0%)
아니요	8명(40.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표 87> 있다면 혹시 통역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설문 A 문항 43)

분류	빈도(%)
네	5명(25.0%)
아니요	15명(75.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문항 41, 42, 43은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설문으로서 41번의 일하다 다치거나 아플 때 적절한 보상이나 치료를 잘 받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이 65%, 부정이 35%로 나타났다. 질문 42의 직장에서 산업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는 응답이 60%, ‘아니요’라는 응답이 40%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비율로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은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설문 43에서 나타나듯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이 거의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설문 응답자의 75%가 통역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함)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여러 부상이나 질병을 미리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의 대다수는 소규모, 단순, 고위험 노동업종에서 근무하는 경향이 있어, 내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유해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언어문제로 인해 작업안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작업안전에 대한 교육이 한국어로만 제공된다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표 88>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의 통장, 여권, 소지품 등을 타인이 관리한 적이 있습니까?
(설문 A 문항 40)

분류	빈도(%)
네	5명(25.0%)
아니요	15명(75.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표 89> 신체적 폭력이나 인종차별적 경험 또는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설문 A 문항 44)

분류	빈도(%)
네	3명(15.0%)
아니요	17명(85.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설문 A 문항 45. 있다면 어디에서였습니까?
(회사나 그 주변에서)

<표 90> 관공서,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설문 A 문항 46)

분류	빈도(%)
네	2명(10.0%)
아니요	18명(90.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설문 A 문항 47. 있다면 어떤 차별을 받았습니까?
(답변 없음)

문항 40과 44~47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다. 우선 40번의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의 통장, 여권, 소지품 등을 타인이 관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은 회사 사장이나 관리·감독자가 이주노동자의 여권 등 서류를 압류하고 보관하면서 이주노동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가는 것을 막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다.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의 75%가 ‘아니요’라고 답해 대부분이 자기 소지품은 자기가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44의 “신체적 폭력이나 인종차별적 경험 또는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와 설문 46의 “관공서,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 85%, 90%의 압도적인 비율로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표 91> 귀하가 살고 있는 주거공간은 어디입니까? (설문 A 문항 51)

분류	빈도(%)
공장에 딸린 방	5명(25.0%)
임시 컨테이너 등 가건물	2명(10.0%)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5명(25.0%)
단독주택	6명(30.0%)
노숙	0명(0.0%)
기타	2명(10.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표 92> 귀하의 주거공간에 대해 만족합니까? (설문 A 문항 52)

분류	빈도(%)
만족한다	5명(25.0%)
그냥 그렇다	14명(70.0%)
불만족스럽다	1명(5.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설문 A 문항 53. 불만족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상세한 것은 적지 않겠음))

문항 51~53번은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질문이다. 질문 5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간은 단독주택(30%)이었고 다음으로 공장에 딸린 방(25%),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25%), 임시 컨테이너 등 가건물(10%), 기타(10%) 순으로 나타났다. 질문 52의 주거공간 만족도는 '그냥 그렇다'(70%)와 '불만족스럽다'(5%)를 합친 비율이 '만족한다'(25%)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93> 당신이 고용되어 있는 현재의 고용허가제에 대해 만족합니까? (설문 A 문항 54)

분류	빈도(%)
만족한다	5명(25.0%)
그냥 그렇다	15명(75.0%)
불만족스럽다	0명(0.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표 94> 귀하는 사업장 변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설문 A 문항 58)

분류	빈도(%)
네	15명(75.0%)
아니요	5명(25.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표 95> 귀하가 사업장 변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문 A 문항 59)

분류	빈도(%)
이전 회사 사장님이 여권을 주지 않아서	0명(0.0%)
이전 회사 사장님이 동의해 주지 않아서	7명(35.0%)
웁길 회사에서 인종이나 출신 때문에 거부당해서	1명(5.0%)
웁길 회사에서 한국어 소통 문제로 거부당해서	3명(15.0%)
임금 체불 때문에	4명(20.0%)
기타	2명(10.0%)
무응답	3명(15.0%)
합	20명(100.0%)

<표 96> 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거주기간 제한(5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 A 문항 60)

분류	빈도(%)
적절하다	7명(35.0%)
적절하지 못하다	13명(65.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표 97> 귀하가 고용허가제 하의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기간 제한 규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설문 A 문항 61)

분류	빈도(%)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	5명(25.0%)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거주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4명(60.0%)
무응답	1명(5.0%)
합	20명(100.0%)

<표 98> 귀하는 고용허가제 하의 사업장 이동 제한 관련 규정(최대 3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 A 문항 62)

분류	빈도(%)
동의한다	5명(25.0%)
바뀌어야 한다	15명(75.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표 99> 귀하가 이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설문 A 문항 63)

분류	빈도(%)
사업장 변경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13명(65.0%)
사업장 이전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	4명(20.0%)
기타	2명(10.0%)
무응답	1명(5.0%)
합	20명(100.0%)

문항 54와 58~63은 현행 고용허가제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묻는 질문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5년의 범위(3+2)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고용허가제는 거주기간 제한, 사업장 이동 제한(최대 3회) 등의 규제로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관련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의 고용허가제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 54번에 대해 ‘그냥 그렇다’가 75%로 ‘만족한다’의 25%보다 훨씬 비율이 높았다. 또한 문항 60과 61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거주기간 제한(5년)에 대해서 응답자의 65%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았으며, 응답자의 85%가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철폐해야 하거나(25%)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거주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60%)고 답했다. 그리고 질문 62번의 고용허가제 하의 사업장 이동 제한 관련 규정(최대 3번)에 대해서도 설문 응답자의 75%가 바뀌어야 한다고 대답해 동의한다는 2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만약 “이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시정되기를 바랍니다?”(문항 63)에는 사업장 변경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65%), 사업장 이전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20%), 기타(10%), 무응답(5%) 순으로 답했다.

한편 질문 58의 “사업장 변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75%가 ‘네’라고 답했고, 이어지는 질문 59에서 그 이유는 이전 회사 사장님이 동의해 주지 않아서(35%), 임금 체불 때문에(20%), 옮길 회사에서 한국어 소통 문제로 거부당해서(15%), 무응답(15%), 기타(10%), 옮길 회사에서 인종이나 출신 때문에 거부당해서(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여러 가지 규제 절차는 이주노동자보다는 사용자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가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권과 인권을 제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내외국인 균등대우를 지향할 때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표 100> 귀하가 한국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문 A 문항 64)

분류	빈도(%)
높은 임금	18명(90.0%)
한국인의 친절	1명(5.0%)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	1명(5.0%)
기타	0명(0.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표 101> 귀하가 한국에서 계속해서 일하기 싫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문 A 문항 65)

분류	빈도(%)
임금차별	3명(15.0%)
인종차별	0명(0.0%)
한국인의 불친절	1명(5.0%)
회사에서의 비인간적인 대우	1명(5.0%)
공무원의 강압적 태도와 불친절	0명(0.0%)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14명(70.0%)
기타	1명(5.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표 102> 귀하가 한국에서 5년을 일한 뒤 계속 일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설문 A 문항 66)

분류	빈도(%)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6명(30.0%)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일할 수도 있다	9명(45.0%)
일단 귀국한 다음 1년 후 다시 와서 일을 한다	4명(20.0%)
기타	1명(5.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문항 64~66에서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와 일하기 싫은 이유를 파악해 보았다. 먼저 질문 64로 한국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는데 역시 높은 임금이 90%로 압도적이었다. 다음 순위로 한국인의 친절(5%)과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5%) 등이 이어졌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한국 드라마나 K-Pop의 열풍이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항 65의 “한국에서 계속해서 일하기 싫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70%), 임금차별(15%), 한국인의 불친절(5%), 회사에서의 비인간적인 대우(5%), 기타(5%) 순의 응답을 보였다. 질문 66의 “한국에서 5년을 일한

뒤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라는 물음에는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일할 수도 있다(45%),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30%), 일단 귀국한 다음 1년 후 다시 와서 일을 한다(20%), 기타(5%)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는 2011년 7월 이후 대거 발생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계약기간 만료와 이 경우의 지속적 발생을 염두에 둘 때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표 103> 귀하는 귀하의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권하겠습니까?
(설문 A 문항 67)

분류	빈도(%)
네	16명(80.0%)
아니요	4명(20.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표 104> 귀하가 친구에게 한국에서 일하기를 권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문 A 문항 68)

분류	빈도(%)
높은 임금	11명(55.0%)
한국인의 친절	0명(0.0%)
생활의 편리함	7명(35.0%)
기타	1명(5.0%)
무응답	1명(5.0%)
합	20명(100.0%)

<표 105> 귀하가 친구에게 한국에서 일하기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문 A 문항 69)

분류	빈도(%)
임금차별	4명(20.0%)
인종차별	1명(5.0%)
한국인의 불친절	1명(5.0%)
회사에서의 비인간적인 대우	0명(0.0%)
체류기간 연장의 어려움	7명(35.0%)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2명(10.0%)
기타(일이 너무 힘들어서, 향수병 때문에)	5명(25.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문항 67~69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권하겠는지 또는 그렇지 않겠는지와 그 이유는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이다. 67번 문항의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권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80%)가 ‘네’라고 답했다. 그 이유를 묻는 68번 질문에서는 64번 문항에서처럼 높은 임금(5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생활의 편리함(35%), 기타(5%), 무응답(5%)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 일하기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나는 질문(문항 69)에 대한 응답은 체류기간 연장의 어려움(35%), 기타(일이 너무 힘들어서, 향수병 때문에 등, 25%), 임금차별(20%),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10%), 인종차별(5%), 한국인의 불친절(5%) 순이었다.

<표 106> 귀하는 한국 정부가 귀하의 가족을 동반 또는 초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를 원합니까? (설문 A 문항 72)

분류	빈도(%)
네	18명(90.0%)
아니요	2명(10.0%)
무응답	0명(0.0%)
합	20명(100.0%)

문항 72는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에 대한 것이다.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의 가족 동반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의 개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0%가 ‘네’라고 답해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이 인정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에서 가족결합권을 허용하는 경우 이들의 정주화를 우려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어긋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가기 위한 길은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이주민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가 가장 기본적인 행복권을 누릴 수 있도록, 즉 그들이 원하는 경우 그들의 가족과 함께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주어진 체류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노동을 하게 하고, 이주노동자의 안정된 삶은 결국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다.

Ⅲ-5. 이주민의 교육과 문화영역에서의 문제점

이주 여성은 대부분 ‘결혼-출산-육아-(자녀)교육’의 생애 주기를 겪게 되므로 대개의 경우 자녀 교육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항목으로 자녀와 관련된 것에 비중을 두었다. 그 다음으로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교육권에 대한 요구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자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다. 추가적으로 응답자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먼저 설문 응답자의 자녀 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자녀의 연령대를 물었다. 응답자 자녀의 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07> 자녀의 연령대 (복수응답가능) (설문 B 문항 49)

연령대	빈도(%)
0-6세(미취학 아동)	49 (48.5%)
7-12세(초등학생)	14 (13.9%)
13-15세(중학생)	1 (1.0%)
16-18세(고등학생)	1 (1.0%)
19세 이상	1 (1.0%)
무응답	39 (38.6%)
합	105 (1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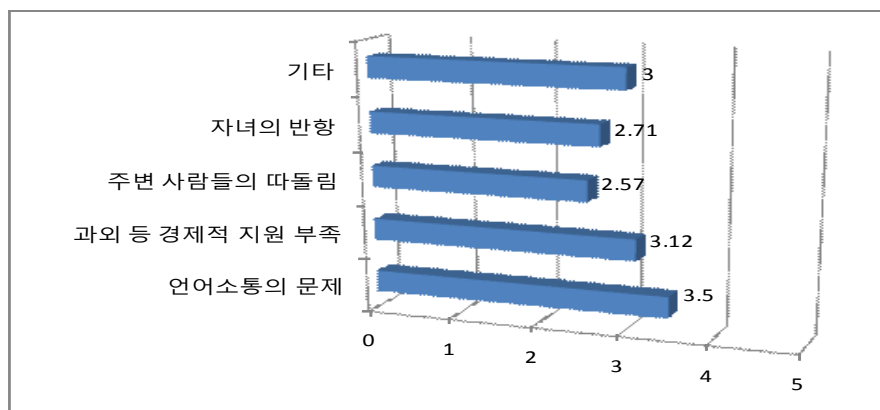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미취학 아동(0-6세)이 48.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생(7-12세) 자녀를 둔 경우가 13.9%로 뒤를 이었다.

<표 108> 자녀교육에서 어려운 점 (복수응답 가능) (설문 B 문항 50)

교육상 어려움을 겪는 이유	빈도(%)
언어소통의 문제	42 (41.6%)
과외 등 경제적 지원 부족	23 (22.8%)
주변 사람들의 따돌림	3 (3.0%)
자녀의 반항	1 (1.0%)
기타	5 (5.0%)
무응답	38 (37.6%)
합	112 (110.9%)

설문 B형의 문항 50번(<표 108>)에서는 자녀 교육상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언어소통의 문제, 과외 등 경제적 지원 부족 문제, 주변 사람들의 따돌림 문제, 자녀의 반항 문제 등을 범주로 제시하고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서는 언어소통의 문제가 가장 어렵다는 응답이 41.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과외 등 경제적 지원 부족의 문제를 꼽은 비율이 22.8%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무응답 비율도 37.6%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각 문제별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로 체크하게 하였다.



<그림 6>

‘매우 어렵다’를 5, ‘전혀 어렵지 않다’를 1로 하여 보았을 때 언어소통의 문제와 과외 등 경제적 지원 부족의 문제가 근소한 차이로 1, 2위 응답이 되었다. 또한 위 설문문항 50번의 질문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매우 낮았던 자녀의 반항이나 주변 사람들의 따돌림도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응답이 되었다.

각 응답에 대한 기초 자료로 항목별 응답 비율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응답자들은 5개 항목 중 언어소통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보통이다’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렇지만 2위 또는 3위 응답의 비율은 다소 엇갈리기 때문에 위의 도표와 아래의 표를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표 109> 다음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맞는 곳에 √로 표시해 주세요 (설문 B 문항 51)

내용/(%)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어렵다	매우 어렵다	무응답
언어소통의 문제	7.9	5.0	29.7	25.7	19.8	11.9
과외 등 경제적 지원 부족	3.0	7.9	32.7	23.8	14.9	17.8
주변 사람들의 따돌림	20.8	11.9	34.7	8.9	5.0	18.8
자녀의 반항	13.9	10.9	30.7	10.9	4.0	29.7
기타	5.0	1.0	17.8	3.0	4.0	69.3

다음으로는 언어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아동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가족과 사회 구성원을 위한 이중 언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아동을 위한 이중 언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이 보기로 제시되었다.

<표 110> 언어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수응답가능) (설문 B 문항 52)

언어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빈도(%)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38 (37.6%)
아동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18 (17.8%)
가족과 사회 구성원을 위한 이중 언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23 (22.8%)
아동을 위한 이중 언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24 (23.8%)
기타	2 (2.0%)
무응답	7 (6.9%)
합	112 (110.9%)

응답자 중 37.6%가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답하였다. 그리고 23.8%는 아동을 위한 이중 언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22.8%는 가족과 사회구성원을 위한 이중 언어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과외 등 경제적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질문에서는 학교에서의 방과 후 수업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한 학습 지원, 지자체를 통한 경제적 지원, 우수 아동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이 보기로 제시되었다.

<표 111> 과외 등 경제적 지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수응답가능) (설문 B 문항 53)

과외 등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	빈도(%)
학교에서의 방과 후 수업 지원	41 (40.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한 학습 지원	34 (33.7%)
지자체를 통한 경제적 지원	10 (19.8%)
우수 아동을 위한 장학금 지원	11 (10.9%)
기타	3 (3.0%)
무응답	5 (5.0%)
합	114 (112.9%)

이 가운데 학교에서의 방과 후 수업 지원이라는 응답이 40.6%로 1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한 학습 지원이라는 응답이 33.7%로 2위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지자체를 통한 경제적 지원 (19.8%), 우수아동을 위한 장학금 지원 (10.9%) 등도 필요로 하는 응답자가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질문에서는 학교에서 교사의 관심 확대, 생활 학습 상담 프로그램의 확대, 학교 차원의 다문화 교육 강화, 사회 차원의 다문화 교육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표 112> 주변사람들의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수응답가능) (설문 B 문항 54)

주변 사람들의 따돌림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빈도(%)
학교에서 교사의 관심 확대	20 (19.8%)
생활 학습 상담 프로그램의 확대	13 (12.9%)
학교 차원의 다문화 교육 강화	24 (23.8%)
사회 차원의 다문화 교육 강화	35 (34.7%)
기타	6 (5.9%)
무응답	12 (11.9%)
합	110 (108.9%)

이 가운데 사회 차원의 다문화 교육 강화가 34.7%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뒤를 이어 학교 차원의 다문화 교육 강화가 23.8%, 학교에서 교사의 관심 확대가 19.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차원이나 학교 차원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교사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의 반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보, 어머니/아버지 나라에 대한 자긍심 고취, 심리 상담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학업 또는 취미 활동 지원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표 113> 자녀의 반항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복수응답가능) (설문 B 문항 55)

자녀의 반항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방안	빈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보	18 (17.8%)
어머니/아버지 나라에 대한 자긍심 고취	29 (28.7%)
심리 상담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21 (20.8%)
학업 또는 취미 활동 지원	19 (18.8%)
기타	4 (4.0%)
무응답	18 (17.8%)
합	109 (107.9%)

이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이 비교적 고른 분포로 나타났는데, 그 중 어머니/아버지 나라에 대한 자긍심 고취가 28.7%, 이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기회 확대가 20.8%, 학업 또는 취미활동 지원이 18.8%,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보가 17.8%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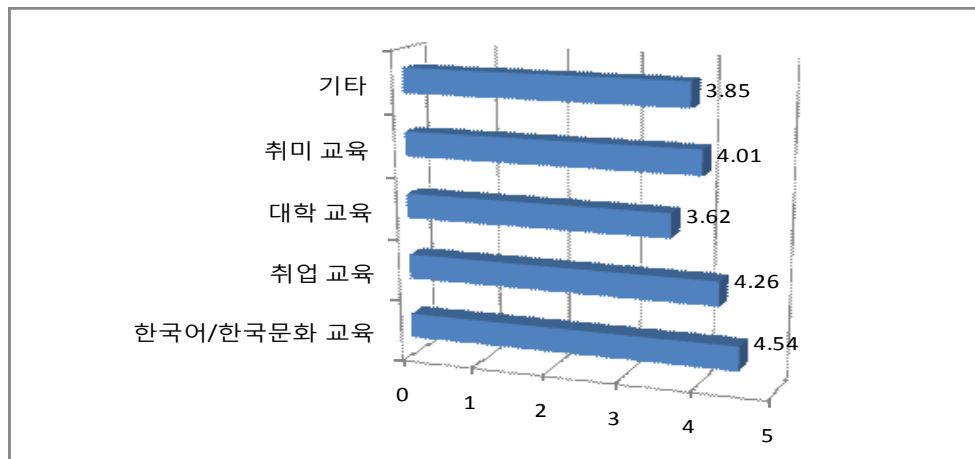
다음의 범주로는 자녀 교육이 아닌 성인을 위한 교육에 대한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응답자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 내용으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취업 교육, 대학 교육, 취미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표 114> 성인교육지원으로 필요한 것은? (복수응답가능) (설문 B 문항 56)

자신에게 필요한 성인 교육 지원 내용	빈도(%)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72 (71.3%)
취업 교육	41 (40.6%)
대학 교육	21 (20.8%)
취미 교육	17 (16.8%)
기타	3 (3.0%)
무응답	3 (3.0%)
합	157 (155.4%)

이 가운데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가 71.3%로 1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는 취업 교육에 대한 필요가 40.6%로 2위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이는 결혼이주민들이 한국을 잘 이해하려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직장생활도 가능하길 바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각 문제별로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로 체크하게 하였다. ‘매우 필요하다’를 5, ‘전혀 필요 없다’를 1로 하여 보았을 때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 취업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각각 4.58점과 4.29점으로 1, 2위 응답이 되었다. 또한 위의 질문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매우 낮았던 취미 교육과 대학 교육도 각각 4.08점과 3.54점으로 나타나 꽤 의미 있는 응답이 되었다.



<그림 7>

각 응답에 대한 기초 자료로 항목별 응답 비율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응답자들은 5개 항목 중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 취업 교육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를 1위 응답으로 선택하였다. 그렇지만 대학 교육과 취미 교육에서는 ‘매우 필요하다’와 ‘보통이다’라는 비율이 높게 나오며 의견이 다소 엇갈리기 때문에 위의 도표와 아래의 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15> 귀하에게 필요한 정도를 √로 표시해 주세요 (설문 B 문항 57)

내용/(%)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보통이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무응답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0.0	4.0	10.9	8.9	70.3	5.9
취업 교육	5.9	1.0	16.8	8.9	61.4	5.9
대학 교육	7.9	5.0	28.7	21.8	27.7	8.9
취미 교육	0.0	0.0	36.6	15.8	37.6	9.9
기타	0.0	0.0	11.9	6.9	7.9	73.3

다음으로는 앞 문항에서 제시된 4개의 영역 가운데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질문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내용이 많았으면 좋겠다, 한국어 교육 방법과 교재가 다양했으면 좋겠다, 이주민 출신의 보조강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어 실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선택항을 제시하였다.

<표 116>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수응답가능) (설문 B 문항 58)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에서 필요한 점	빈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내용이 많았으면 좋겠다.	24 (23.8%)
한국어 교육 방법과 교재가 다양했으면 좋겠다.	36 (35.6%)
이주민 출신의 보조강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23 (22.8%)
한국어 실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았으면 좋겠다.	25 (24.8%)
기타	6 (5.9%)
무응답	1 (1.0%)
합	115 (113.9%)

‘한국어 교육 방법과 교재가 다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5.6%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한국어 실력에 따른 인센티브(24.8%),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내용(23.8%), 이주민 출신 보조강사(22.8%) 등을 꼽는 응답이 나왔다. 이를 통하여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가 외국인들에게 어려울 수 있으며, 교수 방식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업교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질문은 5가지 예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표 117> 취업교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수응답가능) (설문 B 문항 59)

취업 교육에서 필요한 점	빈도(%)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30 (29.7%)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시 경제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36 (35.6%)
취업 관련 프로그램 이수 시 바로 취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26 (25.7%)
한국 국적이 없어도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면 좋겠다.	11 (10.9%)
자격증 취득시험(운전면허시험 등)에 출신국 모어로 응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5 (14.9%)
기타	3 (3.0%)
무응답	4 (4.0%)
합	125 (123.8%)

설문에 응한 결혼이주민들 중 35.6%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시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했다. 또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 이수 후 바로 취업을 원하는 응답자도 25.7%에 달하는 것으로 미루어 취업교육을 경제적 부담 없이 이수하고, 이후 쉽게 취직할 수 있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자격증 취득시험에 자국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14.9%), 국적 취득 없이 국가시험 응시를 원하는(10.9%) 경우도 조사되었다.

이어서 한국에서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를 가정하여 대학교육을 받을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사하였다.

<표 118> 대학교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수응답가능) (설문 B 문항 60)

대학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점	빈도(%)
장학금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43 (42.6%)
대학 입학자격 취득(검정고시 등)을 위한 교육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19 (18.8%)
대학 입학 전형에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13 (12.9%)
자녀 양육 지원을 통해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	17 (16.8%)
기타	8 (7.9%)
무응답	9 (8.9%)
합	109 (107.9%)

대학 교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장학금 지원을 꼽는 경우가 42.6%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 대입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지원이 18.8%, 공부 시간 확보를 위한 자녀 양육 지원이 16.8%로 2, 3위 응답이 되었다. 대입전형상의 혜택을 선택한 경우도 12.9%로 4위 항목치고는 선택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취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교육장소의 근접성을 꼽은 응답이 36.6%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경제 활동 연관성(27.7%), 교육 내용의 다양성(25.7%), 무료 프로그램(22.8%) 등의 응답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왔다.

<표 119> 취미 교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수응답가능) (설문 B 문항 61)

취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점	빈도(%)
교육장소가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37 (36.6%)
교육 내용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26 (25.7%)
무료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23 (22.8%)
경제 활동과 연결되는 취미 교육이었으면 좋겠다.	28 (27.7%)
기타	1 (1.0%)
무응답	1 (1.0%)
합	116 (114.9%)

응답자들이 취미교육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자못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취미교육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지역적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응답자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는 문항에서는 ‘주변에서 나를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가까운 관계에서도 한국 문화의 일방적 수용을 강요한다, 한국인들이 나의 출신 국가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한국 문화에 대해 알 기회가 많지 않다’등의 보기가 주어졌다.

<표 120> 문화적인 측면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복수응답가능) (설문 B 문항 62)

문화적인 측면에서 느끼는 어려움	빈도(%)
주변에서 나를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16 (15.8%)
가까운 관계에서도 한국 문화의 일방적 수용을 강요한다.	31 (30.7%)
한국인들이 나의 출신 국가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17 (16.8%)
한국 문화에 대해 알 기회가 많지 않다.	22 (21.8%)
기타	10 (9.9%)
무응답	8 (7.9%)
합	104 (103.0%)

응답자 중 30.7%가 한국 문화의 일방적 수용 강요를 어려움으로 보았다. 2위 응답 (21.8%)으로는 ‘한국 문화에 대해 알 기회가 부족함’이 꼽혔다. 그 다음으로 응답자의 출신 국가나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무관심(16.8%) 등도 이주민들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과 한국 사회가 아직도 이주민들에 대해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암묵적으로 한국문화의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IV. 이주민이 평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잘한 인권 정책 추진 사항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에 대한 이주민의 인지도와 호감도는 위 II-2-2.의 <표 22>와 <표 24>의 설문문항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정리하였다. 중요도 순위는 '매우 중요하다'와 '중요하다'라고 답변한 숫자를 합하여 산출하였고, 각 부분별로 빈도수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다.

IV-1.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 이주민 인권가이드라인 수립 (60명/94명)
- 인터넷에서 인종적 표현에 대한 개선방안 의견 표명 (63명/94명)
- 인종차별금지법 입법예고에 따른 공청회 (59명/94명)
- 위원회 중장기 다문화 인권정책 실행계획 수립(58명/94명)

IV-2. 이주 노동자 인권보호

-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개선방안 권고 (56명/94명)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정책권고 (60명/94명)
-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마련 (55명/94명)
- 미등록 이주민 체포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개선권고 (55명/94명)
-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중의 취업활동불가능 생존권침해 개선 권고 (56명/94명)

IV-3.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 국제결혼 광고현수막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권고 (60명/94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견표명 (60명/94명)
-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국제회의 (62명/94명)
-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방안 마련 (61명/94명)
- 위장결혼에 따른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60명/94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견표명 (57명/94명)

IV-4. 다문화가정아동의 인권보장

- 외국인보호소 내 아동구급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권고 (61명/94명)
-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개선방안 정책권고 (60명/94명)
-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 마련 (60명/94명)
-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학습권 보장권고 (59명/94명)

IV-5. 다문화 인권증진관련 기타 사업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권고 (55명/94명)
- 미등록 이주자 인권보호를 위한 방문조사 (52명/94명)

설문에 응한 결혼이주민들은 비록 대부분 그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년간 실행해 온 다문화 인권정책과 사업을 접해보지 못했으나, 내용을 이해한 이후에는 대부분에 대해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응답자의 무응답 비율이 항목에 따라 5-15%인 점을 감안하면(<표 24> 참조) ‘중요하다’ 이상으로 답변한 비율이 내용을 이해한 응답자의 50%를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문화 인권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어느 한 정책이나 사업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사업이나 추진정책에 고른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서 선호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고, 모든 사업과 정책추진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요하지 않다’ 혹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 항목에 걸쳐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 추진사업에 응답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V. 이주민의 입장에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시급한 추진과제 및 정책 요구사항

V-1.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수행에 대한 이주민의 요구사항

본 연구에서 시행한 조사는 1. 설문대상자 현황, 2. 한국에 대한 만족도, 3. 언어소통 및 습득문제, 4. 차별과 관련된 문제, 5. 체류문제, 6. 노동조건 및 주거관련문제(A형), 7. 교육문제(B형), 8. 인권위 관련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설문 범주에 근거하여 설문대상자 현황과 한국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한 6가지 범주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이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급한 추진과제 및 정책요구사항들이 추출되었다.

V-1-1. 언어소통 및 한국어습득문제

→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생활에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으로 거주기간의 제한과 언어소통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중 언어소통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겪게 되는 현실의 문제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언어소통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5%가 자신의 수준을 ‘중’이나 ‘하’라고 한 것을 볼 때 이주노동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소통 문제는 이들의 한국생활과 작업장 안전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자신과 생활을 함께하는 한국인 회사동료를 한국어 학습의 중요한 통로로 생각하고 있었다. 간혹 이주노동자가 출신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독학 등을 통해 배운 사례도 있는데 기초적인 일상 회화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방법으로 선택한 응답의 85%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것인데 이 결과는 이주노동자들이 시간적, 경제적인 제약으로 일터를 벗어나 한국어를 배우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들이 직장 내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판단된다.

→ 한국에서 결혼이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도 언어소통문제였다. 결혼이주민들은 한국어교육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동시에 이중 언어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결혼이주민들에게는 자유로운 언어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이다.

V-1-2. 차별 문제

→ A형과 B형 설문에 참여한 이주민 응답자들에게 한국인이 외국인 차별에 대해서 ‘그렇다’와 ‘아니다’라는 상반된 응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응답자의 개

인적인 경험을 나타낸 것이지만, 아직도 한국 내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의 기준으로 출신국가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한국인이 외국인의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국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주민들은 대부분 친절하다고 답하고 있고 공무원들과의 접촉에서 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의 접촉 경험에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결혼이주민의 경우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45.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직원(37.0%), 구청이나 주민센터직원(33.3%), 학교 또는 센터의 선생님(17.3%), 경찰공무원(13.6%) 등의 순으로 다양하게 접촉한 반면,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출입국관리소 직원과의 접촉에 집중되고 있어서, 다양한 공무원 접촉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생활환경이 사업장 중심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한국인의 의식구조가 여전히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의 개선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결혼이주민 55명을 상대로 심층 조사한 결과 이들 중 인권침해 사례를 경험한 10명이 제시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언어나 식습관에 대한 몰이해, 피부색이나 옷차림에 관한 모욕, 모국이나 동포에 대한 모욕, 직장 등 공동체에서의 무시, 심지어는 성적인 모욕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상적인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반차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일반시민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식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V-1-3. 체류 문제

→ 이주노동자들은 체류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로 꼽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체류기간연장이 회사에 의해 결정되며, 체류허가 신청 시 직장이 없을 경우에 체류허가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가 규정하고 있는 최대 체류허가기간 5년이라는 기간과 가족을 초청하지 못하는 조건에 대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다. 결국 체류문제와 관련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고용허가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 결혼이주민들은 체류기간 연장문제보다는 국적취득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이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한국법령에 외국인 국적 자격에 대해서 엄격하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법정체류기간이 너무 길다거나, 또는 배우자의 신원보증 조항, 그리고 재산보증금 조건 등에서 결혼이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므로 결혼이주민들은 이러한 조항들의 완화를 원하고 있다.

V-1-4. 노동조건 및 주거관련 문제

→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한국인의 경우와 비교해서 많은 경우에 동등하지 않았다. 우선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의 임금에 상응하게 대우받기를 원하고 있는 데 반해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임금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산업안전교육이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어서 산업재해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교육에서 자국어 서비스나 적절한 통역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전체 설문 응답자 중 25%에 불과할 정도로 고용허가제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거주기간 제한에 대해서 제한규정을 철폐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85%에 이를 정도로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그 외에 사업장 변경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전체 응답자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변경 시에 겪는 어려움으로는 이전 회사 사장이 동의하지 않거나, 임금체불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미등록 상태로 남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가족결합권 또한 허용되지 않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듯 현행 고용허가제가 여러 가지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고용허가제의 근본취지인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내외국인 균등대우라는 측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이 허용하는 수준에서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V-1-5. 교육 문제

→ 설문에 응답한 결혼이주민들은 대다수가 언어소통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어 교육지원프로그램의 확대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자녀교육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한 학습지원의 확대를 필요로 했다. 결혼이주민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받는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교사의 관심 확대와 학교와 사회차원에서의 다문화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교사들의 관심과 태도가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결혼이주민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도 보다 더 실력에 따라 수준별로 다양한 교육방법과 교재들을 원하고 있었다. 이는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형식적인 차원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개발이 요구된다. 취업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결혼이주민들은 교

육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지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국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해가기 위해서는 한국어 소통문제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취업을 통한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결혼이주민들은 ‘주변에서 나를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가까운 관계에서도 한국 문화의 일방적 수용을 강요한다, 한국인들이 나의 출신 국가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한국 문화에 대해 알 기회가 많지 않다’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문화의 일방적 수용 강요를 어려움으로 보았다. 이는 한국인과 한국 사회가 아직도 이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하려 하기 보다는 한국문화의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한국인이 아직도 보수적이고, 일방적인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V-1-6.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문화 인권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주민의 인지도와 각 사업별 중요도

→ 이주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업이나 정책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경우에 대부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이 정작 이주민들에게는 실생활 속에서 생소한 부분이 많았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민들에게 추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이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주민들의 인권개선 사업에 접근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의 경우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들 사이에 차이점이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업 중에서 <다문화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정책에서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수립이 90%의 비율로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고, 그 다음이 85%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에서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반면에 결혼이주민들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권보장> 정책에서 이주아동 교육권보장 개선방안 정책권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 마련을 각각 62.3%의 비율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여기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의 각기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이주민인권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잘 파악하여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V-2. 이주민들과의 이주인권관련 심층인터뷰 내용

V-2-1. 안산의 베트남 근로자들과의 인터뷰 내용

1. 안산에 베트남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었나?
- 3년 6개월, 6년, 4년 10개월 (5~6년) 등 다양하다.
2. 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가?
- 주로 제조업, 기계 조립, 선반 제작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기술을 배워서 한국에 온다.
3. 베트남 노동자들 가운데 결혼한 사람들도 있나?
- 미혼 또는 기혼자들이 있다. 기혼자들인 경우, 부인은 베트남에 있다. 부인은 한국에 초청이 안 된다. 한국방문 목적이 여행인 경우는 가능하다. 배우자를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
4. 이주 노동자로서 체류 조건은 어떻게 되나?
- 5년 계약 끝나면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한다. 1년 후 시험 보고 한국에 다시 올 수 있다. 한국어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제조기술은 있으면 좋다.
5.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한국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는가?
- 일하러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 배운다.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기관이 있다.
6. 한국에서의 어려움, 불편한 것 중에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
-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능력이다. 베트남 노동자가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것이 큰 어려움이다.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7. 한국어 수업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 없이 바로 일해야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한국어 잘 못하고, 숙소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였다. 식사 제공 없는 회사의 경우엔 식사는 자비로 해결했다.
8. 한국에서 현재 일하는 회사는 어떻게 연결되었나?
- 한국 오기 전에 회사와 계약한다. 미리 회사가 정해진다.
9. 한국에서 직장을 몇 번 옮길 수 있나?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
- 직장을 3번 바꿀 수 있다(3년 동안 3번 옮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2번 가능하다. 2010년도부터 총 5번 옮길 수 있다.

10. 한국에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고 있나?

- 정보를 얻는 통로는 인터넷 또는 친구를 통해서이다.

11. 한국의 고용노동청의 공무원들이 정보를 안 가르쳐 주는가?

- 물어보면 대답은 해준다. 한국 정부에서 노동자들을 모아 놓고 제대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12. 한국정부에서 제공하는 베트남어로 된 설명서라든지 정보가 있는가?

- 베트남에서 노동계약서에 사인할 때 설명 받았다.

13. 체류허가와 연장은 어떻게 진행되나?

-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연장한다.

14. 근로자들의 월급통장이나 여권은 누가 관리하나?

- 월급통장은 개인이 갖는다.

- 여권(passport)은 사장님이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 사장님이 직원 관리의 이유로 여권을 가져간다. 도망 못 가게 하거나 월급을 안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15. 월급 받는 날이 정해져 있는가?

- 회사마다 다르다. 월급 잘 주는 회사도 있고, 사장이 나쁜 경우엔 2-3개월 돈을 못 받기도 한다.

16. 노동자가 돈을 못 받은 경우 어떻게 하는가?

- 안산에 있는 성당에 부탁한다. 이주민들을 도와주는 신부님을 찾아간다. 혹은 고용지원센터에 알린다.

17. 베트남어로 통역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 안산 지역에는 없다. 인천에 있다.

- 사회복지센터가 있다. 베트남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18. 회사 내에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 사장님과 직접 얘기한다. 회사에 노동조합은 없다.

19. 한국에서 번 임금은 어떻게 사용하나?

- 한국에 와서 150만원 받으면 50만원 남기고 100만원을 베트남에 있는 부인에게 보낸다.

20. 운전면허시험은 베트남어로 치를 수 있나?

- 운전면허 베트남어로 시험 볼 수 있다.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베트남어로 시험 본다.

21. 몸이 아플 경우 어떻게 하나?

-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좋은 사장은 병원에 보내준다. 치료비는 월급에서 뺀다.
- 매달 건강보험료를 낸다.

22. 건강보험료 혜택 받고 있는가?

- 자기 과실인 경우 병원비는 자기 부담이다.

23. 한국의 경찰은 친절한가? 베트남 경찰과 한국 경찰을 비교해 보라.

- 한국 사람에게 유리하게 하고, 외국 사람에게 불리하게 일처리하기도 한다.

24.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들어 보았는지?

- 한국에 오기 전 베트남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 한국에 와서 간단히(대충) 받았다.

25. 숙소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 숙소는 자기 돈으로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도와주는 회사도 있다.
한 달에 45만원 내고 있다(방세만 23만 5천원, 전기요금, 가스비용, 인터넷요금 따로 낸다).

26. 초과 업무나 잔업, 휴일업무도 해야 하나?

- 초과 임금 받는다. 야간근무, 특별근무 시에 돈을 받는다. 사람에 따라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며, 돈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다.

27. 평소 일하는 것보다 주말에 일하면 돈을 더 많이 주는가?

- 그렇다. 150% 준다. (공휴일에는 200%)

28.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 친구를 만난다.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여행을 한다.

29. 이주 노동자들 중 여성들도 있나?

- 주로 남자 노동자들이다. 한국에서 여자친구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다. 아이가 태어나면 베트남 대사관에 가서 출생 등록한다. 이러한 가족들은 체류기간 끝나고 베트남으로 돌아간다.

30. 모국방문 시 신고를 해야 하나?

- 베트남에 돌아가고 싶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했었는데 요즘은 안 한다. 자유롭게 여행한다.

31. 현재 다니는 회사에 만족하나?

-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32. 현재 고용허가제에 만족하나?

-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창 일하면서 능률도 오르고 기술도 많이 배웠는데 계약이 끝나면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일했던 사람이 다시 오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베트남 정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송출하고 싶어 한다.

33. 노동계약 만료 후에도 한국에 있고 싶나?

- 한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체류연장을 노동부에서 도와준다면,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

34.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이라고 차별하거나 무시한다고 느낀 경험이 있는가?

- 임금 차별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람과 일을 똑같이 하나 한국 사람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다.

35. 베트남에서의 임금조건은 어떠한가?

- 베트남의 한국 회사는 월급이 적다. 한국에서는 한 달에 150만 원 받으나, 베트남에 있는 한국 대기업에서 일하면 한 달에 40~50만 원 받는다.

36.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가?

- 베트남의 가족을 데려와 한국에서 생활하도록 한국정부에서 허락한다면 한국에 데리고 오겠다.

37. 주위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들에게 강압적으로 인권 침해한 사례를 혹시 알고 있는가?

- 불법체류자들(미등록 근로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벌금 부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38.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도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가?

- 보낼 수 있다.

39.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들어 보았나? 그 기관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나?

-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5명이 모두 모른다고 함)

40. 한국문화를 좋아하는가?

- 한국 음식, 드라마, 노래를 좋아한다.

40. 한국친구들이 있는가?

- 한국친구들이 조금 있다. 한국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한국친구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첫째, 한국어를 잘 못해서이다. 둘째,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이다.

41. 여가나 휴가시간은 어떻게 보내나?

-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한국친구들과 축구하고, 놀러가고, 회식을 한다.
- 휴가는 있다. 추석, 설을 제외하고 1년에 5일간 휴가를 가질 수 있다.

42. 유학생은 어떤 비자를 받고 어떻게 연장을 하나?

- 유학생은 학업비자를 받는다. 학교에 등록되어 있으면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에 취직하기는 어렵다.

43. 베트남인들이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나?

- 한국 국적 취득한 사람들이 상점을 운영하기도 한다.

44. 베트남 통일 이후에도 베트남에는 남북 간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가?

- 그렇다. 사이공/하노이 사이에는 그러한 감정이 존재한다.

V-2-2. 결혼이주민과 유학생과의 인터뷰 내용

1. 한국에서 차별받은 경우가 있나?

- 눈에 띄는 외모와 더불어 출신국 모어를 한국의 공공장소에서 쓸 경우 일부 시민들에 의해 차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중국의 경우 국적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

- 중국에서 배우자가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 중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다시 중국으로 들어올 때마다 계속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알고 있나?

- 인권위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외국어 지원이 되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정보의 업데이트가 느리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렵다.

4.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나?

- 한국인들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하면 한국인 배우자가 자격미달이거나 노총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그리고 외국인의 출신국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만을 미디어로 접했기 때문에 그런 시선이 존재하는 듯하다. 결혼이주여성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국인과 결혼한 것처럼 언론에서 도식화시키는 경향이 큰 이유인 것으로 생각한다.

5. 중국에서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

- 출신국 사이트(중국 SNS 사이트)에 의하면, 한국 가정에서 혹시나 이주여성이 도망 갈까 봐 한국어 교육을 제한하거나 통제를 가하는 집안이 있으며 한국인 남편의 재혼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음이 회자되고 있다.

6. 한국에서 국가적 차원의 제도나 학교, 사람들에게서 본인이 차별을 느낀 점은?

- 월급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중언어강사(본인)의 경우 동등한 교사의 신분이지만 한국인 교사보다 월급이 적다. 다른 같은 한국인 계약직 교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수업 양이나 월급 차이가 난다. 또한 계약서상에서도 애매한(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다.

7. 국적을 취득하여 일자리를 얻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 국적을 바꾸고 싶지 않지만 일자리를 얻으려고 일부러 한국 국적을 얻는 경우가 있다. 돈을 버는 등의 경제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외에 생활하는데에는 큰 불편함을 못 느끼는 점도 있다.

8. 결혼이민자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지?

-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주말에 센터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나?

- 임신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센터의 방문서비스는 시골/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의 이주여성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

10. 주말에 센터를 운영한다면 받고 싶은 서비스는?

- 고급한국어강좌(현재는 초급만 제공됨)
- 다문화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회 및 강좌, 다문화정책 홍보 및 상담서비스
- 취미 활동하는 동아리(출신국, 한국인 상관없음)모임이 필요함
- 출신국이 같은 다문화 가정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정보망 및 연락망을 구축해 놓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비교적 상황이 여유롭고 한국어를 잘하는 이중언어교사(중국인) 이주여성은 인근 센터에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언을 해 놓은 상태이지만 연락이 없다.

11. 자녀는 어떻게 양육하고 싶나?

- 본인들(한국인 남편, 중국인 아내)의 경우, 자녀는 이중국적을 신청하고 세계 추세에 따른 중국어의 중요성 때문에 중국어를 주요어로 가르치고 한국어를 보조언어로 가르칠 생각이다.

12.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싶은가?

- 본인(중국인 이주여성)은 한국국적을 취득할 생각이 없다. 중국에 가족이 있고 중국에

서의 재산상속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다 세금징수 문제 때문에 중국 국적을 유지할 것이다.

13.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 이주여성이 갖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이주민들을 향한 선입견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할 듯하다.

14. 이러한 정책수립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가?

- 학교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식은 쉽게 바뀔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한민족이 단일민족이라 생각했던 인식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선생님, 학부모의 무의식적인 언행과 태도가 이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한국인으로의 동화를 강요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다름과 틀림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15. 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어떠한가?

-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도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듯하다. 취지와는 다르게 또 다른 외국인이라는 의미로 변모되는 듯하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세계 문화, 역사, 언어 위주로 다문화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 등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16.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방안이 필요한 상황의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 친구가 없어 사람들 간의 네트워킹이 불가능하고 한국어 문제 때문에 가정에만 머무르는 예를 들어본 적이 있다. 가사와 육아에만 열중한 나머지 나중에 자녀와 한국어로 소통하기에 어려운 상황까지 이른 경우를 들었다. 우울증까지 야기할 수 있어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다.

17.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방안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 한국에서 출국하여 출신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과정의 절차(재입국허가서 등)가 많이 이전보다 간소화되었지만 이는 결혼비자를 갖고 있는 한에서 가능한 것이고 만약 이혼하거나 사별했는데 아이가 있는 경우, 또 이 아이를 출신국으로 데려가고 싶은 경우 친권침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남편이 아이의 친권을 포기하고 이주여성이 한국에 체류할 수 없는 경우 아이의 거처도 큰 문제가 된다.

18. 베트남(호치민)인 유학생인 경우 한국의 생활에서 초기 어려움은 어떠한 것이 있었나?

- 베트남에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처음 적응에 어려웠다. 나를 보면 한국에 결혼하러 왔는가 하는 한국인들의 시각이 종종 있다. 식당에서도 일하러 왔느냐, 한국남자와 결혼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

19. 본인은 한국에서 어떤 학업계획을 갖고 있나?

- 한국어는 1년 과정을 듣고 있고 그 후 대학원에서 정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제대학원 한국학과에 입학할 희망한다.

20. 한국 유학생 생활은 만족하는가?

- 날씨 빼고는 만족한다. 거주는 기숙사에서 하며 기숙사가 아닌 경우는 방값이 비싸다.

21.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예정은 어떻게 되나?

- 한국에서 졸업하고 난 후 일을 해서 돈을 번 후에 베트남으로 돌아갈 예정이지만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한국에 계속 머무르고 싶다.

VI. 결 론

우리나라도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이주민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제도적 기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거나 적응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결혼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민들의 인권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과 주제를 포괄하는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이주민들을 위한 인권증진의 차원에서의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전체 설문조사자 121명 중, 20명의 이주노동자, 101명의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각기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설문지(부록 참조)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장기 다문화인권정책 실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문화 사회의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문화시대의 연대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인권정책에 대한 이주민의 인지도와 중요도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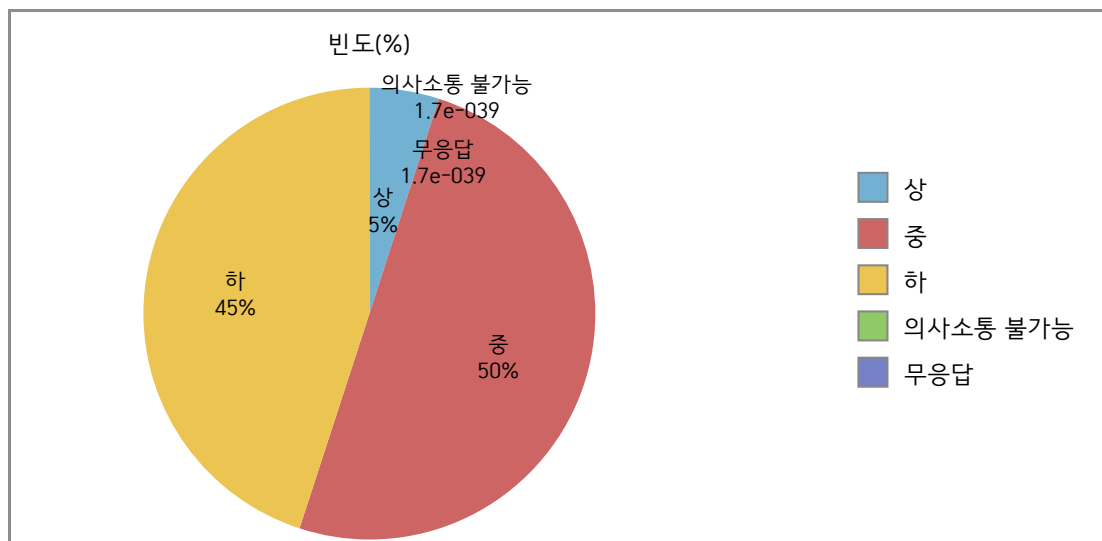
둘째, 중장기 다문화 인권정책 실행계획의 추진 과제 중 정책 우선순위 및 분야별 시급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한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주민의 관심도와 위원회 접근 경로를 확인하여 향후 인권정책 환경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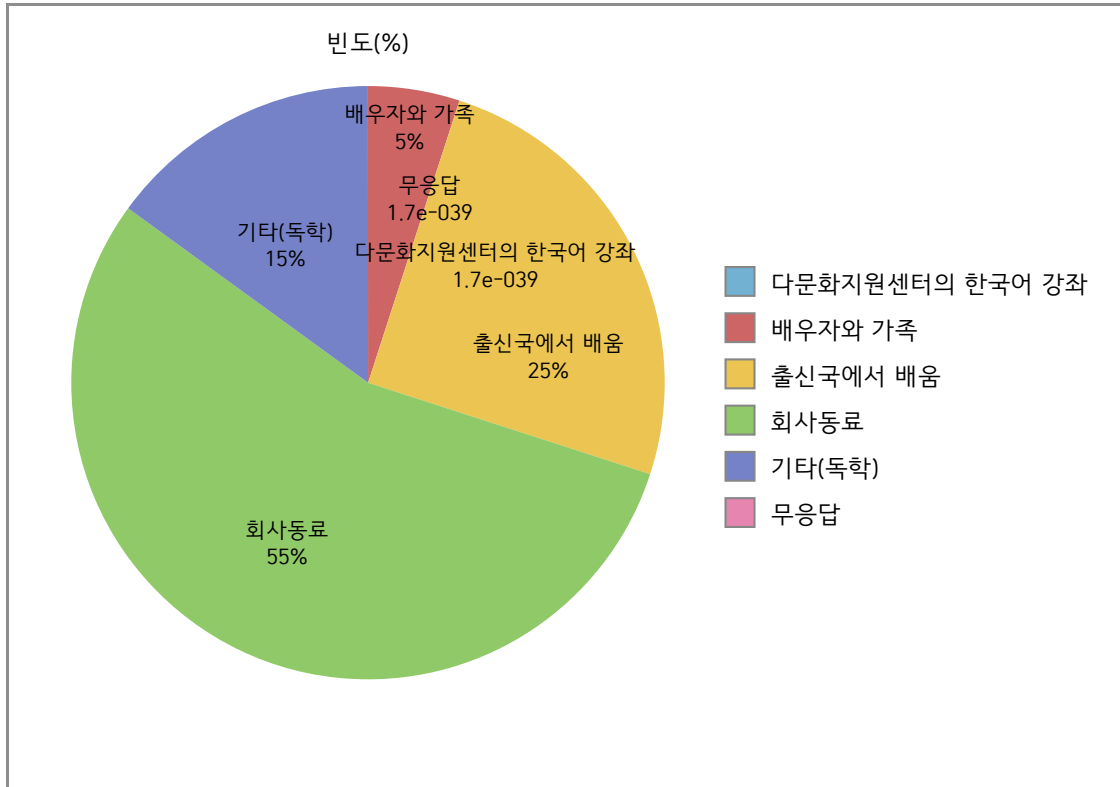
또한 본 연구에서 파악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수행에 대한 이주민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은 아래와 같은 6가지 영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 언어소통 및 한국어습득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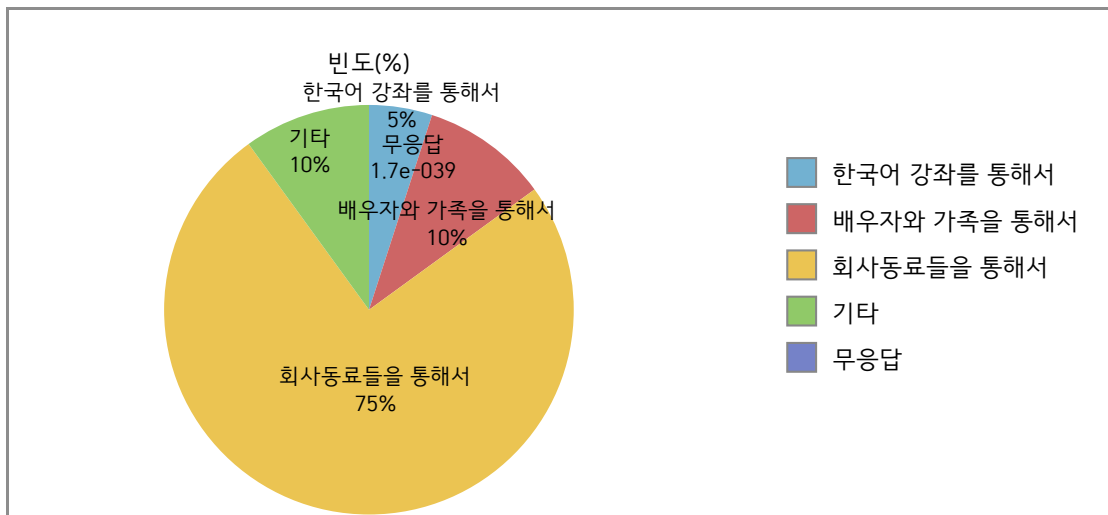
<그림 8> 한국어 언어소통수준 (설문 A 문항 18)



<그림 9> 한국어를 배운 경로 (설문 A 문항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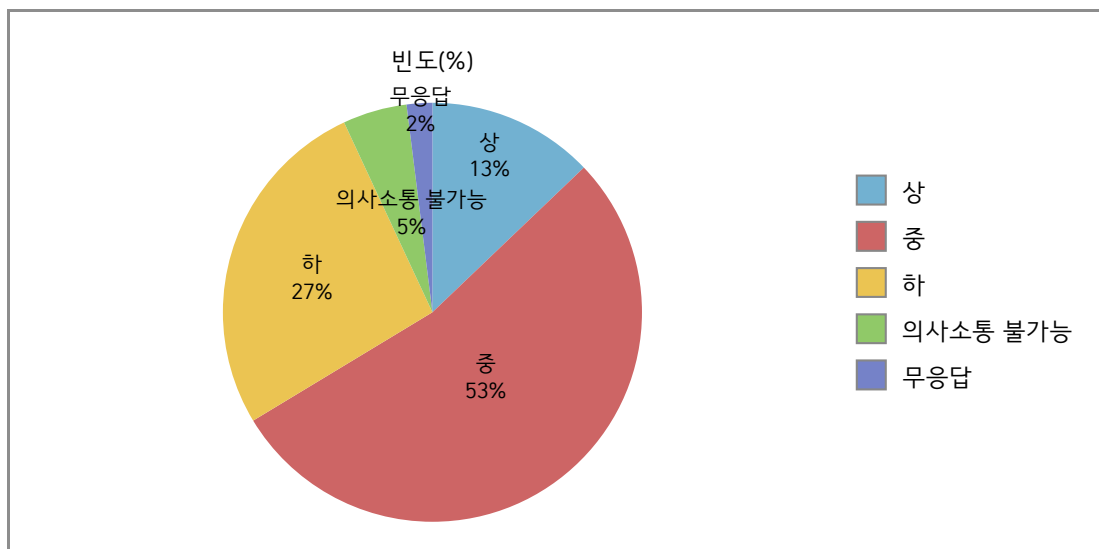
<그림 10>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방법 (설문 A 문항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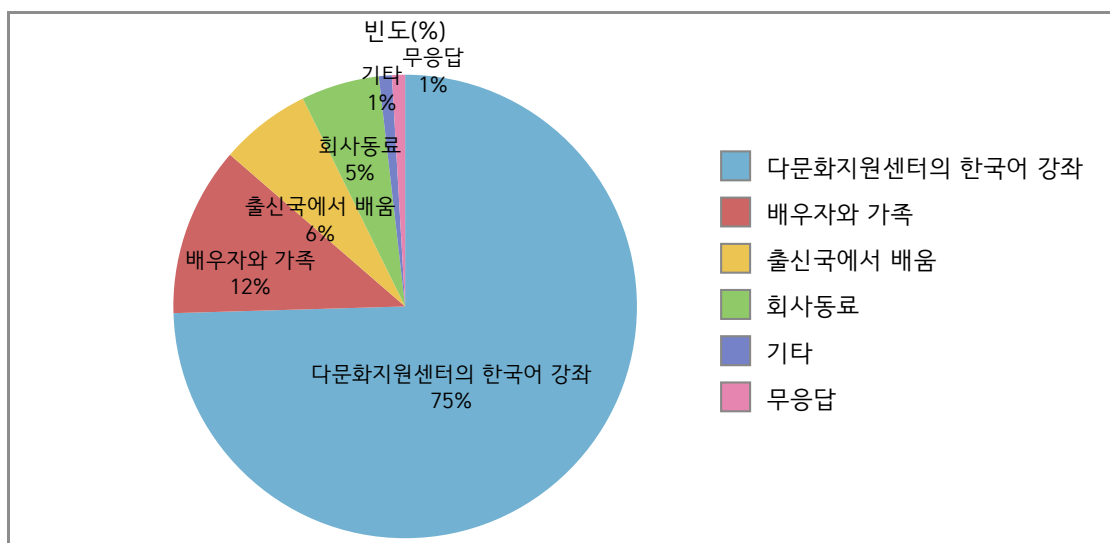
<그림 8-10>에서 나타나듯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생활에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으로 언어소통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언어소통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5%가 자신의 수준을 ‘중’이나 ‘하’라고 한 것을 볼 때 이주노동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소통 문제는 이들의 한국 생활과 작업장 안전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데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자신과 생활을 함께하는 한국인 회사동료를 한국어 학습의 중요한 통로로 생각하고 있었다. 간혹 이주노동자가 출신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독학 등을 통해 배운 사례도 있는데 기초적인 일상 회화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방법으로 선택한 응답의 85%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것인데(그림 10) 이 결과는 이주노동자들이 시간적, 경제적인 제약으로 일터를 벗어나 한국어를 배우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들이 직장 내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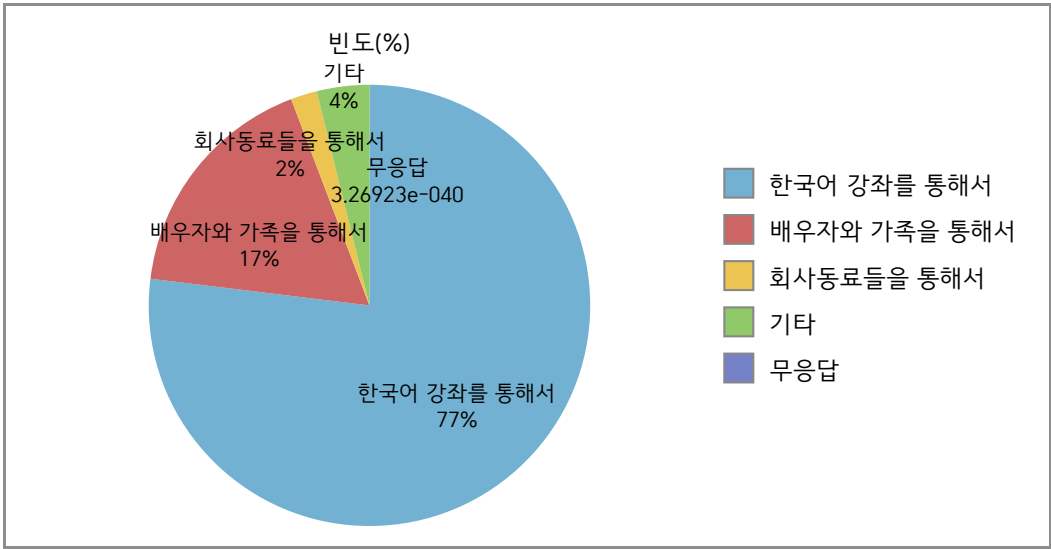
<그림 11> 한국어 언어소통수준 (설문 B 문항 18)



<그림 12> 한국어를 배운 경로 (설문 B 문항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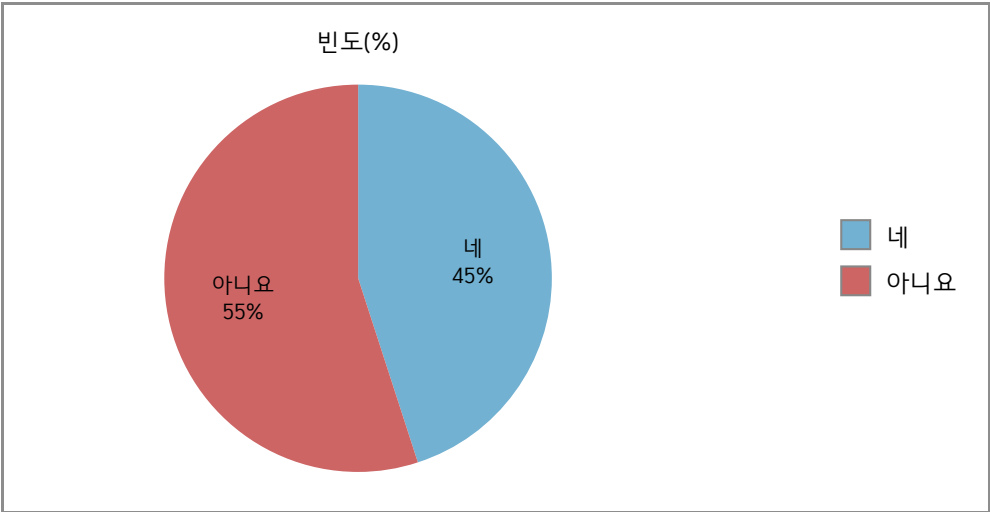
<그림 13>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방법 (설문 B 문항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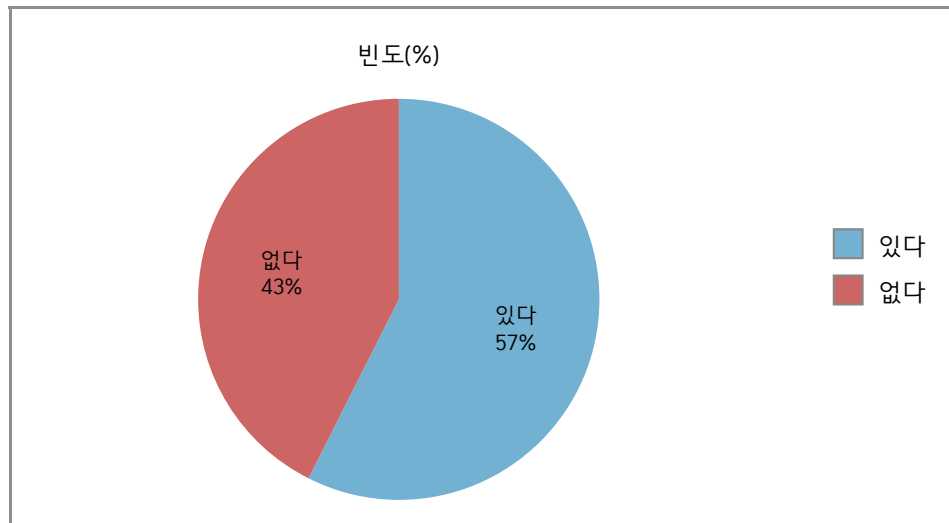
<그림 11-13>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결혼이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도 언어소통문제라는 것이다. 결혼이주민들은 한국어교육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동시에 이중 언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결혼이주민들에게는 자유로운 언어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어강좌에 대한 수요가 높고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2. 차별문제

<그림 14> 귀하는 자신이 이주민이어서 차별당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설문 A 문항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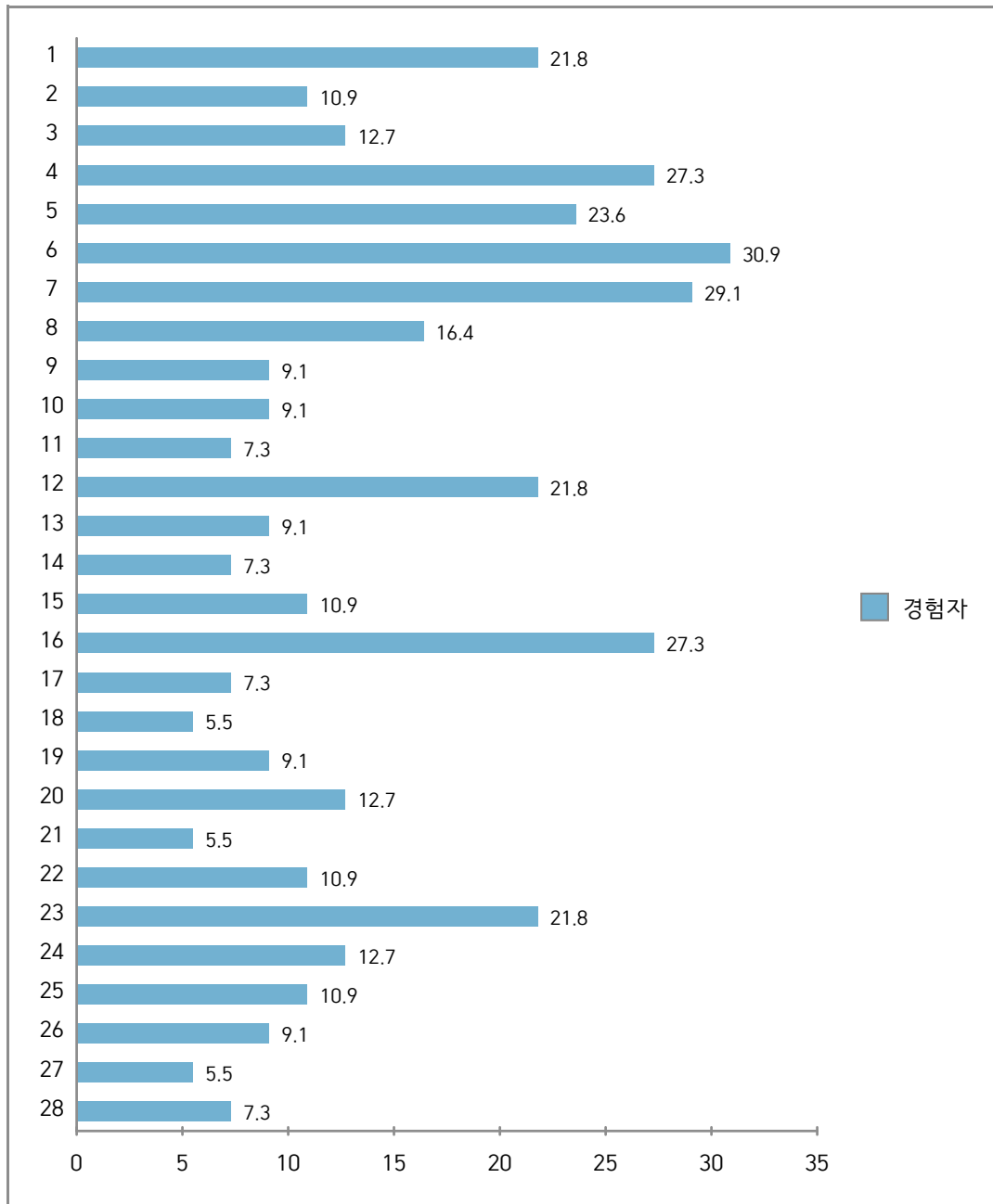
<그림 15> 자신이 이주민이어서 차별당한다고 생각하는 여부 (설문 B 문항 12)



본 연구의 A형과 B형 설문에 참여한 이주민 응답자들에게 한국인이 외국인 차별에 대해서 ‘그렇다’와 ‘아니다’라는 상반된 응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응답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타낸 것이지만, 아직도 한국 내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의 기준으로 출신국가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한국인이 외국인의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한국인의 의식구조가 여전히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결혼이주민 55명을 상대로 심층 조사한 결과 이들 중 인권침해 사례를 경험한 10명이 제시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언어나 식습관에 대한 몰이해, 피부색이나 옷차림에 관한 모욕, 모국이나 동포에 대한 모욕, 직장 등 공동체에서의 무시, 심지어는 성적인 모욕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상적인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반차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일반시민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식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아래 그림 16과 인권침해사례목록 참조)

<그림 16> 인권 침해 사례 경험 실태 (설문 B 문항 63) - 경험자 비율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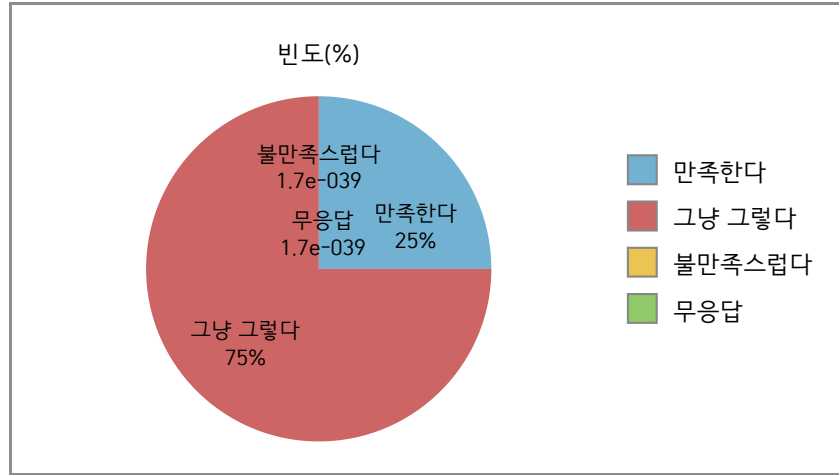


<인권 침해 사례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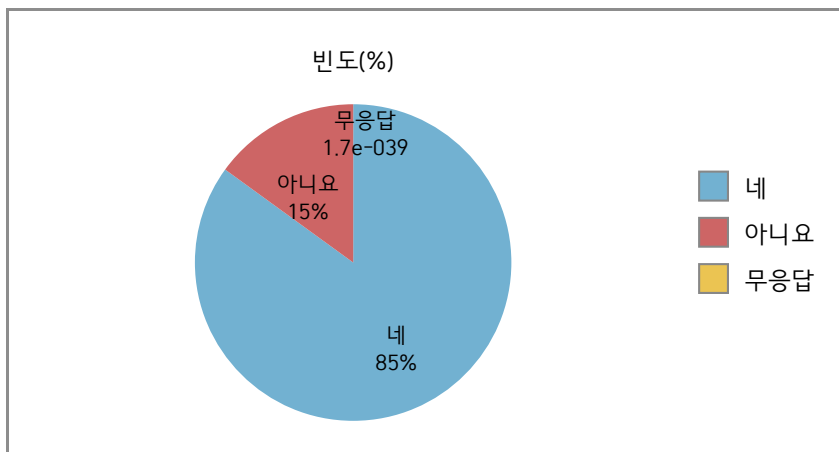
1	직장(혹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2	이유 없이 검문이나 체포를 당한 적 있다.
3	종교 활동 참여를 금지당하거나 방해 받은 적 있다.
4	언어나 식습관 때문에 놀림 받은 적 있다.
5	피부색이나 옷과 관련하여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6	상점 등에서 물건 판매를 거부당한 적 있다.
7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
8	한국내 동포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도 직장 상사나 동료, 한국인 가족, 학교 선생님 등의 반대나 금지로 참여할 수 없었던 적이 있다.
9	동포 모임을 조직하고 싶어도 직장 상사나 동료, 한국인 가족, 학교 선생님 등의 반대나 금지로 좌절 했던 적이 있다.
10	아프거나 다쳤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1	지낼 곳이 없어 노숙을 한 적이 있다.
12	모국이나 동포(혹은 부모님의 나라와 그 국민들)에 대한 모욕을 들은 적이 있다.
13	돈이 없어 식사를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4	모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나 행사를 기획하거나 참여하고 싶었으나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한 적 있다.
15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가정생활에 대하여 원하지 않은 간섭을 받은 적 있다.
16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직장, 교회, 지역사회 등 공동체에서 발언권을 갖지 못하거나 의견을 무시당한 적 있다.
17	학교에 가고 싶거나 혹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싶는데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적 있다.
18	누군가 나에게 물건 등을 던진 적이 있다.
19	신체적 폭력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입원 한 적이 있다.
20	성적인 농담이나 모욕적인 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
21	팔을 비틀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는 행위를 당한 적 있다.
22	한국인 직원보다 월급을 낮게 받은 적 있다.
23	한국인 직원과 같은 시간을 일했으나 임금을 적게 받은 적이 있다.
24	야근이나 잔업, 휴일 출근 등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25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노조 가입을 거부당한 적 있다.
26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자율방범대, 주부모임, 조기축구회 등 지역사회 모임에 가입을 거부당한 적 있다.
27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나의 월급, 통장, 소지품 등을 타인이 관리한 적 있다.
28	자녀나 배우자와의 만남을 타당한 이유 없이 방해받거나 금지당한 적 있다.

3. 체류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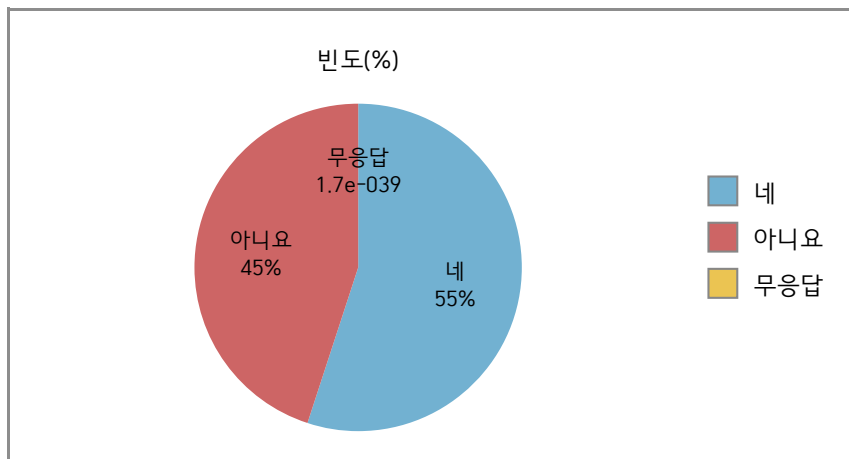
<그림 17> 당신이 고용되어 있는 현재의 고용허가제에 대해 만족합니까? (설문 A 문항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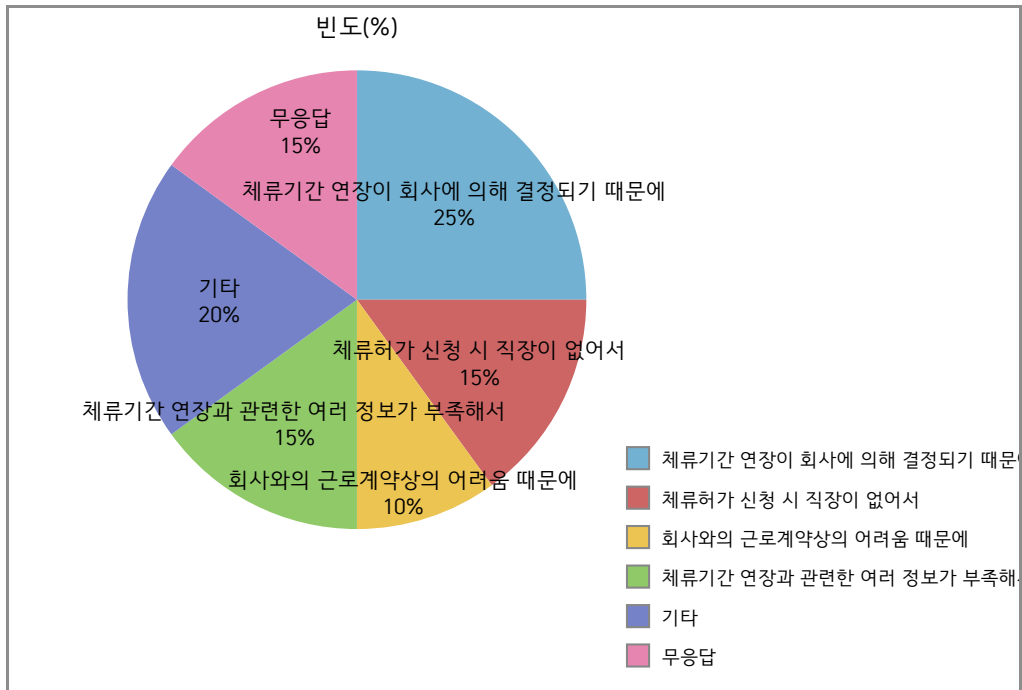
<그림 18> 귀하는 한국에서 고용허가제의 체류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싶습니까? (설문 A 문항 55)



<그림 19> 귀하는 체류기간 연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설문 A 문항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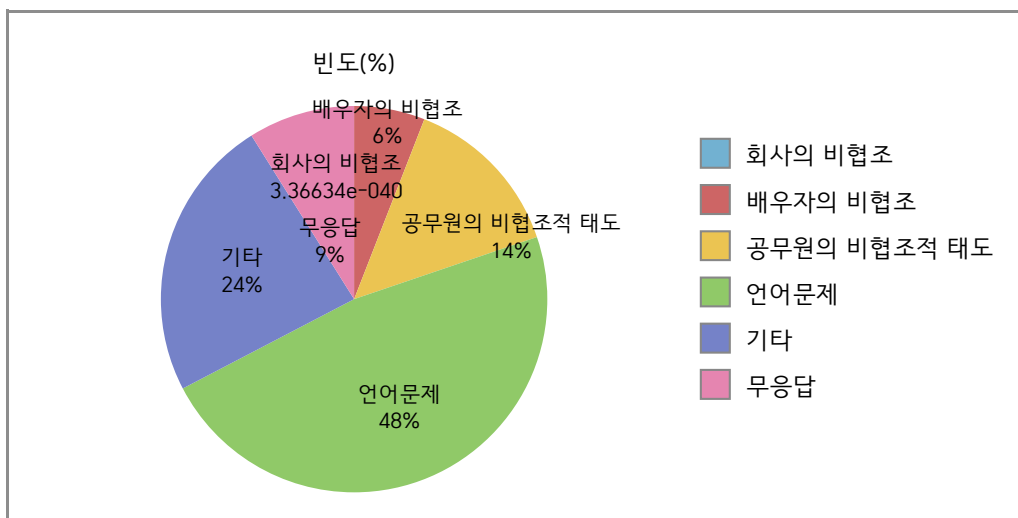


<그림 20> 귀하가 체류기간 연장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문 A 문항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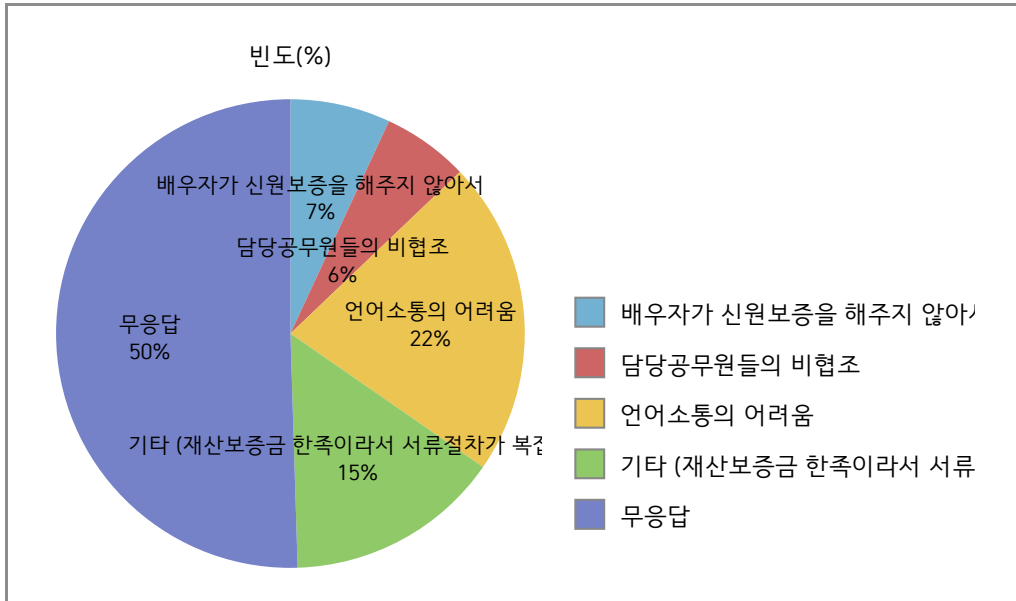


<그림 17-20>에서 알 수 있듯이 이주노동자들은 체류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로 꼽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체류기간연장이 회사에 의해 결정되며, 체류허가 신청 시 직장이 없을 경우에 체류허가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가 규정하고 있는 최대 체류허가기간 5년이라는 기간과 가족을 초청하지 못하는 조건에 대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다. 결국 체류문제와 관련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고용허가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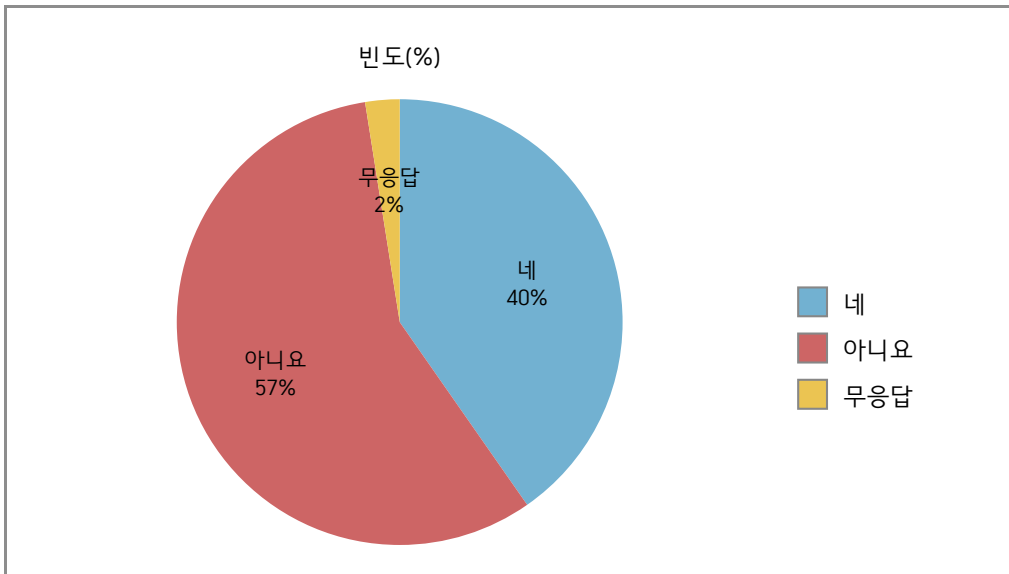
<그림 21> 체류허가를 연장하거나 국적취득 시 가장 어려운 점 (설문 B 문항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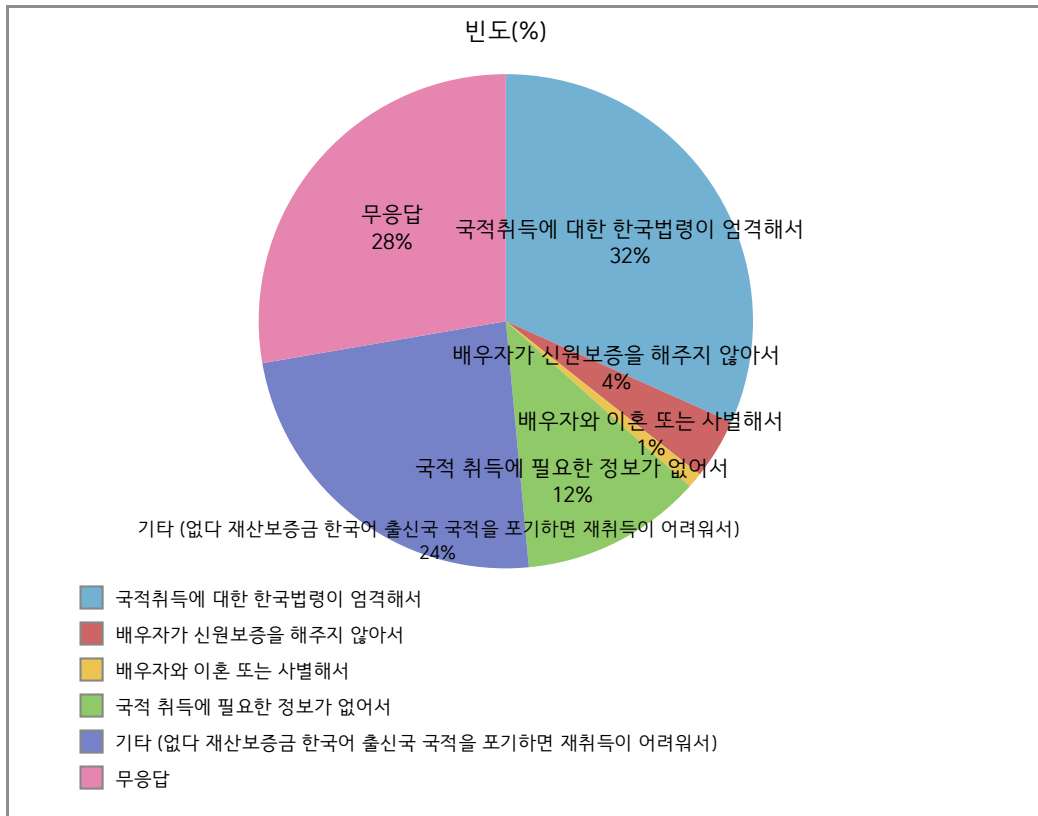
<그림 22> 귀하가 체류 연장이나 영주권 혹은 귀화를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설문 B 문항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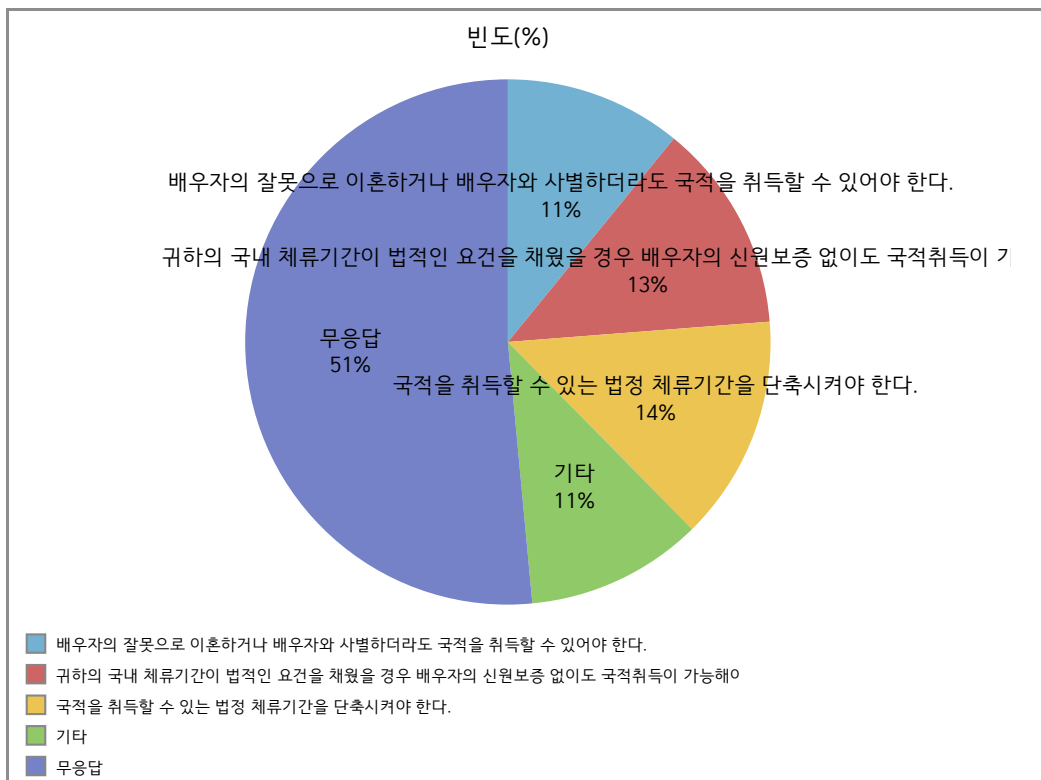
<그림 23> 귀하는 한국에서 영주권 혹은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혹은 취득하고 싶습니까? (설문 B 문항 36)



<그림 24> 귀하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설문 B 문항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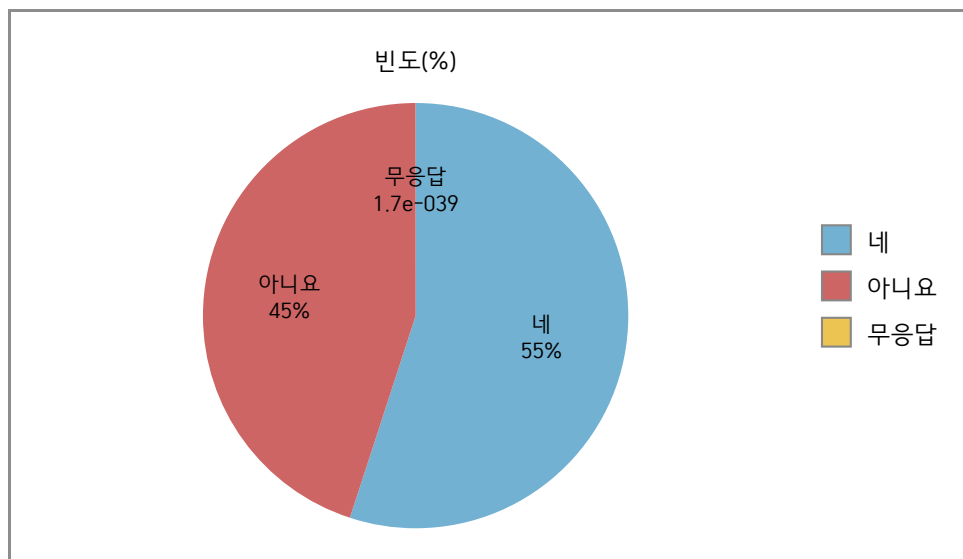
<그림 25> 한국정부가 규정한 국적취득방법이 적당하지 않다면 귀하는 이것이 어떻게 시정되기를 바랍니다까? (설문 B 문항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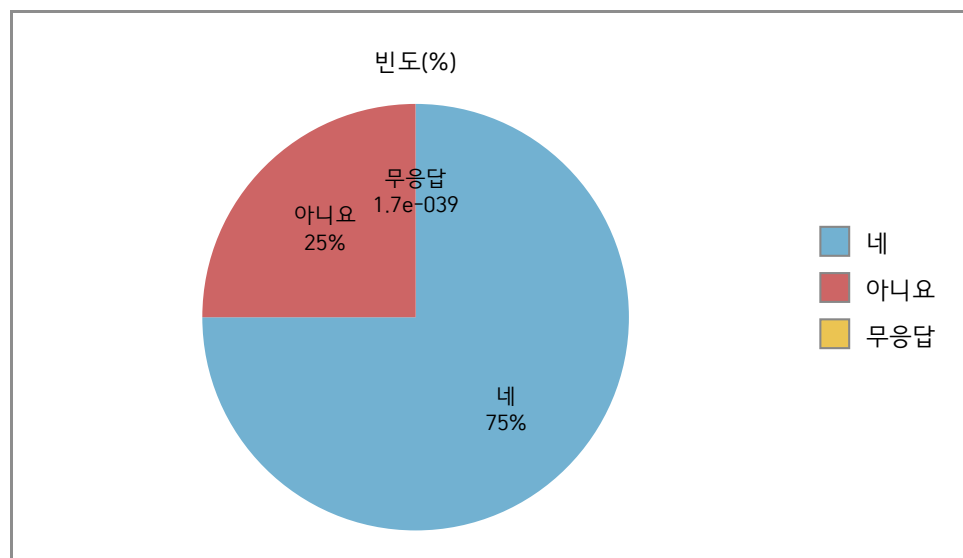
<그림 21-25>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결혼이주민들은 체류기간 연장문제보다는 국적취득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한국법령에 외국인 국적자격에 대해서 엄격하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법정체류기간이 너무 길다거나, 또는 배우자의 신원보증 조항, 그리고 재산보증금 조건 등에서 결혼이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므로 결혼이주민들은 이러한 조항들의 완화를 원하고 있다.

4. 노동조건 및 주거관련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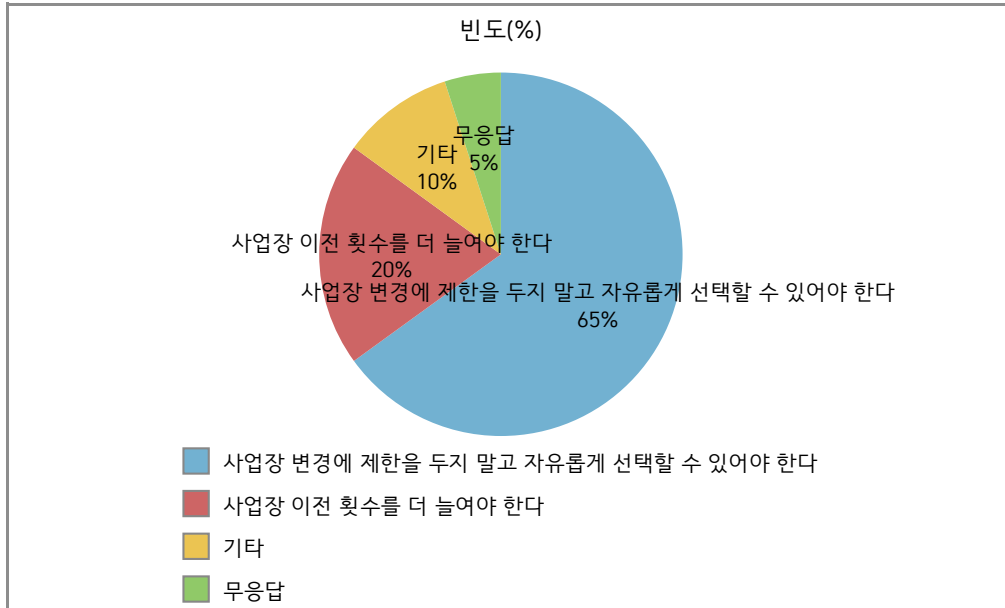
<그림 26> 한국인 직원과 동등한 시간을 일하고도 임금을 적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설문 A 문항 37)



<그림 27> 귀하는 사업장 변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설문 A 문항 58)



<그림 28> 귀하가 이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설문 A 문항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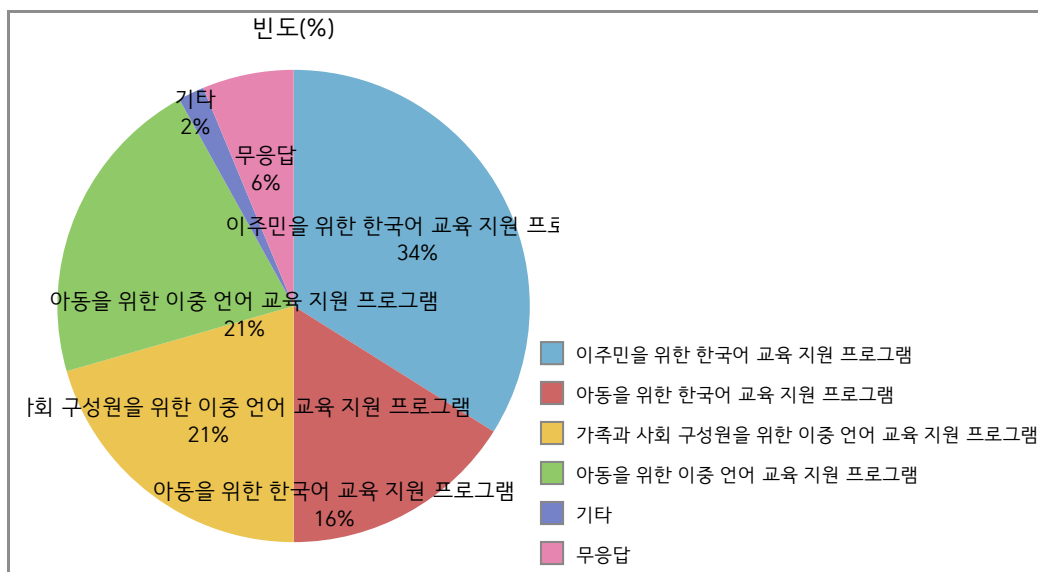


<그림 26-28>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한국인의 경우와 비교해서 많은 경우에 동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의 임금에 상응하게 대우받기를 원하고 있는 데 반해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임금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외에 사업장 변경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전체 응답자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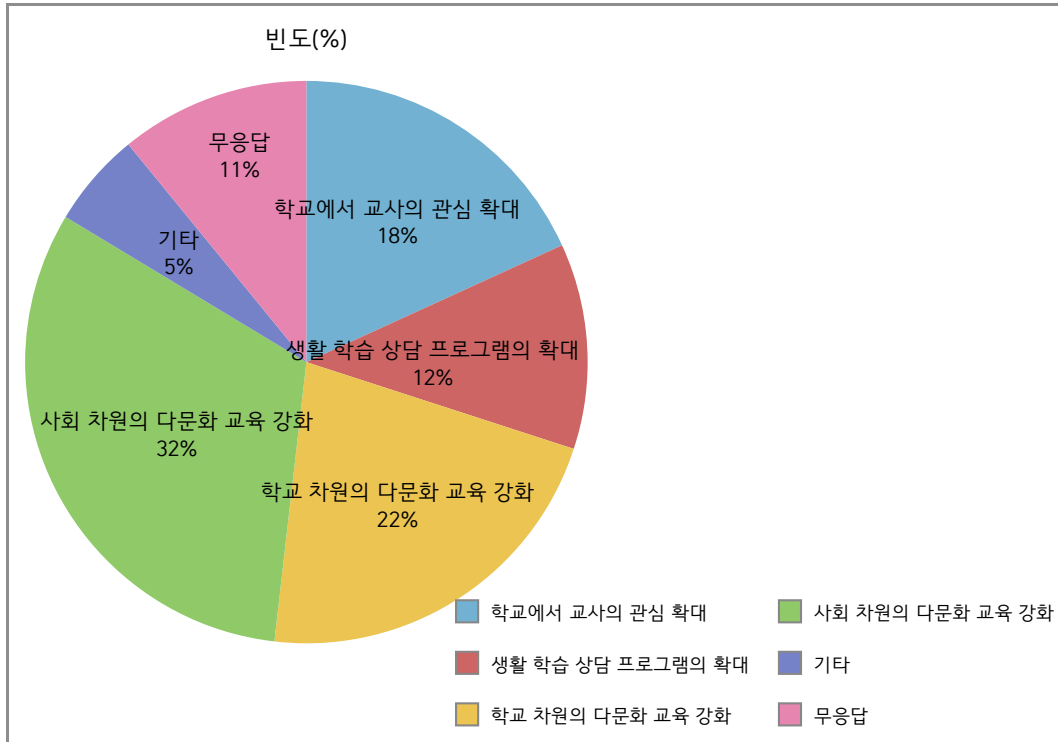
5. 교육문제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결혼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응답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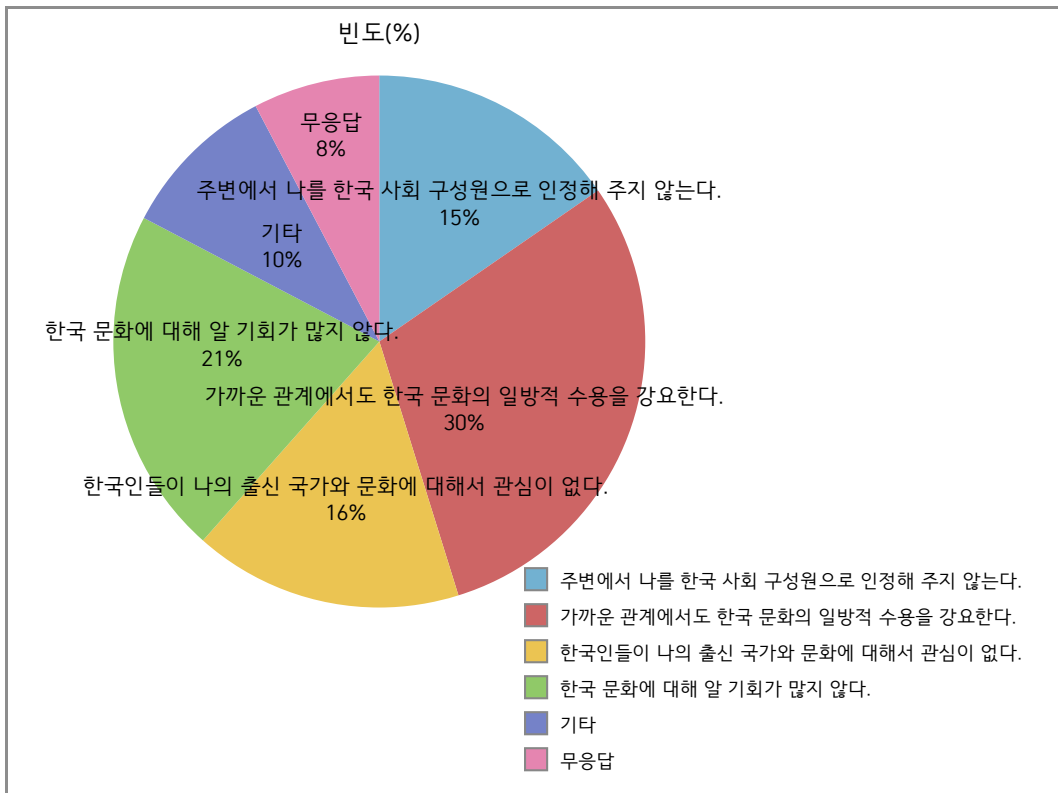
<그림 29> 언어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수응답가능) (설문 B 문항 52)



<그림 30> 주변사람들의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수응답가능) (설문 B 문항 54)



<그림 31> 문화적인 측면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복수응답가능) (설문 B 문항 62)



<그림 29-31>에서 알 수 있듯이 설문에 응답한 결혼이주민들은 대다수가 언어소통에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는 이주민들이 한국어 교육지원프로그램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자녀교육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한 학습지원의 확대를 필요로 했다. 결혼이주민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받는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교사의 관심 확대와 학교와 사회차원에서의 다문화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교사들의 관심과 태도가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결혼이주민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도 보다 더 실력에 따라 수준별로 다양한 교육방법과 교재들을 원하고 있었다. 이는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형식적인 차원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개발이 요구된다. 취업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결혼이주민들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지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국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해가기 위해서는 한국어 소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취업을 통한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결혼이주민들은 ‘주변에서 나를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가까운 관계에서도 한국 문화의 일방적 수용을 강요한다, 한국인들이 나의 출신 국가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한국 문화에 대해 알 기회가 많지 않다’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문화의 일방적 수용 강요를 어려움으로 보았다. 이는 한국인과 한국 사회가 아직도 이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하려 하기보다는 한국문화의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한국인이 아직도 보수적이고, 일방적인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6.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문화 인권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주민의 인지도와 각 사업별 중요도

마지막으로 이주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업이나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생소하게 반응했지만, 사업내용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 모두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업 중에서 <다문화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정책에서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수립이 90%의 비율로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고, 그 다음이 85%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에서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반면에 결혼이주민들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권보장> 정책에서 이주아동 교육권보장 개선방안 정책권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 마련을 각각 62.3%의 비율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여기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의 각기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이주민인권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잘 파악하여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국가인권위원회(200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서울: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10). 다문화사회와 헌법.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8). 2008 국내 난민 등 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9). 출입국분야 인권교육 교재. 서울: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2006). 광주, 전남·북 지역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2007). 새터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생활 및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 김남국(2005), 다문화시대의 시민: 한국 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제45집 4호. p. 97~121.
- 김두식(2010), 불편해도 괜찮아 - 영화보다 재미있는 인권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기획, 창비.
- 대한민국정부(200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과천: 법무부
- 모경환(2009). 다문화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효과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6권 2호, pp. 75-99.
- 모경환·황혜원(2007). 중등 교사들의 다문화적 인식에 대한 연구: 수도권 국어·사회과 교사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39권 3호, pp.79-100.
- 문준조(1998). 난민의 인권 - 한국 인권의 현황과 과제. 세계인권선언 50주년기념사업회.
- 박상준 (2009), "중·고등학교의 다문화교육 및 법과 인권교육의 방향", 한국법과인권교육
- 박성혁 외 (2008). 다문화교육정책 국제비교연구. 중앙다문화교육센터.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보고서.
- 설동훈(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2009). 다문화 인권정책의 현안과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
- 성상환 외 (2010).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기초연구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성상환 (2010). 서구의 다문화교육과 아동의 정체성 문제. 다문화교육, 제 1권 1호. pp. 37-47.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 이혜진 (2010).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지원정책. 2010년 교과부 초·중등교사 직무연수자료집. 서울대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오경석 외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 유길상, 이정혜, 이규용. 외국인력제도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이주기구.
- 원재천(2008). 캐나다의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 유엔난민기구(2001). 난민보호 : 국제난민법 이해.
- 이경원(2010). 독일 이주민의 인구적 특성과 경제활동. 이민정책연구원.
- 이민경 (2010), 이주가정자녀 사회통합 정책, 한국이민정책연구원
- 이용일(2007). 이민과 다문화사회로의 도전. 서양사론 제92호.
- 임태근(1999). 유럽국가의 난민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제15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 장은숙(2004). 독일의 외국인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장복희(1996).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인권법 제1호. 국제인권법학회.
- 주재순(2007), 독일의 이주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포럼 발표 자료.

최병두(2010). 일본 이주노동자의 유입 배경과 사회공간적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제3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

Amnesty International(2006). Living in the Shadows. Peter Benenson House. London : UK.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내무부)(2008) Migration und Integration-Aufenthaltsrecht, Migration- und Integrationspolitik in Deutschland (이주와 통합- 독일의 체류권, 이주 정책과 통합정책).

Nickel(2010). Making Sence of Human Rights, 인권의 좌표(조국 역). 명인문화사.

Gogolin/Neumann/Roth. (2003). Förder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mit Migrationshintergrund. Bund-Länder-Kommission für Bildungsplanung und Forschungsförderung, Heft 107. Universität Hamburg.

Guthrie, James ed. (2003). Encyclopedia of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Reference.

Joppke, Christian. (1999). Immigration and the Nation-State: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Great Brita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anayi, P. (2004). The Evolution of Multiculturalism in Britain and Germany: An Historical Survey.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Vol. 25, No.5&6, 466-480.

Taylor, Charles. (1992).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onteretto, Josepg G., Baluch, Suraiya, Greig, Tamasine & Rivera, Lourdes(1998). Development and Initial Score Validatioin of the Teacher Multicultural Attitude Surve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8(6), 1002-1016.

부록 1

No.

--	--	--	--

[A형]

'다문화 인권정책에 대한 이주민 당사자정책 수요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견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다문화 인권정책에 대한 이주민 당사자정책 수요조사'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인권정책에 대한 이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다문화 인권 정책 실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 인권정책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연구 결과는 다문화 인권정책을 재정비하고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것이며 귀하의 개인정보와 의견은 오직 연구의 용도로만 사용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0월 연구진 올림

연구책임자 : 성상환(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소장)

공동연구원 : 권오중(한국외국어대학교)

민병욱(인천대학교)

연구보조원 : 박혜원(서울대학교 석사수료)

연락처 : 박혜원 (010-7654-5613, kathyhwp@snu.ac.kr)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_____
- (2) 여자 _____

2.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

3. 귀하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 (00) 한국 _____
- (01) 중국 한족 _____
- (02) 중국 조선족 _____
- (03) 베트남 _____
- (04) 필리핀 _____
- (05) 방글라데시 _____
- (06) 태국 _____
- (07) 인도네시아 _____
- (08) 몽골 _____
- (09) 일본 _____
- (10) 러시아 _____
- (11) 우즈베키스탄 _____
- (12) 기타 나라 _____ (_____)

4. 귀하가 태어난 나라는 어디입니까?

- (1) 모국(한국 외에 현재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_____
- (2) 한국 _____
- (3) 기타 _____ (_____)

5.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에 거주하셨습니다?

_____ 년 _____ 개월

6. 현재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 (01) 서울특별시 ____
- (02) 인천광역시 ____
- (03) 대구광역시 ____
- (04) 대전광역시 ____
- (05) 부산광역시 ____
- (06) 광주광역시 ____
- (07) 울산광역시 ____
- (08) 경기도 ____
- (09) 충청남도 ____
- (10) 충청북도 ____
- (11) 경상남도 ____
- (12) 경상북도 ____
- (13) 전라남도 ____
- (14) 전라북도 ____
- (15) 강원도 ____
- (16) 제주도 ____

7.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01) 공장노동자 ____
- (02) 건설노동자 ____
- (03) 어부 또는 수산업 노동자 ____
- (04) 농부 혹은 축산업 노동자 ____
- (05) 식당 주방 · 청소 · 서빙 ____
- (06) 간병인 ____
- (07) 가정부 · 파출부 ____
- (08) 유흥업소 접대원 ____
- (09) 슈퍼마켓 · 편의점 등의 종업원 ____
- (1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____
- (11) 대학생, 대학원생 ____

- (12) 전업주부 ____
- (13) 사무직 ____
- (14) 무직 ____
- (15) 기타 ____ ()

8. 한국에서 살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1) 국제결혼 ____
- (2) 취업 ____
- (3) 부모님의 이주에 따라 동반 입국 ____
- (4) 한국에서 출생 ____
- (5) 기타 ____ ()

9.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을 평등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평등하다. ____
- (2) 어느 정도 평등하다. ____
- (3) 보통이다. ____
- (4) 어느 정도 차별적이다. ____
- (5) 매우 차별적이다. ____

10.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로 표시해 주세요.

질 문	전적으로 동의한다	---	보통	---	전적으로 반대한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인종 차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에서는 이주민과 일반한국인 사이에 큰 갈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인들은 피부색과 상관없이 외국인들을 평등하게 대우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면, 주로 어느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피부색 _____
- (2) 출신 국가 _____
- (3) 계층(경제력) _____
- (4) 외모 _____
- (5) 모든 외국인에 대해 똑같이 차별적임 _____
- (6) 그다지 차별적이지 않음 _____

12. 귀하는 자신이 이주민이어서 차별당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_____
- (2) 없다 _____

13. 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1) 네 _____
- (2) 아니요 _____

14.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셨습니까?

- (1) 언론 매체를 통해서 _____
- (2) 이주민 관련 기관을 통해서 _____
- (3) 아는 사람을 통해서 _____
- (4) 국가인권위원회의 홍보 자료를 통해서 _____
- (5) 기타 _____ ()

15.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다음과 같은 다문화 인권 정책 또는 사업을 실행해 왔습니다. 다음 중 귀하가 (1)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는지, (2)각 사업별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로 표시해 주세요.

질 문	(1)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_____.		(2) 이 사업이 _____고 생각한다.				
	있다	없다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문화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수립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위원회 중장기 다문화 인권정책실행계획 수립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인터넷에서의 인종적 표현에 대한 개선방안 의견 표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인종차별금지법 입법예고에 따른 공청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개선방안 권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 방안 정책 권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마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미등록 이주민 체포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개선 권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난민인정불허치문 취소소송 중의 취업활동 불가능 생존권 침해 개선 권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질 문	(1)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_____.		(2) 이 사업이 _____고 생각한다.					
	있다	없다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국제결혼 광고현수막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견표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견표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국제회의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방안 마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위장결혼에 따른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가정아동의 인권보장>								
외국인보호소 내 아동구금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미등록이주아동의 중학교 학습권 보장 권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이주아동교육권보장 개선방안 정책 권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 접근권 개선방안 마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인권증진 관련 기타 사업>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미등록 이주자 인권보호를 위한 방문조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6. 귀하가 한국에 체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취업 _____
- (2) 결혼 _____
- (3) 유학 _____
- (4) 난민 _____

17. 귀하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 (1) 매우 만족 _____
- (2) 만족 _____
- (3) 불만족 _____
- (4) 매우 불만족 _____

18. 귀하의 한국어 언어소통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상 _____
- (2) 중 _____
- (3) 하 _____
- (4) 의사소통 불가능 _____

19. 귀하는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 (1) 다문화지원센터의 한국어강좌 _____
- (2) 배우자와 가족 _____
- (3) 귀하의 출신국에서 이미 배움 _____
- (4) 회사 동료 _____
- (5) 기타 _____ ()

20. 귀하가 한국어로 소통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배울 생각입니까?

- (1) 한국어 강좌를 통해서 _____
- (2) 배우자와 가족을 통해서 _____
- (3) 회사 동료들을 통해서 _____
- (4) 한국어를 배울 방법을 모름 _____

21. 귀하가 한국어를 배울 방법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1) 한국어 강좌가 어디에서 제공되는지 모른다. _____
- (2) 한국어 강좌가 너무 부족하다. _____
- (3) 한국어 강좌가 열리는 곳이 멀다. _____
- (4) 낮은 수준의 강좌만 있다. _____

- (5)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했다. ____
- (6) 회사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____
- (7) 한국어에 관심이 없다. ____
- (8) 기타 ____ ()

22. 귀하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1) 높은 임금 ____
- (2) 회사동료들의 친절함 ____
- (3) 배우자와 가족들의 친절함 ____
- (4) 이웃의 친절함 ____
- (5) 편리한 시설과 교통 ____
- (6) 한국의 대중문화 ____

**23. 귀하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1) 거주기간의 제한 (3+2년) ____
- (2) 회사 이전의 횟수 제한 (3회) ____
- (3) 회사 내에서의 임금차별 - 한국인 회사 동료들과의 임금차이 ____
- (4) 회사동료들의 욕설과 따돌림 ____
- (5) 언어소통문제 ____
- (6) 배우자와의 갈등 ____
- (7) 자녀 교육 문제 ____
- (8) 국적취득문제 ____
- (9) 비싼 방값과 물가 ____
- (10) 일반 한국인들의 안 좋은 시선 ____

24. 귀하가 한국으로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높은 임금 ____
- (2) 결혼 ____
- (3) 한국문화에 대한 호기심 ____
- (4) 기타 ____ ()

25. 귀하는 한국에서 관공서 공무원들과 직접 접촉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네 ____
- (2) 아니요 ____

26. 귀하가 한국의 공무원들과 접촉했다면 어떤 공무원들입니까?

- (1)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____
- (2) 경찰 ____
- (3) 구청이나 주민센터 직원 ____
- (4) 학교 또는 센터의 선생님 ____
-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____
- (6) 기타 ____ ()

27. 한국의 공무원들은 귀하를 어떻게 대합니까?

- (1) 매우 친절 ____
- (2) 친절 ____
- (3) 불친절 ____
- (4) 매우 불친절 ____

28. 귀하는 한국에서 체류허가를 어떻게 연장하고 있습니까?

- (1) 직접 해결한다. ____
- (2) 회사가 해결해 준다. ____
- (3) 배우자가 동행하여 해결한다. ____
- (4)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____
- (5) 같은 국가 출신의 지인이 도와준다. ____
- (6) 기타 ____ ()

29. 이주민이 체류허가를 연장하거나 국적을 취득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1) 회사의 비협조 ____
- (2) 배우자의 비협조 ____
- (3) 공무원의 비협조적 태도 ____
- (4) 언어문제 ____
- (5) 기타 ____ ()

30. 귀하는 체류허가나 국적취득에 관련된 한국의 법령을 알고 있습니까?

- (1) 잘 알고 있다. ____
- (2) 알고 있다. ____
- (3) 잘 모르고 있다. ____
- (4) 전혀 모르고 있다. ____

31. 귀하가 체류허가나 국적취득에 관련된 한국의 법령을 알고 있다면,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 (1)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받았다. ____
- (2) 한국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었다. ____ (어느 기관?: _____)
- (3) 한국에 거주하는 같은 나라 출신 사람들에게서 들었다. ____
- (4) 배우자가 알려 주었다. ____
- (5) 학교에서 알게 되었다. ____
- (6) 회사에서 알게 되었다. ____
- (7) 기타 ____ (_____)

32. 귀하의 여권은 귀하가 가지고 있습니까?

- (1) 네 ____
- (2) 아니요 ____

33. 위의 질문에서 아니라면 귀하의 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1) 회사 사장님 ____
- (2) 회사 동료 ____
- (3) 배우자나 가족 ____
- (4) 기타 ____ (_____)

34. 당신은 어떤 형태(신분, 자격)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1) 합법적(고용허가제) ____
- (2) 미등록 이주노동자 ____
- (3) 결혼이주민 ____
- (4) 기타 ____ (_____)

35. 당신은 어떤 직종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 (1) 제조업 ____
- (2) 농림어업 ____
- (3) 축산업 ____
- (4) 서비스업 ____
- (5) 전업주부 ____
- (6) 기타 ____ (_____)

36. 당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규모는?

- (1) 5인 미만 _____
- (2) 5-30인 _____
- (3) 30-50인 _____
- (4) 50인 이상 _____
- (5) 해당사항 없음 (전업주부인 경우) _____

37. 한국인 직원과 동등한 시간을 일하고도 임금을 적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네 _____
- (2) 아니요 _____

38. 야근이나 잔업, 휴일근무 등을 하고 수당을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 (1) 네 _____
- (2) 아니요 _____

39. 임금을 늦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네 _____
- (2) 아니요 _____

40.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의 통장, 여권, 소지품 등을 타인이 관리한 적이 있습니까?

- (1) 네 _____
- (2) 아니요 _____

41. 일하다 다치거나 아플 때 적절한 보상이나 치료를 잘 받습니까?

- (1) 네 _____
- (2) 아니요 _____

42. 직장에서 산업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네 _____
- (2) 아니요 _____

43. 있다면 혹시 통역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네 _____
- (2) 아니요 _____

44. 신체적 폭력이나 인종차별적 경험 또는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1) 네 _____
 (2) 아니요 _____

45. 있다면 어디에서였습니까?

(_____)

46. 관공서,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네 _____
 (2) 아니요 _____

47. 있다면 어떤 차별을 받았습니까?

(_____)

48. 이러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당신의 반응은? (복수응답가능)

- (1) 내가 직접 항의한다. _____
 (2)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한다. _____
 (3)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친구 혹은 다른 이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_____
 (4) 모국에 거주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상담한다. _____
 (5) 인권단체나 이주민지원기관에 신고한다. _____
 (6) 교회, 성당, 절 등 종교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_____
 (7) 경찰에 신고한다. _____
 (8) 그냥 참는다. _____
 (9) 기타 _____ (_____)

49. 그냥 참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50. 혹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절차 같은 것에 대해 직장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네 _____
 (2) 아니요 _____

51. 귀하가 살고 있는 주거공간은 어디입니까?

- (1) 공장에 딸린 방 _____
- (2) 임시 컨테이너 등 가건물 _____
- (3)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_____
- (4) 단독주택 _____
- (5) 노숙 _____
- (6) 기타 _____ ()

52. 귀하의 주거공간에 대해 만족합니까?

- (1) 만족한다. _____
- (2) 그냥 그렇다. _____
- (3) 불만족스럽다. _____

53. 불만족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54. 당신이 고용되어 있는 현재의 고용허가제에 대해 만족합니까?

- (1) 만족한다. _____
- (2) 그냥 그렇다. _____
- (3) 불만족스럽다. _____

55. 귀하는 한국에서 고용허가제의 체류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싶습니까?

- (1) 네 _____
- (2) 아니요 _____

56. 귀하는 체류기간 연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1) 네 _____
- (2) 아니요 _____

57. 귀하가 체류기간 연장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체류기간 연장이 회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_____
- (2) 체류허가 신청 시 직장이 없어서 _____
- (3) 회사와의 근로계약상의 어려움 때문에 _____
- (4) 체류기간 연장과 관련한 여러 정보가 부족해서 _____
- (5) 기타 _____ ()

58. 귀하는 사업장 변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1) 네 _____
- (2) 아니요 _____

59. 귀하가 사업장 변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이전 회사 사장님이 여권을 주지 않아서 _____
- (2) 이전 회사 사장님이 동의해 주지 않아서 _____
- (3) 옮길 회사에서 인종이나 출신 때문에 거부 당해서 _____
- (4) 옮길 회사에서 한국어 소통 문제로 거부 당해서 _____
- (5) 임금 체불 때문에 _____
- (6) 기타 _____ ()

60. 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거주기간 제한(5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적절하다. _____
- (2) 적절하지 못하다. _____

61. 귀하가 고용허가제 하의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기간 제한 규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 (1)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 _____
- (2)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거주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_____

62. 귀하는 고용허가제 하의 사업장 이동 제한 관련 규정(최대 3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동의한다. _____
- (2) 바뀌어야 한다. _____

63. 귀하가 이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 (1) 사업장 변경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_____
- (2) 사업장 이전 횟수를 더 늘여야 한다. _____
- (3) 기타 _____ ()

64. 귀하가 한국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높은 임금 _____
- (2) 한국인의 친절 _____
- (3)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 _____
- (4) 기타 _____ ()

65. 귀하가 한국에서 계속해서 일하기 싫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임금차별 _____
- (2) 인종차별 _____
- (3) 한국인의 불친절 _____
- (4) 회사에서의 비인간적인 대우 _____
- (5) 공무원의 강압적 태도와 불친절 _____
- (6)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_____
- (7) 기타 _____ ()

66. 귀하가 한국에서 5년을 일한 뒤 계속 일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1)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_____
- (2)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일할 수도 있다. _____
- (3) 일단 귀국한 다음 1년 후 다시 와서 일을 한다. _____
- (4) 기타 _____ ()

67. 귀하는 귀하의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권하겠습니까?

- (1) 네 _____
- (2) 아니요 _____

68. 귀하가 친구에게 한국에서 일하기를 권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높은 임금 _____
- (2) 한국인의 친절 _____
- (3) 생활의 편리함 _____
- (4) 기타 _____ ()

69. 귀하가 친구에게 한국에서 일하기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임금차별 _____
- (2) 인종차별 _____
- (3) 한국인의 불친절 _____
- (4) 회사에서의 비인간적인 대우 _____
- (5) 체류기간 연장의 어려움 _____
- (6)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_____
- (7) 기타 _____ ()

70. 귀하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면 한국에 데려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 (1) 네 _____
- (2) 아니요 _____

71. 귀하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한국에 데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근로자 신분으로 가족을 초청할 자격이 없어서 _____
- (2) 경제적으로 한국의 비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_____
- (3) 가족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_____
- (4) 기타 _____ ()

72. 귀하는 한국 정부가 귀하의 가족을 동반 또는 초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를 원합니까?

- (1) 네 _____
- (2) 아니요 _____

73. 귀하는 사업장 변경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기간이 너무 짧다. _____
- (2) 적당한 기간이다. _____
- (3) 관심 없다. _____

74.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 용	경험이 있다	경험한적 없다
(1)	직장(혹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2)	이유 없이 검문이나 체포를 당한 적 있다.	①	②
(3)	종교 활동 참여를 금지당하거나 방해 받은 적 있다.	①	②
(4)	언어나 식습관 때문에 놀림 받은 적 있다.	①	②
(5)	피부색이나 옷과 관련하여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6)	상점 등에서 물건 판매를 거부당한 적 있다.	①	②
(7)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	①	②
(8)	한국내 동포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도 직장 상사나 동료, 한국인 가족, 학교 선생님 등의 반대나 금지로 참여할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9)	동포 모임을 조직하고 싶어도 직장 상사나 동료, 한국인 가족, 학교 선생님 등의 반대나 금지로 좌절 했던 적이 있다.	①	②
(10)	아프거나 다쳤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11)	지낼 곳이 없어 노숙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12)	모국이나 동포(혹은 부모님의 나라와 그 국민들)에 대한 모욕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13)	돈이 없어 식사를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14)	모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나 행사를 기획하거나 참여하고 싶었으나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한 적 있다.	①	②

	내 용	경험이 있다	경험한적 없다
(15)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가정생활에 대하여 원하지 않은 간섭을 받은 적 있다.	①	②
(16)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직장, 교회, 지역사회 등 공동체에서 발언권을 갖지 못하거나 의견을 무시당한 적 있다.	①	②
(17)	학교에 가고 싶거나 혹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적 있다.	①	②
(18)	누군가 나에게 물건 등을 던진 적이 있다.	①	②
(19)	신체적 폭력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입원 한 적이 있다.	①	②
(20)	성적인 농담이나 모욕적인 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21)	팔을 비틀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는 행위를 당한 적 있다.	①	②
	-아래 문항에 대해서는 성인만 응답해주시오-		
(22)	한국인 직원보다 월급을 낮게 받은 적 있다.	①	②
(23)	한국인 직원과 같은 시간을 일했으나 임금을 적게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4)	야근이나 잔업, 휴일 출근 등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5)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노조 가입을 거부당한 적 있다.	①	②
(26)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자율방범대, 주부모임, 조기축구회 등 지역사회 모임에 가입을 거부당한 적 있다.	①	②
(27)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나의 월급, 통장, 소지품 등을 타인이 관리한 적 있다.	①	②
(28)	자녀나 배우자와의 만남을 타당한 이유 없이 방해받거나 금지당한 적 있다.	①	②

75. 이외에 한국에서 경험한 인권 침해의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76. 귀하 주위의 사람들은 귀하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질 문	전혀차 별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차별적 이다.	만나게 되는 일이 없음		
직장동료	①	②	③	④	⑤	⑥
직장상사	①	②	③	④	⑤	⑥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⑥
학교 친구	①	②	③	④	⑤	⑥
이웃 주민	①	②	③	④	⑤	⑥
한국인 가족 (부모, 시부모, 배우자의 형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상점 주인	①	②	③	④	⑤	⑥
대중교통 운전자	①	②	③	④	⑤	⑥
공무원	①	②	③	④	⑤	⑥
스님, 목사님, 신부님 등 성직자	①	②	③	④	⑤	⑥
이주민 지원 단체 상담원	①	②	③	④	⑤	⑥

77. 이외에 자신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느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어떤 차별 행위를 했습니까?

78. 인권 침해 경험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1)내가 직접 항의하였다. ____
- (2)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호소하였다. ____
- (3)한국에 거주하는 동포나 이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____
- (4)모국에 거주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상담하였다. ____
- (5)인권 단체나 이주민 지원 기관에 신고하였다. ____
- (6)교회, 절, 성당의 성직자에게 호소하였다. ____
- (7)경찰에 신고하였다. ____
- (8)다문화가정 방문 상담원이나 복지업무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 (9)(직장에 다니는 경우) 상사나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____
- (10)(학생인 경우)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____
- (11)모국의 가족에게 하소연 하였다. ____
- (12)차별당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 ____
- (13)그냥 참았다. ____
- (14)기타: _____
- (15)차별 당한 경험이 없다. ____

79. (11), (12), (13)번을 선택한 경우)참거나 사실을 숨긴 적이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1)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기 때문에(어디에 알려야 할 지 알 수가 없어서) ____
- (2)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____
- (3)보복이 두려워서 ____
- (4)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____
- (5)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____
- (6)기타 _____

부록2

No.

--	--	--	--

[B형]

'다문화 인권정책에 대한 이주민 당사자정책 수요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견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다문화 인권정책에 대한 이주민 당사자정책 수요조사'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인권정책에 대한 이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다문화 인권 정책 실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 인권정책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연구 결과는 다문화 인권정책을 재정비하고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것이며 귀하의 개인정보와 의견은 오직 연구의 용도로만 사용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0월 연구진 올림

연구책임자 : 성상환(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소장)

공동연구원 : 권오중(한국외국어대학교)

민병욱(인천대학교)

연구보조원 : 박혜원(서울대학교 석사수료)

연락처 : 박혜원 (010-7654-5613, kathyhwp@snu.ac.kr)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_____
- (2) 여자 _____

2.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

3. 귀하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 (00) 한국 _____
- (01) 중국 한족 _____
- (02) 중국 조선족 _____
- (03) 베트남 _____
- (04) 필리핀 _____
- (05) 방글라데시 _____
- (06) 태국 _____
- (07) 인도네시아 _____
- (08) 몽골 _____
- (09) 일본 _____
- (10) 러시아 _____
- (11) 우즈베키스탄 _____
- (12) 기타 나라 _____ (_____)

4. 귀하가 태어난 나라는 어디입니까?

- (1) 모국(한국 외에 현재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_____
- (2) 한국 _____
- (3) 기타 _____ (_____)

5.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에 거주하셨습니다?

_____ 년 _____ 개월

6. 현재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 (01) 서울특별시 ____
- (02) 인천광역시 ____
- (03) 대구광역시 ____
- (04) 대전광역시 ____
- (05) 부산광역시 ____
- (06) 광주광역시 ____
- (07) 울산광역시 ____
- (08) 경기도 ____
- (09) 충청남도 ____
- (10) 충청북도 ____
- (11) 경상남도 ____
- (12) 경상북도 ____
- (13) 전라남도 ____
- (14) 전라북도 ____
- (15) 강원도 ____
- (16) 제주도 ____

7.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01) 공장노동자 ____
- (02) 건설노동자 ____
- (03) 어부 또는 수산업 노동자 ____
- (04) 농부 혹은 축산업 노동자 ____
- (05) 식당 주방 · 청소 · 서빙 ____
- (06) 간병인 ____
- (07) 가정부 · 파출부 ____
- (08) 유흥업소 접대원 ____
- (09) 슈퍼마켓 · 편의점 등의 종업원 ____
- (1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____
- (11) 대학생, 대학원생 ____

11.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면, 주로 어느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피부색 _____
- (2) 출신 국가 _____
- (3) 계층(경제력) _____
- (4) 외모 _____
- (5) 모든 외국인에 대해 똑같이 차별적임 _____
- (6) 그다지 차별적이지 않음 _____

12. 귀하는 자신이 이주민이어서 차별당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_____
(2) 없다 _____

13. 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1) 네 _____
(2) 아니요 _____

14.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셨습니까?

- (1) 언론 매체를 통해서 _____
- (2) 이주민 관련 기관을 통해서 _____
- (3) 아는 사람을 통해서 _____
- (4) 국가인권위원회의 홍보 자료를 통해서 _____
- (5) 기타 _____ ()

15.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다음과 같은 다문화 인권 정책 또는 사업을 실행해 왔습니다. 다음 중 귀하가 (1)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는지, (2)각 사업별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로 표시해 주세요.

질 문	(1)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_____.		(2) 이 사업이 _____고 생각한다.				
	있다	없다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문화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수립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위원회 중장기 다문화 인권정책실행계획 수립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인터넷에서의 인종적 표현에 대한 개선방안 의견 표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인종차별금지법 입법예고에 따른 공청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개선방안 권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 방안 정책 권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마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미등록 이주민 체포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개선 권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중의 취업활동 불가는 생존권 침해 개선 권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질 문	(1)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_____.		(2) 이 사업이 _____고 생각한다.				
	있다	없다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국제결혼 광고현수막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견표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견표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국제회의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방안 마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위장결혼에 따른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가정아동의 인권보장>							
외국인보호소 내 아동구금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미등록이주아동의 중학교 학습권 보장 권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이주아동교육권보장 개선방안 정책 권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 접근권 개선방안 마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인권증진 관련 기타 사업>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미등록 이주자 인권보호를 위한 방문조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6. 귀하가 한국에 체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취업 _____
- (2) 결혼 _____
- (3) 유학 _____
- (4) 난민 _____

17. 귀하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 (1) 매우 만족 _____
- (2) 만족 _____
- (3) 불만족 _____
- (4) 매우 불만족 _____

18. 귀하의 한국어 언어소통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상 _____
- (2) 중 _____
- (3) 하 _____
- (4) 의사소통 불가능 _____

19. 귀하는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 (1) 다문화지원센터의 한국어강좌 _____
- (2) 배우자와 가족 _____
- (3) 귀하의 출신국에서 이미 배움 _____
- (4) 회사 동료 _____
- (5) 기타 _____ ()

20. 귀하가 한국어로 소통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배울 생각입니까?

- (1) 한국어 강좌를 통해서 _____
- (2) 배우자와 가족을 통해서 _____
- (3) 회사 동료들을 통해서 _____
- (4) 한국어를 배울 방법을 모름 _____

21. 귀하가 한국어를 배울 방법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1) 한국어 강좌가 어디에서 제공되는지 모른다. _____
- (2) 한국어 강좌가 너무 부족하다. _____
- (3) 한국어 강좌가 열리는 곳이 멀다. _____
- (4) 낮은 수준의 강좌만 있다. _____

- (5)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했다. ____
- (6) 회사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____
- (7) 한국어에 관심이 없다. ____
- (8) 기타 ____ ()

22. 귀하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1) 높은 임금 ____
- (2) 회사동료들의 친절함 ____
- (3) 배우자와 가족들의 친절함 ____
- (4) 이웃의 친절함 ____
- (5) 편리한 시설과 교통 ____
- (6) 한국의 대중문화 ____

**23. 귀하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1) 거주기간의 제한 (3+2년) ____
- (2) 회사 이전의 횟수 제한 (3회) ____
- (3) 회사 내에서의 임금차별 - 한국인 회사 동료들과의 임금차이 ____
- (4) 회사동료들의 욕설과 따돌림 ____
- (5) 언어소통문제 ____
- (6) 배우자와의 갈등 ____
- (7) 자녀 교육 문제 ____
- (8) 국적취득문제 ____
- (9) 비싼 방값과 물가 ____
- (10) 일반 한국인들의 안 좋은 시선 ____

24. 귀하가 한국으로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높은 임금 ____
- (2) 결혼 ____
- (3) 한국문화에 대한 호기심 ____
- (4) 기타 ____ ()

25. 귀하는 한국에서 관공서 공무원들과 직접 접촉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네 ____
- (2) 아니요 ____

26. 귀하가 한국의 공무원들과 접촉했다면 어떤 공무원들입니까?

- (1)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____
- (2) 경찰 ____
- (3) 구청이나 주민센터 직원 ____
- (4) 학교 또는 센터의 선생님 ____
-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____
- (6) 기타 ____ ()

27. 한국의 공무원들은 귀하를 어떻게 대합니까?

- (1) 매우 친절 ____
- (2) 친절 ____
- (3) 불친절 ____
- (4) 매우 불친절 ____

28. 귀하는 한국에서 체류허가를 어떻게 연장하고 있습니까?

- (1) 직접 해결한다. ____
- (2) 회사가 해결해 준다. ____
- (3) 배우자가 동행하여 해결한다. ____
- (4)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____
- (5) 같은 국가 출신의 지인이 도와준다. ____
- (6) 기타 ____ ()

29. 이주민이 체류허가를 연장하거나 국적을 취득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1) 회사의 비협조 ____
- (2) 배우자의 비협조 ____
- (3) 공무원의 비협조적 태도 ____
- (4) 언어문제 ____
- (5) 기타 ____ ()

30. 귀하는 체류허가나 국적취득에 관련된 한국의 법령을 알고 있습니까?

- (1) 잘 알고 있다. ____
- (2) 알고 있다. ____
- (3) 잘 모르고 있다. ____
- (4) 전혀 모르고 있다. ____

31. 귀하가 체류허가나 국적취득에 관련된 한국의 법령을 알고 있다면,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 (1)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받았다. _____
- (2) 한국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었다. _____ (어느 기관?: _____)
- (3) 한국에 거주하는 같은 나라 출신 사람들에게서 들었다. _____
- (4) 배우자가 알려 주었다. _____
- (5) 학교에서 알게 되었다. _____
- (6) 회사에서 알게 되었다. _____
- (7) 기타 _____ (_____)

32. 귀하의 여권은 귀하가 가지고 있습니까?

- (1) 네 _____
- (2) 아니요 _____

33. 위의 질문에서 아니라면 귀하의 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1) 회사 사장님 _____
- (2) 회사 동료 _____
- (3) 배우자나 가족 _____
- (4) 기타 _____ (_____)

34. 귀하가 체류 연장이나 영주권 혹은 귀화를 신청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 (1) 네 _____
- (2) 아니요 _____

35. 귀하가 체류 연장이나 영주권 혹은 귀화를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 (1)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아서 _____
- (2) 담당공무원들의 비협조 _____
- (3) 언어소통의 어려움 _____
- (4) 기타 _____ (_____)

36. 귀하는 한국에서 영주권 혹은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혹은 취득하고 싶습니까?

- (1) 네 _____
- (2) 아니요 _____

37. 귀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나중에 고향에 가서 살고 싶어서 ____
- (2) 한국 국적 취득에 관심이 없어서 ____
- (3) 출신국가에서의 자신의 권리를 잃고 싶지 않아서 ____
- (4) 기타 ____ ()

38. 귀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배우자와 함께 한국인으로 살고 싶어서 ____
- (2) 한국에서 안정적인 정규직을 갖고 싶어서 ____
- (3) 한국 국적 없이는 사회보장 혜택 등 여러 가지 차별이 많아서 ____
- (4) 기타 ____ ()

39. 귀하는 한국국적취득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 (1) 네 ____
- (2) 아니요 ____

40. 귀하가 한국국적취득 방법을 알고 있다면, 누가 알려 주었습니까?

- (1) 배우자나 가족 ____
- (2) 국제결혼 중개회사 ____
- (3) 한국 관청 공무원 ____
- (4) 같은 나라 출신 사람들 ____
- (5) 기타 ____ ()

41. 귀하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1) 국적취득에 대한 한국법령이 엄격해서 ____
- (2)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아서 ____
- (3)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해서 ____
- (4) 국적 취득에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 ____
- (5) 기타 ____ ()

42. 귀하는 한국정부가 규정한 국적취득 방법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1) 네 ____
- (2) 아니요 ____

43. 한국정부가 규정한 국적취득방법이 적당하지 않다면 귀하는 이것이 어떻게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 (1)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거나 배우자와 사별하더라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____
- (2) 귀하의 국내 체류기간이 법적인 요건을 채웠을 경우, 배우자의 신원보증 없이도 국적취득이 가능해야 한다. ____
- (3)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정 체류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____
- (4) 기타 ____ ()

44.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 (1) 네 ____
- (2) 아니요 ____

45. 귀하는 외국에서 데리고 온 중도입국 자녀가 있습니까?

- (1) 네 (46-48번 문항에 답하세요.) ____
- (2) 아니요 (49번 문항으로 가세요.) ____

46. 귀하는 귀하의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1) 네 ____
- (2) 아니요 ____

47. 귀하의 자녀가 한국국적이 아닌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배우자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____
- (2) 한국인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____
- (3) 귀하가 자녀와 함께 한국에 살고 싶어서 ____
- (4) 해당사항 없음 (자녀가 없는 경우) ____
- (5) 기타 ____ ()

48. 귀하가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을 원치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한국에서의 차별이 심해서 ____
- (2) 한국에서의 적응이 어려워서 ____
- (3) 배우자와 이혼해서 ____
- (4) 나중에 고향에 데려가고 싶어서 ____
- (5) 이미 출신국의 국적을 취득해서 이중국적 문제 때문에 ____
- (6) 기타 ____ ()

49. 귀하에게 자녀가 있다면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 (1) 0-6세(미취학 아동) _____
- (2) 7-12세(초등학생) _____
- (3) 13-15세(중학생) _____
- (4) 16-18세(고등학생) _____
- (5) 19세 이상 _____

50. 자녀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1) 언어소통의 문제 _____
- (2) 과외 등 경제적 지원 부족 _____
- (3) 주변 사람들의 따돌림 _____
- (4) 자녀의 반항 _____
- (5) 기타 _____ ()

51. 다음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맞는 곳에 √로 표시해 주세요.

질 문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언어소통의 문제	①	②	③	④	⑤						
과외 등 경제적 지원 부족	①	②	③	④	⑤						
주변 사람들의 따돌림	①	②	③	④	⑤						
자녀의 반항	①	②	③	④	⑤						
기타	①	②	③	④	⑤						

52. 언어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_____
- (2) 아동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_____
- (3) 가족과 사회 구성원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_____
- (4) 아동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_____
- (5) 기타 _____ ()

53. 과외 등 경제적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학교에서의 방과 후 수업 지원 _____
-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한 학습 지원 _____
- (3) 지자체를 통한 경제적 지원 _____
- (4) 우수 아동을 위한 장학금 지원 _____
- (5) 기타 _____ ()

54. 주변 사람들의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학교에서 교사의 관심 확대 _____
- (2) 생활 학습 상담 프로그램의 확대 _____
- (3) 학교 차원의 다문화 교육 강화 _____
- (4) 사회 차원의 다문화 교육 강화 _____
- (5) 기타 _____ ()

55. 자녀의 반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보 _____
- (2) 어머니/아버지 나라에 대한 자긍심 고취 _____
- (3) 심리 상담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_____
- (4) 학업 또는 취미 활동 지원 _____
- (5) 기타 _____ ()

56. 성인을 위한 교육 지원 중 귀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1)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_____
- (2) 취업 교육 _____
- (3) 대학 교육 _____
- (4) 취미 교육 _____
- (5) 기타 _____ ()

57. 다음 사항 중 귀하가 필요를 느끼는 정도를 맞는 곳에 √로 표시해 주세요.

질 문	매우 필요하다	---	보통이다	---	전혀 필요 없다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①	②	③	④	⑤
취업 교육	①	②	③	④	⑤
대학 교육	①	②	③	④	⑤
취미 교육	①	②	③	④	⑤
기타	①	②	③	④	⑤

58.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내용이 많았으면 좋겠다. _____
- (2) 한국어 교육 방법과 교재가 다양했으면 좋겠다. _____
- (3) 이주민 출신의 보조강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_____
- (4) 한국어 실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았으면 좋겠다. _____
- (5) 기타 _____ ()

59. 취업 교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_____
- (2)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시 경제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_____
- (3) 취업 관련 프로그램 이수 시 바로 취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_____
- (4) 한국 국적이 없어도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면 좋겠다. _____
- (5) 자격증 취득시험(운전면허시험 등)에 출신국 모어로 응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_____
- (6) 기타 _____ ()

60. 대학 교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장학금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_____
- (2) 대학 입학자격 취득(검정고시 등)을 위한 교육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_____
- (3) 대학 입학 전형에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_____
- (4) 자녀 양육 지원을 통해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 _____
- (5) 기타 _____ ()

61. 취미 교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교육장소가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____
- (2) 교육 내용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____
- (3) 무료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____
- (4) 경제 활동과 연결되는 취미 교육이었으면 좋겠다. ____
- (5) 기타 ____ ()

62. 문화적인 측면에서 귀하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1) 주변에서 나를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____
- (2) 가까운 관계에서도 한국 문화의 일방적 수용을 강요한다. ____
- (3) 한국인들이 나의 출신 국가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____
- (4) 한국 문화에 대해 알 기회가 많지 않다. ____
- (5) 기타 ____ ()

63.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 용	경험이 있다	경험한적 없다
(1)	직장(혹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2)	이유 없이 검문이나 체포를 당한 적 있다.	①	②
(3)	종교 활동 참여를 금지당하거나 방해 받은 적 있다.	①	②
(4)	언어나 식습관 때문에 놀림 받은 적 있다.	①	②
(5)	피부색이나 옷과 관련하여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6)	상점 등에서 물건 판매를 거부당한 적 있다.	①	②
(7)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	①	②
(8)	한국내 동포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도 직장 상사나 동료, 한국인 가족, 학교 선생님 등의 반대나 금지로 참여할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9)	동포 모임을 조직하고 싶어도 직장 상사나 동료, 한국인 가족, 학교 선생님 등의 반대나 금지로 좌절 했던 적이 있다.	①	②
(10)	아프거나 다쳤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11)	지낼 곳이 없어 노숙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내 용	경험이 있다	경험한적 없다
(12)	모국이나 동포(혹은 부모님의 나라와 그 국민들)에 대한 모욕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13)	돈이 없어 식사를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14)	모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나 행사를 기획하거나 참여하고 싶었으나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한 적 있다.	①	②
(15)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가정생활에 대하여 원하지 않은 간섭을 받은 적 있다.	①	②
(16)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직장, 교회, 지역사회 등 공동체에서 발언권을 갖지 못하거나 의견을 무시당한 적 있다.	①	②
(17)	학교에 가고 싶거나 혹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적 있다.	①	②
(18)	누군가 나에게 물건 등을 던진 적이 있다.	①	②
(19)	신체적 폭력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입원 한 적이 있다.	①	②
(20)	성적인 농담이나 모욕적인 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21)	팔을 비틀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는 행위를 당한 적 있다.	①	②
	-아래 문항에 대해서는 성인만 응답해주시시오-		
(22)	한국인 직원보다 월급을 낮게 받은 적 있다.	①	②
(23)	한국인 직원과 같은 시간을 일했으나 임금을 적게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4)	야근이나 잔업, 휴일 출근 등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5)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노조 가입을 거부당한 적 있다.	①	②
(26)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자율방범대, 주부모임, 조기축구회 등 지역사회 모임에 가입을 거부당한 적 있다.	①	②
(27)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나의 월급, 통장, 소지품 등을 타인이 관리한 적 있다.	①	②
(28)	자녀나 배우자와의 만남을 타당한 이유 없이 방해받거나 금지당한 적 있다.	①	②

64. 이외에 한국에서 경험한 인권 침해의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65. 귀하 주위의 사람들은 귀하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질 문	전혀차 별하지 않는다	- - -	보통	- - -	매우 차별적 이다.	만나게 되는 일이 없음
직장동료	①	②	③	④	⑤	⑥
직장상사	①	②	③	④	⑤	⑥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⑥
학교 친구	①	②	③	④	⑤	⑥
이웃 주민	①	②	③	④	⑤	⑥
한국인 가족 (부모, 시부모, 배우자의 형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상점 주인	①	②	③	④	⑤	⑥
대중교통 운전자	①	②	③	④	⑤	⑥
공무원	①	②	③	④	⑤	⑥
스님, 목사님, 신부님 등 성직자	①	②	③	④	⑤	⑥
이주민 지원 단체 상담원	①	②	③	④	⑤	⑥

66. 이외에 자신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느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어떤 차별 행위를 했습니까?

67. 인권 침해 경험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1)내가 직접 항의하였다. ____
- (2)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호소하였다. ____
- (3)한국에 거주하는 동포나 이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____
- (4)모국에 거주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상담하였다. ____
- (5)인권 단체나 이주민 지원 기관에 신고하였다. ____
- (6)교회, 절, 성당의 성직자에게 호소하였다. ____
- (7)경찰에 신고하였다. ____
- (8)다문화가정 방문 상담원이나 복지업무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 (9)(직장에 다니는 경우) 상사나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____
- (10)(학생인 경우)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____
- (11)모국의 가족에게 하소연 하였다. ____
- (12)차별당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 ____
- (13)그냥 참았다. ____
- (14)기타: _____
- (15)차별 당한 경험이 없다. ____

68. (11), (12), (13)번을 선택한 경우)참거나 사실을 숨긴 적이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1)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기 때문에(어디에 알려야 할 지 알 수가 없어서) ____
- (2)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____
- (3)보복이 두려워서 ____

(4)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____

(5)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____

(6) 기타 _____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